

월간

재정포럼

1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1년 1월호 제175호

- 현안분석** · ● 재정건전화 지속기간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 송호신
●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정책방향/ 김지영
● 국정과제의 성과관리 현황과 개선방향/ 원종학

- 공공정책포럼** · ● 공공기관 선진화의 성숙단계 진입을 위한 정책과제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세부담의 공평성과 세무행정 · 원윤희

현안분석

08 재정건전화 지속기간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 · 송호신

19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정책방향 · 김지영

32 국정과제의 성과관리 현황과 개선방향 · 원종학

공공정책포럼

47 공공기관 선진화의 성숙단계 진입을 위한 정책과제

주요국의 조세동향

52 일본의 2011년 세법개정 주요 내용 외

정책흐름

66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82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 통보

86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대폭 개편

97 최근 한·중·일의 성장 및 교역 동향과 시사점

103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

107 사업하기 편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시행

109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재정통계

112 OECD 국가의 GDP 대비 소득과세 비중 외

이슈 & 포커스

124 재정을 살찌게 하려면 외

세부담의 공평성과 세무행정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조세부담의 공평성

옛날부터 조세문제는 모든 사회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슈 중의 하나였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조세저항의 역사’라는 말처럼 역사적으로 조세부담의 배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과 타협이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세관련 이슈들은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매우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간신문에서 조세에 관련된 기사가 없는 날을 거의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제도 개편을 둘러싼 소위 세금폭탄 논쟁과 함께 감세정책을 둘러싼 부자감세 논란은 조세논쟁이 얼마나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세문제에 대하여 사회구성원들이 큰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라는 희생의 배분이라는 속성 때문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부담의 배분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평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떠한 조세배분이 공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물론 그것을 실현하는 실천 기준으로 부담능력이 같은 사람은 같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과 부담능력이 다른 사람은 다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으로 표현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세무행정의 중요성

한편 국민들의 실제 부담구조 결정에 있어서는 조세제도만이 아니라 그것

을 집행하는 세무행정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아무리 세제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정기준에 부합하게 잘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세무행정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그 부담을 회피하게 된다면 최종적인 조세 부담구조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추정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조세연구원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GDP의 약 17~19%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¹⁾. 이러한 규모는 예전 1990년대 이전의 추정치인 약 30% 수준에 비해서 크게 감소한 것이지만 아직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직접적인 탈세규모를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지만 2005년에서 2009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기획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소득탈루율은 4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상당한 소득탈루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에서 이 수치가 전체 탈루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수준의 탈세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밖에도 세금의 체납이 발생하고 이 중 많은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납부되지 않고 미정리되고 있다는 점도 세무행정 과정에서 세부담의 불공평이 야기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세무행정상의 문제가 세제개편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세무행정상 집행 가능성이 세제를 설정하고 개편하는 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2009년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약 1,400만명의 유효세율은 5.4%로 나타나고 있는데, 종합소득자 약 350만명의 경우 유효세율은 13.0%로 계산되고 있다²⁾³⁾. 한편 1인당 평균소득의 차이에 따른 누진세율 효과를 고려하여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비교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자의 유효세율이 종합소득자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와 4,600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유효세율이 각각 1.0%와 5.0%인데 비해서 종합소득자의 경우 각각 1.9%와 6.7%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세부담률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들이 사업소득자들에 비해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더 크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업소득자들의 소득포착 정도가 낮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세무행정상 사업소득자의 과세소득 포착이 어려운 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유리할 지갑이라고 표현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추정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조세연구원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GDP의 약 17~19%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여기서 지하경제는 합법적이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활동 중 세금을 회피하거나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감추어진 부분을 의미함.
 2) 여기서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의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 성격의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이며, 종합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임.
 3) 유효세율은 최종 결정세액을 소득 금액으로 나눈 수치로 계산함.

.....

세무행정 과정에서
탈세나 체납 등을 통해서
야기되는 세부담의
불공평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불합리한
불공평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

되는 것처럼 과세소득이 모두 포착되어 세부담이 높게 되기 때문에 양자의 세부담이 유사해질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등을 제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암묵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조선시대 전제(田制) 개혁은 세무행정상의 문제가 세제 자체의 변화를 초래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초기 과전법(科田法)은 토지 1결(結)의 최고 수확고를 기준으로 그 1/10인 30두를 표준부담으로 설정하고 여기에서 재해에 따른 감수율을 실제 사정을 통하여 반영함으로써 수조액(收租額)이 결정되도록 하였다. 즉 현지 실사를 통해서 각 경작지별로 정확한 손실률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부담액을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답험(踏驗)을 담당하는 관리들의 온갖 비리와 향응수취 등이 막심한 피해를 야기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세종 때 이르러 이 답험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방법이 고안되었는데 그것이 정액 수조를 중심으로 하는 공법(貢法)이었다. 그러나 16여년의 오랜 검토와 많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분 6등 연분 9등의 합리적인 세율체계를 가지는 공법으로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매년 수확의 풍흉을 가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모든 부담은 가장 낮은 수확 연도인 하하년(下下年) 또는 하중년(下中年)으로 고정되고 이는 결국 영정법(永定法)으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향후 과제

격언 중에 ‘배가 고프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배가 아픈 것은 참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이는 세부담의 절대적인 수준이 무거운 것보다는 남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부담수준이 정당하다고 인식하는 수준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많거나 다른 사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을 때 더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불공평하다는 인식은 조세제도와 세무행정 과정 모두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조세제도의 경우 입법과 과정에서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미 인식된 불공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세무행정 과정에서 탈세나 체납 등을 통해서 야기되는 세부담의 불공평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불합리한 불공평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세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논의는 주로 조세제도 그 자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세무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된다는 기대와 함께 세무행정의 구체적인 모습이나 과정, 그리고 결과들에 대해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세무행정의 과학화 등을 통해서 우리가 세제를 통해서 의도한 공평한 조세부담 구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세무행정의 현황이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료들도 국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IP**

.....
 세무행정의 현황이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료들도 국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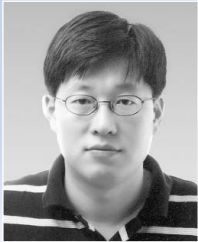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재정건전화 지속기간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
송호신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정책방향
김지영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정과제의 성과관리 현황과 개선방향
원종학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재정건전화 지속기간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



송호신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hsong@kipf.re.kr)

재정건전화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재정당국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 서론

2008년 말 시작되어 2009년 고조에 이르렀던 경제위기, 그 과정에서 재정 위기라고 불리었던 그리스 등 일부 남유럽 국가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과 더불어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화두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의 경제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그 결과로서 재정건전성 약화가 나타나고, 그러한 재정건전성 약화가 다시 경제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재정위기’를 낳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회가 될 때 최대한으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경제위기가 다시 또 발생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인 재정건전화의 지속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재정건전화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재정당국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본론

재정건전화 관련 최근 연구로는 Reyes Maroto Illera와 Carlos Mulas-Granados (2008) 및 Gupta et al.(2004)을 들 수 있다. Reyes Maroto Illera와

Carlos Mulas-Granados (2008)는 경기조정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Budget Balance)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그 해에 재정건전화가 일어났다고 정의한다. 1960년에서 2004년 사이의 15개 EU 국가의 경기조정재정수지 연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국가 부채 수준, 내각 분열의 정도(정당 수 및 지출부처 수로 측정), 재정건전화의 강도¹⁾, 재정건전화의 질(재정수지가 개선된 정도에서 primary expenditure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 등이 재정건전화가 종료될 확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upta et al.(2004)은 개발도상국에서 재정건전화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그들은 적어도 매년 GDP 대비 1.5% 이상 재정적자가 감소하면 지속적인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졌다고 정의하였으며, 분석을 위하여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IMF의 지원을 받은 29개 개발도상국을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그들은 임금과 이전지출, 그리고 보조금이 높을수록 재정건전화가 종료될 확률이 높아지고, 재정 건전화의 규모²⁾가 클수록 재정건전화가 종료될 확률이 낮아지며, 재정건전화에 실패한 횟수가 많을수록 재정건전화가 종료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멕시코, 슬로바키아, 터키를 제외한 26개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상술한 두 선행연구가 매년을 독립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재정건전화를 적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2년 이상의 완만한 재정건전화를 허용하여 재정건전화 지속기간을 정의하고, 그에 기초하여 재정건전화 지속기간에 관한 특징과 결정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재정건전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Primary Balance, CAPB)가 GDP 대비 1% 이상 개선되거나 2년에 걸쳐 1% 이상 개선되는 경우에는 첫해에 0.2% 이상 개선되는 경우에만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고, 이후 연간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CAPB)가 0.2% 이상 개선되지 못하면 건전화 정책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기간중의 특정연도에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CAPB)가 악화되거나 개선규모가 0.2%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해에 이를 상쇄하여 연평균 0.2% 이상 CAPB가 개선된다면 건전화 정책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2년 이상의 완만한재정건전화를 허용하여 재정건전화 지속기간을정의하고, 그에 기초하여 재정건전화 지속기간에 관한 특징과 결정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absolute terms of subtracting the annual variation of the cyclically adjusted budget balance to the chosen threshold that determines when a fiscal consolidation takes place"(p.153)

2) 재정건전화의 규모(Size of adjustment)는 재정건전화 기간 동안 재정수지의 누적 변화로 측정한다.

재정건전화
지속분석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제도적인 요인,
초기 경제상황 및
경제적인 요인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표 1〉 완만한 조정의 재정건전화

	대상기간	관측치	횟수	해당기간	횟수
Australia	1971~2009	38	2	86~88, 94~98	8
Austria	1976~2009	33	1	96~97	2
Belgium	1985~2009	24	1	93~98	6
Canada	1970~2009	39	2	86~88, 93~97	8
Czech	1999~2009	10	0	-	0
Denmark	1990~2009	19	2	96~99, 03~05	7
Finland	1977~2009	32	2	88~89, 93~00	10
France	1978~2009	31	2	83~84, 94~99	8
Germany	1991~2009	18	3	92~94, 97~99, 05~07	9
Greece	1992~2009	17	1	98~99	2
Hungary	1993~2009	16	2	95~96, 07~09	5
Iceland	1992~2009	17	3	95~97, 99~00, 03~06	9
Ireland	1990~2009	19	2	91~94, 03~06	8
Italy	1980~2009	29	3	82~83, 90~97, 06~07	12
Japan	1992~2009	17	1	05~06	2
Luxembourg	1990~2009	19	2	92~97, 05~07	9
Netherlands	1971~2009	38	4	86~88, 91~93, 96~97, 04~05	10
New Zealand	1986~2009	23	3	89~91, 93~94, 00~02	8
Norway	1992~2009	17	2	93~00, 04~07	12
Poland	1996~2009	13	0	-	0
Portugal	1992~2009	17	1	06~07	2
Spain	1992~2009	17	1	96~97	2
Sweden	1992~2009	17	2	95~00, 04~07	10
Switzerland	1990~2009	19	2	98~00, 05~07	6
U. K.	1972~2009	37	2	79~82, 94~99	10
U. S. A.	1970~2009	39	4	76~77, 87~89, 93~98, 05~06	13
26개 국가	1970~2009	615	50		178

재정건전화 지속분석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제도적인 요인, 초기 경제 상황 및 경제적인 요인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변수 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정건전화의 지속기간은 평균적으로 3.6년 으로 최대 8년까지 기록하고 있다. 건전화 시작연도는 가장 빠른 경우 1976년 부터이며 가장 늦은 시작연도는 2007년이다. 건전화 국가의 이전 건전화 경험

회수는 평균 0.7번, 최대는 3번으로 네덜란드와 미국이 기록하였다. 건전화가 동시대적인 추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시에 건전화가 진행중인 다른 국가들의 수를 나타내는 변수를 산출한 결과 평균 12.4개의 여타 국가들이 동시에 재정건전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경우는 21개 여타 국가들이 동시에 추진하였다.

건전화 직전의 경제변수들을 보면 부채/GDP 비율이 66.5%, GDP갭이 평균 -0.7%로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제도적인 변수의 경우 연방제 및 대통령제가 전체 사례의 각각 1/4~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는 건전화기간중 평균 0.9번 있었다. 마지막으로 건전화기간중 재정지출/GDP는 평균적으로 연평균 기준 0.9%p 줄어든 것으로, 재정수입/GDP는 연평균 기준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건전화기간중 로그 GDP는 연평균 2.9% 증가하였다.

건전화 직전의 경제변수들을 보면 부채/GDP 비율이 66.5%, GDP갭이 평균 -0.7%로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건전화 관련 변수					
지속기간	50	3.56	1.72	2	8
건전화 시작연도	50	1995.3	7.57	1976	2007
이전 건전화 경험 회수	50	0.72	0.83	0	3
동시대 건전화중인 다른 국가의 수	50	12.36	6.22	0	21
초기변수					
건전화 직전 부채비율	43	66.50	29.71	8.60	165.54
건전화 직전 GDP갭	50	-0.70	2.30	-7.64	6.57
건전화 직전 장기 금리	48	7.85	3.56	1.49	19.36
제도적인 변수					
연방제 더미	50	0.26	0.44	0	1
대통령제 더미	50	0.2	0.40	0	1
건전화기간중 국회의원 선거횟수	49	0.94	0.69	0	3
건전화기간중 주요 경제변수					
건전화기간중 지출증가율(%p)	50	-0.85	1.32	-6.40	2.14
건전화기간중 세입증가율(%p)	50	0.54	0.78	-2.30	2.53
건전화기간중 로그 GDP증가분	50	2.85	1.47	-1.64	5.67

본 연구에서는 재정건전성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설명변수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의 관심은 건전화기간의 지속성에 주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발견에 있다. 분석은 모수적인 방법(parametric approach)을 이용하고자 하며, 특히 건전화기간 지속성 시간에 의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와이불 분포(Weibull Distribution)를 이용하고자 한다. 와이불 분포는 지수분포 등 다양한 형태의 분포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듀레이션 분석에서 많이 활용되는 분포이다.

와이불 분포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분포함수(distribution function)는 $F(t)=1-\exp(-\gamma t^\alpha)$,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는 $S(t)=\exp(-\gamma t^\alpha)$, 그리고 위험률함수(hazard function)는 $\lambda(t)=f(t)/S(t)=-\gamma \alpha t^{\alpha-1}$ 이다. 여기에 설명변수(covariate)를 도입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 스케일 모수인 $\gamma(\cdot)$ 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gamma(X)=f(X;\beta)=\exp(X\beta)$ 와 같은 함수적인 제약을 주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는 위험률함수를 일종의 곱의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비례적인 위험률함수 형태(proportional hazard function form)라고 부른다³⁾. 여기서 모수 β 의 해석은 $\ln(\lambda(t))=X\beta+(\alpha-1)t+\alpha$ 로부터 얻을 수 있다. 즉 β_i 는 설명변수 x_i 한 단위가 증가할 때 위험률(hazard rate) λ 의 증가율로 해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술한 와이불 분포(Weibull distribution)를 기초로 재정건전화 지속기간의 듀레이션을 분석하고자 한다. 데이터 측면에서 한 가지 특징은 재정건전화의 경우 2009년의 경제위기로 분석기간인 1970~2009년중 2009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흔히 듀레이션 분석에서 고려해야 하는 우측절단(right censoring)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필자가 아는 한 재정건전화의 지속기간 결정과 관련하여 잘 알려진 이론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건전성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설명변수를 포함하는 사후적이고 즉흥적인(ad-hoc) 방식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재정건전화의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전화 진행중인 국가의 이전 건전화 경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건전화 경험(exper)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였다. 예컨대 두 번째 재정건전화가 추진중인 국가의 “exper”은 1이 된다. 국가들 간 재정건전화 추진의 동조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동시대에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의 수(other nations)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건전화시작 직전연도에 선거가 있었는지를 고려하였다. 여타 설명변수로는 재정건전화 초기부채수준 반영하는 변수로 재정건전화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의 부채/GDP수준(liab_lag)와 금리수준(intlong_lag)을 고려하였으며, 건전화 시작 직전연도의 경기를 반영하기 위하여 GDP갭(gdpgap_lag)을 이용하였다. 한편, 건전화기간중의 GDP 변화를 고

3) 이에 따라 위험률 함수는 $\lambda(t|X;\beta) = \exp(X\beta) \alpha t^{\alpha-1}$ 의 형태가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모수는 β 와 α 가 된다.

려하기 위하여 연평균 로그GDP 변화를 이용하였다. 한편 세출 및 세입 수단이 동시에 사용된 경우의 세출축소분의 세입증가분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반영하는 변수(exp_re_size)를 이용하여 건전화 지속기간에 대한 재정축소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고려해 보고자 한다. 상술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재정건전화 지속기간을 추정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다⁴⁾.

1. 재정건전화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많을수록 건전화 종료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 건전화 초기 금리수준이 높을수록 지속중인 재정건전화의 종료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3. 건전화기간중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건전화가 지속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4. 와이블분포의 모수 α 가 1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어 건전화기간이 길어질수록 건전화 종료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초기 부채 규모 및 재정축소의 상대적인 크기는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번에서는 재정건전화 지속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변수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먼저 건전화기간중 세입 및 세출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연평균 세출증가분(inc_exp_ratio , %p) 및 건전화기간중 연평균 세입증가(inc_tax_ratio , %p)를 정의하고 설명변수에 추가하였다. 상술한 두 변수를 단순히 추가한 결과는 앞선 분석결과와 거의 동일하다. 단, 초기 경기가 좋은 경우 재정건전화가 지속되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이 새로운 발견이다. 새롭게 추가된 세입 및 세출 변수는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재정건전화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많을수록 건전화 종료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건전화 초기 금리수준이 높을수록 지속중인 재정건전화의 종료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4) 추정모형 및 방법에 관해서는 〈부록6〉 참조

재정건전화 추진의 수단이 재정지출의 축소 및 재정수입의 확대라고 할지라도 실증적으로 그러한 수단이 재정건전화가 지속될 가능성 자체를 높여주지는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건전화 지속기간 추정 결과

	추정 1	추정 2
이전 재정건전화 경험 exper	-0.081 (0.247)	-0.105 (0.252)
건전화 추진중인 여타 국가들의 수 other_nations	-0.214*** (0.036)	-0.215*** (0.037)
초기 부채규모 liab_lag	0.000 (0.005)	0.000 (0.005)
초기 GDP 갭 gdpgap_lag	-0.174 (0.109)	-0.230* (0.130)
초기 금리수준 intlong_lag	-0.306*** (0.064)	-0.325*** (0.067)
연방제 더미 fed_b	0.559 (0.477)	0.561 (0.470)
직전연도의 선거 elect_lag	0.088 (0.375)	0.122 (0.378)
대통령제 pres	-0.665 (0.562)	-0.729 (0.563)
재정축소의 상대적 크기 exp_re_size	-0.027 (0.026)	-0.022 (0.027)
연평균 로그 GDP 증가분 inc_logy	-0.191* (0.106)	-0.168 (0.111)
연평균 세출 증가분 inc_exp_ratio	-	0.134 (0.308)
연평균 세입 증가분 inc_tax_ratio	-	0.190 (0.314)
α	4.152*** (0.532)	4.205*** (0.544)
Log likelihood	-8.273	-8.000
관측치	43	43

주: () 안은 표준오차,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

위의 추정에서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이 재정건전화의 지속성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재정건전화의 주된 내용이 재정지출의 축소 및 재정수입의 확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흥미롭다. 즉, 재정건전화 추진의 수단이 재정지출의 축소 및 재정수입의 확대라고 할지라도 실증적으로 그러한 수단이 재정건전화가 지속될 가능성 자체를 높여주지는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위의 발견을 더욱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를 정의하였다. $exp_cut = I(inc_exp_ratio < 0)$ 는 건전화기간중 연평균 재정지출/GDP이 축소된 경우 1의 값을 갖는 지시변수이며, $tax_inc = I(inc_tax_ratio > 0)$ 는 건

전환기간중 연평균 재정수입/GDP가 증가한 경우 1의 값을 갖는 지시변수이며, $\text{both_cut_inc} = I(\text{inc_exp_ratio} < 0, \text{inc_tax_ratio} > 0)$ 는 세출이 줄어들고 세입이 확대된 경우에 1의 값을 갖는 지시변수이다. 아래 표에 나와 있듯이 재정건전화 기간중 평균적으로 세입 확대 및 세출 축소가 병행된 사례는 31건이며, 세입 확대만 이루어진 경우는 11건 그리고 세출 축소만 일어난 경우는 8건이다.

재정건전화 기간에는 세출 축소 및 세입 증대 어느 하나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4〉 건전화 기간중 세입 확대 및 세출 축소 조합의 사례

(단위: 건)

	tax_inc=1	tax_inc=0	합
exp_cut=1	31	8	39
exp_cut=0	11	0	11
합	42	8	50

결국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기간에는 세출 축소 및 세입 증대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세출 축소 및 세입 증대가 동시에 활용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정건전화의 지속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변수들을 추가로 정의하였다. 즉, 세출 축소만 있는 경우의 더미변수(exp_cut_only)를 정의하고 세출 축소만 있는 경우의 건전화기간중 연평균 세출 증가분(inc_exp_only)을 정의하였다. 비슷한 방식으로 세입 확대만 있는 경우의 더미변수(tax_inc_only)를 정의하고 세입 확대만 있는 경우의 건전화기간중 연평균 세입증가분(inc_tax_only)을 정의하여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추정 결과는 앞의 두 경우와 대체로 비슷하다. 재정건전화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많을수록, 그리고 건전화 초기 금리수준이 높을수록 지속중인 재정건전화가 종료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가지 흥미로운 발견은 초기 경기가 좋을수록 그리고 건전화기간중 경제성장이 높아질수록 지속되던 재정건전화의 종료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한편, 세입 증대 및 세출 축소의 병행 여부에 따른 세입 증대 및 세출 축소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들 변수가 경제성장을 반영하는 GDP갭 및 로그 GDP 증가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양자간의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초기 경기 및 건전화기간중 경제성장의 유의성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은 전반적으로 경기 또는 경제성장이 세입 및 세출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관성 있는 추정결과가 나오는 설명변수는 동시 재정건전화 추진 국가들 수 및 초기금리수준 그리고 초기 경기여건 및 기간중 경제성장이다.

〈표 5〉 건전화 지속기간 추정 3

이전 재정건전화 경험 exper	-0.081 (0.251)
건전화추진중인 여타 국가들의 수 other_nations	-0.209*** (0.038)
초기 부채규모 liab_lag	0.002 (0.006)
초기 GDP 갭 gdpgap_lag	-0.237* (0.134)
초기 금리수준 intlong_lag	-0.346*** (0.074)
연방제 더미 fed_b	0.682 (0.494)
직전연도의 선거 elect_lag	0.165 (0.387)
대통령제 pres	-0.813 (0.600)
재정축소의 상대적 크기 exp_re_size	-0.027 (0.032)
연평균 로그 GDP 증가 inc_logy	-0.223* (0.119)
건전화기간중 연평균 세출증가 both_exp (세출축소와 세입확대 병행시)	-0.005 (0.411)
건전화기간중 연평균 세출증가 inc_exp_only (세출축소만 이루어진 경우)	-0.111 (0.388)
건전화기간중 연평균 세입증가 both_tax (세출축소와 세입확대 병행시)	0.004 (0.452)
건전화기간중 연평균 세입증가 inc_tax_only (세입확대만 이루어진 경우)	0.565 (0.534)
α	4.172*** (0.536)
Log likelihood	-8.000
관측치	43

주: ()안은 표준오차,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

Ⅲ.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세 번의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는데 계속해서 일관성 있는 추정결과가 나오는 설명변수는 동시 재정건전화 추진 국가들 수 및 초기 금리수준 그리고 초기 경기여건 및 기간중 경제성장이다. 이 가운데 흥미로운 결과는 동시에 재정건전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건전화

종료 확률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재정건전화의 국제적인 공조가 재정건전화의 횡적인 확대뿐 아니라 건전화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단순히 생각해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두 이웃 국가가 있을 때 한 국가에서는 세출 축소 및 세입 확대를 통한 재정건τί화를 추구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고수하는 국가는 무역수지의 악화가 심화되어 국내생산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고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경제여건이 받쳐만 준다면 재정건τί화로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국제적인 공조와 비슷한 논리로 재정건τί화도 공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한 가지 예로 건τί화 지속기간의 확대를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τί화기간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세출 축소 및 세입 확대보다도 기본적으로 경제성장 및 경기관련 변수가 유의하게 추정되었다는 점도 흥미로운데, 이는 지속적인 재정건τί화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병행되면서 세수확대 등이 자연스럽게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세입 확대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은 경제성장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관하여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재정건τί화 지속기간의 분석도 결국에는 재정건τί화의 정의에 의존하는 한계점이 있다. Alesina(1995)는 재정건τί화의 기준을 다소 바꾸더라도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보다 일반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임계치를 바꾸더라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는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작업은 추후 과제로 남겨놓기로 하겠다. 둘째, 데이터 측면에서 OECD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건τί화수가 50번인데 이는 보다 풍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는데 따른 근본적인 한계점이라 할 수 있겠다. 더욱 풍부한 국가별 데이터가 있다면 다양한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KIPF**

지속적인 재정건τί화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병행되면서 세수확대 등이 자연스럽게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Alesina, A., R. Perotti, "Fiscal Expansions and Fiscal Adjustments in OECD Countries" NBER Working Paper 5214, 1995.
- Ilera R. and Mulas-Granados, C., "What makes fiscal consolidations

last? A survival analysis of budget cuts in Europe (1960 – 2004)”,
Public Choice, 134, 2008, pp. 147~161.

Gupta S. et al., “The persistence of fiscal adjustments in developing
countries,” *Applied Economics Letters*, 11, 2004, pp. 209~212.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정책방향



김지영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jykim@kipf.re.kr)

I. 서론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경영 전반에 대하여 정부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예산, 인력, 투자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가지는 결정 권한은 많지 않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소유주체로서 기관경영의 상당 부분에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틀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다. 공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부의 규제영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공기업에 대한 규제영역

재무, 기업운영의 측면	관리, 감독의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설립목적 및 목표의 부여 • 장기적인 종합경영계획과 전략의 승인 • 투자결정 등 주요 재무사항에 관한 승인 •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경영진의 임면 • 정부정책과 관련된 대행사업의 수행 • 공기업 정보의 정기적 보고에 관한 사항 •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경영평가 • 공기업 경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

1) 김일섭(1992)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경영성과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 예산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지침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등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2010년 법 개정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지침들을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지침과 경영계획에 관한 지침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지침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지침	경영계획에 관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 • 기관장 경영계획서 작성지침 •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 기관장 경영계획서 작성지침 •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지침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이밖에도 공공기관에는 2010. 3. 22일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행해진다. 또한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속해 있는 분야 및 산업별 특성에 따라 가격규제나 독점규제와 같은 산업별 규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경영성과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특히 정부의 인사나 예산 등의 측면에서 내부통제(계층적 통제)를 대폭 완화하여 일선 관리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성과를 향상하도록 하는 신공공관리론은 공공기관 자율성의 확대와 성과중심의 평가에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안으

로,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재무상의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기관 성과 평가에 기초하여 기관장에게 성과연봉과 계약연장을 결정하는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였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존의 계층제적 관료제 모형에서 탈피하여 보다 시장적이고 신축적인 관리체계를 강조하는데, 관리구조의 초점이 투입통제에서 성과통제로의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²⁾. 그러나 책임운영기관제도를 통한 기관장의 권한 확대가 기관운영의 효율성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지만, 자율권의 실효성이 낮고³⁾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공공기관 경영에 자율 및 책임을 확산하기 위하여 2010년 1월부터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은 기관장에게 경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계약에 명시된 성과 목표의 달성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를 제공하여, 기관장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12월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공모를 통하여 15개 기관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4개 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기관은 2010년 1월에 경영자율권 확대 내용과 성과목표에 관한 자율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본고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경영자율권 사업의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은 기관장에게 경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계약에 명시된 성과 목표의 달성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를 제공하여, 기관장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1.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내용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정부와 1년 동안의 경영자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계약은 공공기관이 부여받게 되는 자율권의 내용, 계약기간 동안 달성해야 하는 성과목표, 성과목표의 평가방법, 성과목표 달성 시 받게 되는 인센티브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성과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 경영자율계약은 기본적으로 개별 공공기관과 정부 양자간의 계약이므로, 공공기관별로 계약 내용은 모두 상이하다. 특히 자율권의 내용과 성과목표의 차별성이 두드

2) 박석희(2006)
3) 문명재 외(2010)

2010년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으로 인하여 기관이 가지게 된 자율권은 크게 인력운영 자율권, 조직구성 자율권, 예산운영 자율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러진다. 자율권의 내용은 기관의 수요에 의하여 결정되며, 대상기관의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성과목표 역시 기업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다. 성과목표의 평가방법과 인센티브 체계는 자율권 내용이나 성과목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서로간에 유사성을 가진다.

2010년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으로 인하여 기관이 가지게 된 자율권은 크게 인력운영 자율권, 조직구성 자율권, 예산운영 자율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력운영의 자율권은 시범기관에 해당하는 4개 기관 모두 부여받았는데, 해외개발 또는 신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자율경영 계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직운영의 자율권은 기관 내에 조직을 신설하고 직위나 직급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에 필요했던 주무부처와의 협의, 결재 과정을 없애고 기관이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3개 기관이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요구하였다. 단, 상위 직급의 비율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예산운영의 자율권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또는 인센티브 등과 관련되어 있는데, 기존의 공공기관 예산운영 지침에서 벗어나 부가적인 급여 체계 또는 인센티브 체계를 수립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과 지역난방공사는 초과이익 및 원가절감의 10%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스공사에는 해외사업 전문인력에 대한 별도의 급여체계를 적용하도록 허용하였다. 단, 인센티브는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한하여 지급 상한(월봉의 100%) 이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제약이 존재한다.

경영자율계약을 통해 기관이 부여받은 자율권과 일반 공공기관의 관련 권한을 비교한 결과가 <표3>에 정리되어 있다.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인력과 조직 운영에는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인력 증원 필요 시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며,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 자체 기능조정 또는 인력의 재배치로 해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지속적인 인력이 요구되는 경우에 다음연도 예산에 먼저 반영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

〈표 3〉 자율권 확대 기관과 일반 공공기관의 비교

	자율권 확대 기관	일반 공공기관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미래전략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증원 • (기업은행)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증원 • (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 인력 증원 • (지역난방) 설비확충 관련 인력 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2010. 1. 1 현재 현원이 직제상 정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2012년 말까지 초과인원 해소) • 인력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시행 • 인력증원소요 발생시 자체 기능조정 또는 인력의 재배치로 해소 • 인력증원은 다음연도 예산에 먼저 반영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행) 직위·직급 자율 운영 • (인천공항) 직위·직급 자율 운영 • (가스공사) 조직신설, 직위·직급 자율 운영 • (지역난방) 조직신설, 직위·직급 자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시행 • 기구 신설·확대 필요시 자체 기능조정 또는 인력의 재배치로 해소 • 기구 확대는 다음연도 예산에 먼저 반영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별도 급여 체계 운영 • (인천공항) 성과목표 초과이익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 • (지역난방) 성과목표 초과이익(또는 원가절감)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편성권을 가지나, 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함. • 각 공공기관은 예산편성 시에 예비비에 계상한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함. • 예비비에 계상할 성과상여금의 재원조성 방안 및 기본연봉, 월 기본급 등의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정함.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을 통한 자율권은 인력, 조직, 예산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한 것이며, 특히 공공기관의 수요에 따른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직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며,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구 신설·확대 필요시 자체 기능조정 또는 인력의 재배치로 해소함을 기본으로 하며, 기구 확대는 다음연도 예산에 먼저 반영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 예산편성 및 성과급 체계 역시 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각 공공기관은 예산편성 시에 예비비에 계상한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예비비에 계상할 성과상여금의 재원조성 방안 및 기본연봉, 월 기본급 등의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기관장 및 감사의 성과급은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편성하며, 직원 성과급은 공기업의 경우 월 기본급의 500%,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본월봉의 200% 이내로 편성한다.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을 통한 자율권은 위와 같은 인

자율경영실적 평가는 공통목표와 고유 성과목표의 두 부분에 대하여 각각 이루어지며, 고유 성과목표에 대한 계량평가와 공통목표에 대한 비계량평가로 구성된다.

력, 조직, 예산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한 것이며, 특히 공공기관의 수요에 따른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자율권에 대응하는 책임성의 강화가 구체적인 성과목표의 제시와 그에 따른 성과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율권 확대에 따른 성과목표는 공통목표와 기관별 고유목표로 구분된다. 공통목표는 국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주무부처가 설정하며, 경영자율권 시범기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⁴⁾. 이에 반해 기관별 고유목표의 세부 항목은 기관별 특성과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각 기관과 주무부처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기관별 고유목표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4〉 기관별 고유목표

기관명	성과목표
인천국제공항공사	동북아 허브공항 실현, 기업가치 제고, 해외사업 진출 기반 확대
중소기업은행	수익창출 역량 강화, 영업역량 제고, 중소기업 자금공급 강화
한국가스공사	유·가스전 확보매장량 증대, 해외사업 수익증대, 천연가스 도입가격 안정, 미공급지역 배관망 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익성 개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서비스공급단계 개선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10.08.04)

기관별 고유목표하에는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포함되며, 각각의 성과지표에 대하여 성과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는 과거 실적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자율경영 실적 평가 시에 사용될 지표별 가중치 역시 경영자율권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자율경영실적 평가는 공통목표와 고유 성과목표의 두 부분에 대하여 각각 이루어지며, 고유 성과목표에 대한 계량평가와 공통목표에 대한 비계량평가로 구성된다. 공통목표는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와 노사관계 선진화 외에, 자율권 운영의 적정성을 함께 비계량적으로 평가한다. 고유 성과목표는 자율경영계획서에 명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한다. 개별적인 성과지표별로 도출된 고유 성과목표 점수를 성과목표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점수로 환산하고, 여기에 공통목표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도출하게 된다. 종합점수에 따라 시범대상 기관은 우수, 보통, 부진의 3등급으로 평가된다. 평가

4) 공통목표는 경쟁 도입 및 증시 상장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의 추진 결과와 노사관계 선진화이다.

등급에 따라 자율권 지속여부, 기관장 인사, 임직원 성과급 등이 결정된다⁵⁾.

우수기관에게는 경영자율권 기간을 연장하고, 기관장의 연임을 건의하며,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에 자율경영계획서 평가를 50% 반영하며, 직원 성과급을 1등급 범위 내에서 가산한다. 보통기관은 경영자율권 기간을 연장하고 자율경영계획서 평가를 기관장 성과급 지급에 50% 반영하며, 동시에 자율경영계획서를 재점검하게 된다. 부진기관은 경영자율권을 회수하며, 기관장 자진 사퇴와 함께 임직원 성과급은 1등급 범위 내에서 차감한다. 특히 경영자율권 회수 시 자율권으로 인하여 증원된 정원 및 신설된 조직은 자율권 이전 단계로 환원해야 한다.

2.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근거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성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유권의 차이 이외에도 경영진의 재무적인 자율성 및 책임성과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정도 및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자본수익률이 민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고, 전반적인 경영 성과 역시 높지 않다. 물론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공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수익성이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을 공공의 목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기업의 특성들과 국가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국가의 공기업 성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경영 자율성의 정도와 공기업의 성과는 여전히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⁶⁾.

실제로 Ayub and Hegstad(1987)는 다양한 국가들의 경제성장 단계와 공기업 규모를 관찰하였는데, 산업 초기 단계의 저개발 국가에서 공기업의 비중이 가장 낮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공기업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안정된 선진국에서는 공기업 비중이 오히려 낮았다. 공기업의 비중뿐 아니라 경영구조 역시 이러한 경제성장 단계와 연결되어 있었다.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시장 환경의 복잡성이 커지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관료적 경영보다 분권화된 경영 구조가 필수적이 되며, 국가경제가 성숙할수록 경영의 분권화 정도 역시 증가하였다. Ayub and Hegstad(1987)는 경제성장을 5 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제성장 단계에서의 권한의 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공기업의 특성들과
국가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국가의
공기업 성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경영 자율성의 정도와 공기업의
성과는 여전히 양(+)
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5)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세 기관과 달리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아닌 금융위원회의 국책은행 경영평가를 받고 있어, 기관장 및 임직원의 성과급 체계는 별도로 결정

6) Ayub and Hegstad, 1987

공기업 기관장의 자율성이
증가하고 공기업이
시장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경영진의 책임성
및 재무건전성에 대한
이해는 높아진다.

〈표 5〉 경제성장 단계별 공기업의 특성

단계	특 성	권 한
1	정부 부처의 일부로 조직	소유권: 정부 전략적 결정권: 정부 경영권: 정부
2	공무원 법률 및 공무원 제도로 규제	소유권: 정부 전략적 결정권: 정부 및 경영진 경영권: 경영진 및 정부
3	지주 회사와 대지주 회사가 규제	소유권: 정부 전략적 결정권: 지주 회사 경영권: 경영진
4	정부가 소유하면서 상법으로 규제	소유권: 정부 전략적 결정권: 이사회 경영권: 경영진
5	민간 부문과 공적 부문의 합자 형태로, 주식 상장	소유권: 정부 및 민간 전략적 결정권: 이사회 경영권: 경영진

경영 자율성과 공기업의 성과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영(management)과 운영(operation)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 투자, 가격 결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들이 기업의 재무적인 결과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반응하기 위하여 투입 및 산출과 관련된 변수들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지만 공기업의 경우 기업적인 결정에 대한 제약이 많다. 이러한 제약은 공기업의 기업적인 특성을 저하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둘째, 공기업의 경우 경영에 대한 책임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성과나 사업성과가 경영진 및 직원들에게 미치는 압박이 약해지며, 결과적으로 투자 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 비효율적인 투자결정과 낮은 생산성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셋째, 공기업의 경영진 또는 이사회가 소규모 투자, 직원 채용 및 해고, 임금 수준 결정, 자본운용에 관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정부의 승인을 구해야 하는 경우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될 뿐 아니라 공기업 경영진의 기업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감퇴시킨다.

공기업 기관장의 자율성이 증가하고 공기업이 시장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경영진의 책임성 및 재무건전성에 대한 이해는 높아진다. 또한 책임성

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 역시 경영의 자율성의 정도가 높을 때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공기업에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재무성과에 대한 목표 및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회적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은 공기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경영 자율성의 확대는 공공기관의 경영권을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고 결과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III. 정책방향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은 기업적인 성향이 높은 공공기관의 경영진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 성과 목표를 달성하게 하여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경제발전의 단계가 진행될수록 시장 환경의 복잡성이 커지게 되며, 공기업이 이러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투입, 투자와 같은 기업적인 의사 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관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입의 자율성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이후 기관별 성과 목표의 변화와 다른 재무지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직 관측 기간은 짧지만 성과 목표의 달성과 더불어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등과 같은 수익 규모 및 수익성 관련 재무지표도 함께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 자율성의 확대는 공공기관의 경영권을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고 결과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권은 정부에서 유지하되, 경영의 자율성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시장성이 강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투입에 대한 규제보다 성과에 대한 규제 및 보상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투입에 대한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과의 개선이라면, 투입 규제와 성과 규제를 동시에 존속시키는 것은 행정비용의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성과 목표 수립 시 수익성과 공익성을 가진 목표를 적절히 배분한다면 공공기관 설립의 목적을 충족하면서도 수익성 등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성과 목표의 배분이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시장성이 강한 공공기관은 수익성과 같은 효율성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의 공급 수준과 같이 기관 설립 목적을 반영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은 이러한 권한의 분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확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에서 시행하였던 인력, 조직, 예산의 자율운영은 기관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대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무조건적인 자율권의 제공이 아닌 성과 목표 달성에 대한 조건부로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기업 경영진의 노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관 내에 성과주의를 확산하여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중장기적 계획에 따른 성과 목표와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경영평가제도와 달리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에서 시행하였던 인력, 조직, 예산의 자율운영은 기관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운영 및 투입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규제가 인력 및 예산에 관한 지침이므로, 이에 대한 자율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 제도의 자율권 분야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각 자율권의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자율권의 내용을 기관별로 다양하게 발굴하여 이를 확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관별로 경영상의 특성과 필요한 자율권에 대한 수요가 모두 상이하므로, 자율권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는 것보다 일정한 가이드라인하에서 기관이 자체적인 수요에 의해 필요한 자율권을 제시하고 이를 사업 대상기관 선정 시 함께 심사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조직의 경우, 조직의 신설에 대한 자율권만이 부여되고 있으나 기관의 전체적인 조직 형태와 직급별 비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 운영의 자율권 폭이 확대됨과 동시에 예산 운영의 자율성이 연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규 채용을 통한 실무진 강화와 삼각형 구조의 안정적인 직급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명예퇴직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명예퇴직금의 규모가 예산 규제를 받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직원 인센티브가 경영성과 향상에 대한 동기 부여로 강하게 작동하고 있으므로, 인센티브 재원 활용에 관한 예산 운용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성과목표 가운데 공통목표는 계량지표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고유 성과목표와는 달리, 비계량지표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기관에게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더욱이 지분 매각이나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은 의회 입법, 산별노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기관의 의지로 개선할 수 없는 외생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성과목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1) 목표치가 설정 가능한 공통 목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경우 공통목표를 유지하되 평가 방식을 계량지표로 전환하거나, 2) 공통 목표를 폐지하고 대신 고유 성과목표에 공공성 또는 정책 부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포함, 또는 3) 계량지표의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공통 목표의 평가를 비계량지표로

유지하되 외생적 요인이 적고 평가 관련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여 평가에 사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유 성과목표는 수익성과 공공성, 기관의 성장 목표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제시함으로써 기관과 정부가 성과의 변동을 명확하게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입과 산출 및 그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할 수 있다. 단, 추후 경영자율권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성과 목표치 설정 방식을 객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는 과거의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관의 자체적인 역량 이외에 경기변동이나 외부적 충격과 같은 상황적 변수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의 목표치 산출 방식은 일회적인 시범사업으로서는 무리가 없으나,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고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하다.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율경영 사업 이후 성과가 향상되어 계약이 연장되었을 때 목표치에 실적 향상이 반영되어 가중평균되기 때문이다.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은 대상 기관의 수가 적고 평가지표의 수 역시 제한되어 있으므로, 경영평가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추세 분석을 통한 목표치 설정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목표치는 추세 분석 등과 같은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과거 관측치 및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한 다음, 추가적인 조정은 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영자율권 계약이 연장되었을 때의 성과 목표 산출을 위한 구체적, 객관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상체계는 현재 기관별로 차별화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초과이익을 이용한 인센티브 재원의 활용은 보상체계의 일부라기보다 자율권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자율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상체계 역시 기관별로 고유한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상체계를 차용한 기관과 차용하지 않은 기관 간에 조직 문화와 경영자율권 사업에 대한 동기 부여에 차이가 관찰됨에 따라, 경영자율권 사업의 동기를 경영진뿐 아니라 기관 내 직원들에게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보상체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자율권 사업을 통한 인력 증원 이후 평가 등급이 '부진' 시 인력 증원 등의 자율권 내역을 전체적으로 회수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증원된 인력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인력 구조 불균

현재의 목표치 산출 방식은 일회적인 시범사업으로서는 무리가 없으나,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고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하다.

경영 자율성의 확대는 공공기관의 경영권을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고 민간기업과 같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형의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인력 회수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율권을 통한 증원 인력은 계약직으로 모집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고 고용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따라서 '부진' 등급 시에는 증원된 인력을 회수하지 않고, 회수 또는 유지 여부를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되 총인건비 수준을 일정 비율 삭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질적인 임금이 삭감되게 되므로 기관이 불필요하게 인력을 유지하려 하는 유인을 제거하면서, 투입 부문에 대한 규제 역시 재강화하지 않음으로써 경영자율권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게 된다.

IV. 결론

경영자율권 확대의 이론적 근거는 신공공관리론, 공공선택 이론, 소유권 이론 등 경제학, 행정학, 경영학의 여러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경영자율권 확대 사업의 특성은 크게 자율권의 확대와 책임성의 강화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는데, 자율권의 확대는 공공선택 이론, 소유권 이론, 경영 자율권 이론과 관련이 깊으며 책임성의 강화는 신공공관리론과 연관이 있다. 자율권의 확대는 공공선택 이론, 소유권 이론, 경영 자율권 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 공공기관의 경영권을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고 결과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책임성의 강화는 확대된 자율권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로서의 작동과 성과지표 달성을 통한 기업의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공공관리론에 부합한다. 신공공관리론은 투입과 절차뿐만 아니라 산출(outputs)과 결과(results)에도 중점을 두어 성과중심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권한 위임과 융통성의 부여를 통해 공공부문의 탄력성을 높이되 이에 따른 책임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이론들을 종합해 볼 때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은 공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및 투자의 증대를 촉진할 수 있으며, 성과중심의 책임과 통제 강화를 통하여 확대된 자율권의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공공기관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원고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4개 시범사업기관 가운데 중소기업은행과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이후 6개월 동안의 성과지표 및 재무지표를 기관별 과거 추세 및 동종 산업 지표와 비교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수익 구조의 개선이 발생

하였다.

경영 자율성의 확대는 공공기관의 경영권을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고 민간 기업과 같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성과목표의 설정방식이나 보상체계를 보완하는 등의 개선점이 존재하지만,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은 공기업 정책, 특히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KIPF**

<참고문헌>

- 김일섭,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기업외부규제의 개선방안」, 『공기업논총』 Vol 4, No 1, 1992, pp. 117~141
- 박석희,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와 조직역량: 차단된 시계열설계를 통한 13개 공기업의 실증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3호, 2006, pp. 219~244.
- 문명재 외,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인사 자율성과 제도적 개선 방향」, 『한국조직학회보』 제7권 제 1호, 2010, pp. 39~63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0. 08. 04
- Clarke, T and Pitelis, C., *The Political Economy of Privatization*, Routledge, London, 1993
- Mahmood, A., Ayub, A. and Hegstad, S. O., Management of Public Industrial Enterprises,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Vol. 2, 1987, pp. 79~101

국정과제의 성과관리 현황과 개선방향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jweon@kipf.re.kr)

국정기조의 의미 파악과
영향력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제시된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한
적은 거의 없었다.

I. 서론

매번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의 업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선 당시 내 걸었던 선거공약을 다음 정부의 역점과제로 선정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되는 과제를 넓은 의미에서 국정과제라고 하는데 국정과제는 일종의 국가경영전략으로서 정부가 임기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정책을 구체화한 사업이다.

국정과제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하며, 정부혁신(개혁)일정을 구체화하여 대내외 신뢰를 제고하고, 정책 간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정기조의 의미 파악과 영향력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제시된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한 적은 거의 없었다¹⁾.

물론 국정과제에는 캐치프레이즈적인 성격을 띠는 사업도 다수 존재하고, 단기간에 그 성과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도 있다. 그러나 주어진 재정제약하에서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성과관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과, 정부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을 고려할 때 해당 정부의 전반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국정과제의 성과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국정과제 및 현 정부의 성과관리제도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국정과제가 본래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현행 성과관리제도의

1) 오철호 · 이기식(2008)

틀과 국정과제의 성과관리를 연계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국정과제는 정부가 임기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선언하고 이를 구체화한 사업이다.

II. 국정과제 및 정부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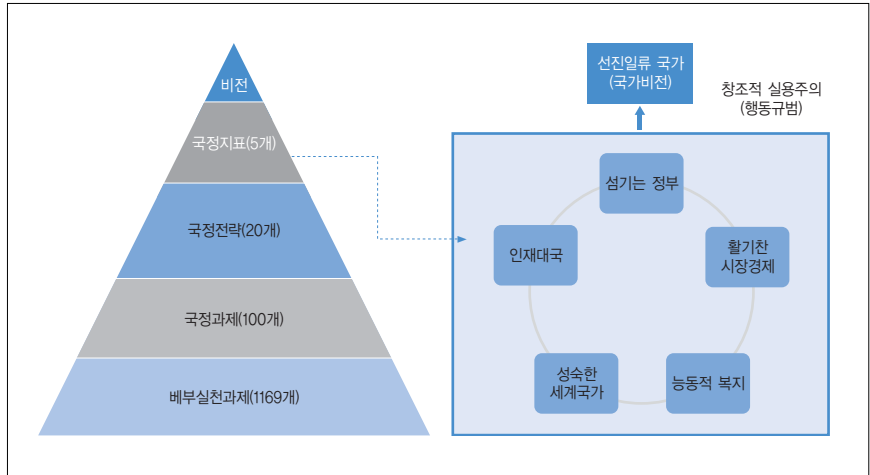
1. 국정과제의 개요

국정과제는 정부가 임기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선언하고 이를 구체화한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대선공약을 종합 정리하여 5대 국정지표, 193개 국정과제를 선정하였고, 정부출범 이후 정책여건을 반영하여 5대 국정지표, 20대 국정전략을 확정지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그해 신년연설 및 8·15 경축사 등에서 제시한 핵심과제를 추가하여 950개 세부실천과제를 설정함으로써 국정과제의 기본 틀을 체계화하였고, 이후 매년 새롭게 제시한 정책들을 추가하여 2010년 11월 말 현재 5대 국정지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1,169개의 세부실천과제(Action Plan)를 추진 중에 있다.

국정과제의 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선진일류국가'라는 국가비전이 제시된다. 이를 토대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정운영 방향으로서 5대 국정지표가 제시되며, 국정지표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20대 국정전략이 수립된다. 그 다음으로 국정전략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인 100대 국정과제가 제시되며,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액션플랜으로서 1,169개의 세부실천과제가 추진된다. 세부실천과제는 매년 새롭게 제시된 정책들을 추가하거나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수정·보완, 완료 등의 사유로 변동이 발생한다.

2010년 11월 말 현재 5대 국정지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1,169개의 세부실천과제(Action Plan)를 추진 중이다.

[그림 1] 국정과제의 기본틀



<표 1> 세부실천과제 변동상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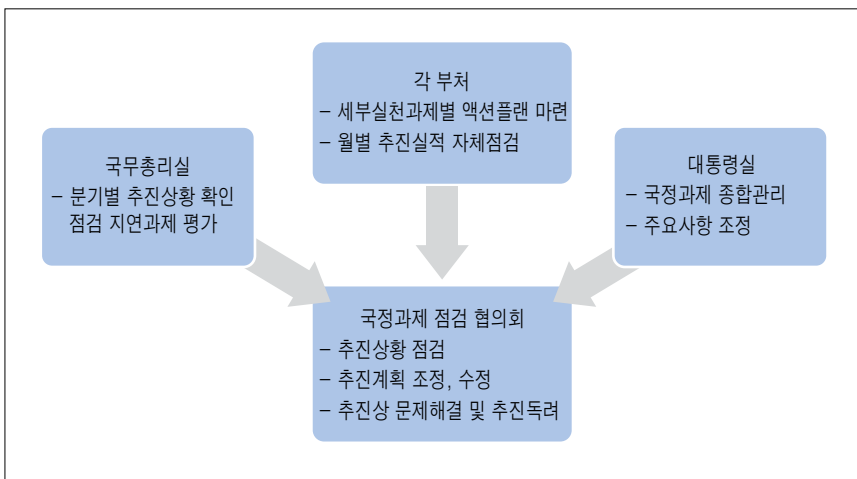
(단위: 개)

개수	완료	신규 추가	지속 추진	통합/삭제	개수	누계
'08. 10 950	△206	48	4	△13	'09. 1 783	1,002
'09. 2 783	△4	2	-	△1	'09. 4 780	1,004
'09. 4 780	△87	17	2	-	'09. 7 712	1,023
'09. 7 712	-	26	-	-	'09. 9 738	1,049
'09. 9 738	△13	13	△2	-	'09. 11 736	1,062
'09. 11 736	△80	46	1	-	'10. 1 703	1,109
'10. 1 703	△11	-	-	-	'10. 4 692	1,109
'10. 4 692	△29	2	-	△7	'10. 6 658	1,111
'10. 6 658	-	51	-	△2	'10. 8 707	1,162
'10. 8 707	△9	7	-	△14	'10. 9 691	1,169

국정과제의 관리체계를 살펴보면 국정과제 점검 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및 각 부처가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우선 각 부처는 소관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월 단위로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국무총리실은 분기별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한다. 대통령실은 국정과제 점검 협의회를 개최(분기 1회)하여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추진을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연 1회 이상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하여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국민들에게 공표한다.

성과관리란, 조직에 부여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정책개선 및 예산 등 자원배분에 환류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국정과제의 관리체계도



2.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계획과 평가를 중심으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 2조 제6호에 따르면 성과관리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된다. 즉, 조직에 부여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정책개선 및 예산 등 자원배분에 환류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의 성과관리가 강화되기 시

계획단계의
성과관리제도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성과계획서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작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가 시범 도입되었다. 2003년부터는 예산과 기금을 포괄해 재정사업 전반에 대하여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는 성과계획서 작성이 이루어졌고, 2005년에는 체크리스트 방식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도입되는 동시에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도 도입되었다. 2006년 9월 국가재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후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목표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2007년부터 중앙부처는 5년 단위의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와 5년 단위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실행계획인 '성과관리 시행계획'²⁾을 수립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성과관리 체계를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계획단계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각 부처의 성과관리 전략계획 등 중장기 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 등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다. 집행단계에서는 모니터링 체계를 이용하여 추진실태 점검 및 분석을 수행한다. 평가단계에서는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주요 사항에 대한 특정 평가를 병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환류단계에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책개선 및 인사·조직·예산으로의 연계를 통해 사업 자체에 대한 개선을 도모한다.

이하에서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계획 및 평가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계획단계의 성과관리제도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성과계획서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틀에서 벗어나 국가의 정책방향과 중장기 재정전망을 반영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원배분 방안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04년부터 작성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국가재정법 제7조에 근거하여 5회계연도 단위로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차년도 예산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성과계획서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근거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관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관련 법령에 의한 중장기계획이나 당해연도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성과목표관리제도하에서 각 부처는 매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³⁾를 작성해야 한다. 성과계획서는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로 구분된 위계구조를 가지며, 프로그램예산체계상의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일반재정·정

2)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과계획서'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같음하여 통합 작성했으나, 2011년 성과계획서부터 분리 작성하고 있다.

3)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 대응되는 서류로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정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된다.

보화·R&D사업으로 분류된다. 각 관리과제들은 사업목적의 달성 여부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1개 이상 설정해야 하며, 성과지표는 의욕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를 사전에 수립해두어야 한다.

평가단계의 성과관리제도로는 통합정부업무평가를 꼽을 수 있다. 2005년부터 예산당국은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중앙부처의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작하였다. 이후 통합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재정사업 이외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한 평가체계도 함께 통합·정립되었다.

현행 정부업무평가체계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다시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되는데, 자체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부처가 매년 주요 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에 대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업별로 평가를 받은 다음 평가총괄관련기관⁴⁾의 확인점검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특정평가는 정책과제, 국정관리역량, 국민만족도 평가로 세분되는데, 정책과제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핵심과제·일자리창출과제·녹색성장과제로 나뉘어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하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위원회는 민간위원 및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담당하고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장관 등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행 정부업무평가체계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 중앙행정기관 평가제도 현황

구 분		평가시행기관	평가총괄관련기관
자체평가	주요정책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체평가위원회)	국무총리실
	재정사업		기획재정부
	행정관리역량		행정안전부
특정평가	정책과제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핵심과제
			일자리창출과제
			녹색성장과제
	국정관리 역량		정책관리역량
			정책소통홍보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정책만족도
민원만족도			
			국무총리실

4)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재정사업은 기획재정부가, 행정관리역량은 행정안전부가 평가총괄기관이며 재정사업을 제외할 경우 평가 총괄기관의 확인점검은 간소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평가항목은
성과달성도 ·
계획수립의 적절성 ·
시행과정의 적절성 ·
정책효과성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로 2~3가지의
평가지표가 존재한다.

주요 정책 평가의 경우 각 부처가 기관 특성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지표별 배점 및 측정방법을 100% 자율로 설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방법을 총리실에서 예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각 부처별로 고유한 특성에 맞게 가감하여 사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지표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평가항목은 성과달성도 · 계획수립의 적절성 · 시행과정의 적절성 · 정책효과성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로 2~3가지의 평가지표가 존재한다. 성과 달성도는 ①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② 성과지표의 적절성으로 측정되며, 계획수립의 적절성은 ①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② 정책분석의 적절성으로 측정된다. 시행과정의 적절성은 ① 추진일정의 충실성, ②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③ 관련기관 및 정책과의 연계성으로 측정되고, 정책효과성은 정책 영향이 발생한 정도에 의해 측정된다.

주요 정책 평가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달리 평가지표의 종류 및 지표별 배점이 부처마다 상이하고, 정성적인 측정방법도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다. 다만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의 5등급으로 분류되는 점은 동일하다. 둘째, 국무총리실에서 명시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상이하며, 자체평가결과 보고서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지만 관리과제별로 세부적인 평가결과의 제시 없이 등급만 공개된다. 셋째, 평가결과가 성과급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등급기준을 적용하도록 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아 활용 정도는 미지수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계획(사업계획 및 성과계획)-관리-성과-환류의 4단계별로 공통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부처가 자체적으로 해당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유형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형별 질문을 작성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각 단계별로 배점이 사전 설정되어 있으며, 자체평가 후 기획재정부의 확인점검 과정을 거쳐 평가결과가 확정된다. 인건비 · 기본사업비 등 경상적인 행정경비, 자치단체에 포괄 이전되는 사업비, 정부내부지출 · 보전지출 · 예비비 및 기타 세출 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들을 제외한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주기로 매년 1/3씩 평가가 이루어진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사업별 평가등급을 포함해 각 평가지표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는 부처의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데, '우수' 이상 등급사업은 원칙적으로 총지출 증가율 이상 예산 증액이 가능하고 '미흡' 이하

등급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 향상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연속 10% 이상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행정관리역량 평가는 조직관리, 인사관리, 정보화관리, 재정운용의 4개 항목으로 세분되며, 평가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행정관리역량 평가의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
① 조직관리(300점)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정도	45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55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60
	고객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40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40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60
② 인사관리(100점)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50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	50
③ 정보화관리(100점)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60
	정보보호체계의 적절성	40
④ 재정운용(100점)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30
	지출한도 준수 여부	30
	재정집행 실적	40

2009년부터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고 확인점검은 지양하되,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세부 측정기준의 경우 일부 부처에 한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고 확인점검은 지양하되,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세부 측정기준의 경우 일부 부처에 한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관리 항목은 통합지수를 사용하여 해당부분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곤란하게 측정하며, 인사관리·정보화관리·재정운용 항목에 대해서는 부분배점 방식을 사용하는 등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이 상이하여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특정 평가는 핵심과제, 일자리창출과제, 녹색성장과제, 정책관리역량, 정책소통홍보, 규제개혁, 정책 및 민원만족도 등 총 8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 중 국정과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핵심과제, 녹색성장과제, 정책관리역량 평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핵심과제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제 살리기, 서민생활안정, 선진화 등 국정운용기조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연관과제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핵심

국정과제를 범정부적 차원의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부 수준의 세부실천과제는 성과목표체계 내에서 구체화된 관리과제로 볼 수 있다.

과제 추진노력 및 성과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참고자료를 통해 정성적·질적으로 평가한다. 녹색성장과제 평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체계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련 부처의 추진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 입각해 중점 추진중인 22개 과제와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형성-정책집행-정책산출·결과의 각 단계별로 평가한다. 정책관리역량평가는 부처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중점관리 법안 및 입법계획 등 부처의 전반적인 업무를 포괄하되, 핵심과제 및 녹색성장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외한 각 부처의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처가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정책관리역량의 평가 분야는 관계역량, 개혁역량, 입법추진역량으로 구성된다.

Ⅲ. 성과관리 측면에서 본 국정과제 관리현황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1) 계획단계

국정과제의 체계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라미드형의 위계구조를 가지는데, 이를 성과목표의 체계와 비교해서 설명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국정과제체계와 성과목표체계 비교

국정과제체계		성과목표체계
국정지표	⇔	국가 전체의 임무
국정전략	⇔	국가 전체의 전략목표
국정과제	⇔	국가 전체의 성과목표
세부실천과제	⇔	국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

우리나라는 범정부적 차원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개별 부처별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국정과제를 성과관리제도와 연계시켜 이해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범정부적 차원의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부 수준의 세부실천과제는 성과목표체계 내에서 구체화된 관리과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부실천과제의 추진현황에 대한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세부실천과제를 구성하는 각 과제의 수준이 성과목표체계상의 관리과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주요 정책과제 등 비재정사업일 경우와 달리 R&D 및 재정사업일 경우 수요예측 및 성과평가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세부실천과제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79번 국정과제 “녹색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상반기까지 추진시한을 잡고 ‘녹색기술개발 및 육성전략수립’, ‘핵융합연구개발 추진’, ‘융합형 녹색기술 개발’, ‘미래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을 세부실천과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성과관리(시행)계획서에는 동 과제가 특정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에 명시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녹색기술’, ‘핵융합’, ‘원자력 핵심기술’ 등의 키워드를 통해 해당 국정과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를 발췌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업들이 선정되었다.

주요 정책과제 등 비재정사업일 경우와 달리 R&D 및 재정사업일 경우 수요예측 및 성과평가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세부실천과제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그림 3] 국정과제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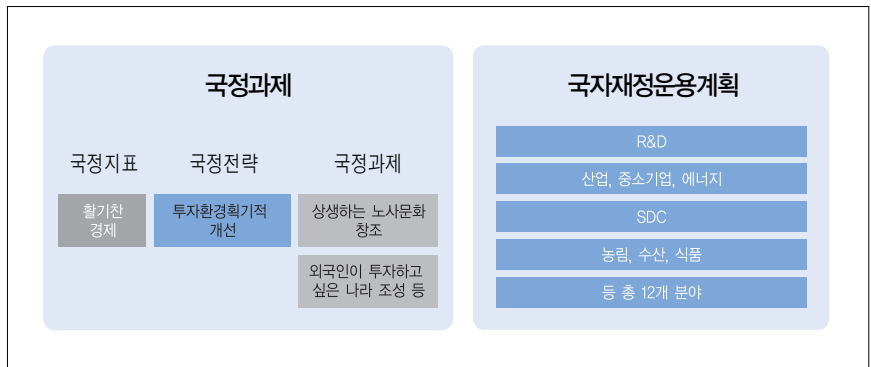
국정과제73. 녹색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교육부의 성과관리(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기술개발 및 육성전략수립 핵융합 연구개발 추진 융합형 녹색기술 개발 미래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Ⅷ-2 미래 유망 분야의 원천 기술과 태동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기술 융합형 성장동력 원천기술 개발(R&D) 융합기술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정책) X-1 고유가에 대응한 미래 원자력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방사능 방재 및 물리적 방호체제와 원자력 통제체제를 구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원자력 핵심 원천기술 개발 추진(정책) 원자력연구개발사업(R&D)

정보화·R&D·일반재정사업 등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논의를 좀 더 심화시켜보자. 해당 정부의 정책역점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으로서 국정과제의 예산투입 현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류체계는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농림·수산·식품 등 12대 재정지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국정과제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어느 분야에서 지출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우며, 하나의 국정과제가 다수의 지출 분야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가의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보여주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해당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겨 있는 국정과제가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고 있지 못한 것은 성과관리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가의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보여주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해당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겨 있는 국정과제가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고 있지 못한 것은 성과관리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국정과제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2) 집행단계

다음으로 성과관리의 집행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부실천과제 중 다부처 협력을 요하는 72개 ‘공동주관 세부실천과제’의 경우 주무부처가 불분명하여 성과에 대한 권한 및 책임소재의 파악이 곤란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6번 국정과제 “세계적인 국가브랜드 가치를 창출 하겠습니다”의 세부실천과제인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구현’, ‘국가브랜드 가치의 선진국 수준 향상’은 총리실,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동과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각 부처별 담당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권한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는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둘째, 국정과제의 수행을 모니터링하는 국정과제 점검 협의회와 각 부처별 성과계획의 수행을 모니터링하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다. 대통령실의 국정과제 점검 협의회와 각 부처의 자체평가위원회 및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간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평가단계

평가단계와 관련하여서는 국정과제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체계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세부실천과제의 단위가 정부 업무평가체계의 평가 기본단위인 관리과제와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평가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주요 정책과제 평가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평가대상으로 중복 선정될 수도 있다. 또한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경우 ‘미흡’ 등급을 받으면 예산액의 10% 삭감, 주요 정책과제평가의 경우 성과급 지급에 활용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으나,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체계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피드백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정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후 중기재정운용계획과
연동시켜 연도별 소요재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개선방안

앞 절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우선 국정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후 중기재정운용계획과 연동시켜 연도별 소요재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정과제도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정부의 중장기적 재정소요를 규정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과 국정과제의 연동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각 부처의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시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관리과제를 별도로 표시하여 구분하는 등 성과계획과 국정과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의 주무조직인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은 해당 조직의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과 별개로 국정과제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자체평가 및 특정 평가, 기재부의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을 활용하여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현황에 대한 과정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때 신호등 표시를 활용하여 각 과제의 추진현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95번 국정과제의 세부실천과제별 추진시한 대비 연도별 추진현황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200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던 ‘방산업체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강화 지원’이 2010년 평가시점까지 미완료 상태라면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국방부의 획득관련 정책통제기능 보강, 정책의 효율성/일관성 증진’ 과제의 경우 계획대로 완료되었다면 녹색으로 표시한다. ‘범정부적 방산수출지원체계구축’은 평가시점인 2010년 하반기에 완료 예정인데 정상적으로 완료되

국정과제는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 과제에 대한 성과관리가 중요하다.

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노란색으로 주의표시를 준다. 마지막으로 '국방R&D투자비율 확대 및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체계 구축' 과제는 2년 후에 완료 예정이므로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그림 5] 국정과제의 추진실적(예시)

번호	과제명	추진사항	주관기관	'10년 추진현황	비고
95	방위산업을 신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방산업체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08하	방사청	●	
	국방부의 획득관련 정책통제 기능 보강, 정책의 효율성/일관성 증진	08하	공동 (국방, 방사)	●	
	범정부적 방산 수출지원 체계 구축	10하	방사청	●	
	국방R&D투자 비율 확대 및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체계 구축	12하	방사청	●	

이런 방식으로 국정과제의 추진실적을 시각화시킨다면 100대 국정과제의 진척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추진이 미진한 과제의 경우 그 원인 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정부적인 성과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국정과제의 연차별 추진실적 자료를 범정부적 성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V. 결론

국정과제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캐치프레이즈적 성격을 띤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운영을 평가하는 주요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국정과제는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 과제에 대한 성과관리가 중요하다 하겠다. 현재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본고의 분석범위를 벗어나므로 논의하지 않으나,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관리는 충분하다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관리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국정과제 추진 상황 및 성과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정과제의 성과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음으로써 각 과제들이 성과목표체계의 어디에 속해 있는지, 다 부처 사업의 경우 각 부처의 업무내용과 권한-즉, 책임성이 어디에 있는지 등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되어 원활한 성과평가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재정이 투입되는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운영을 제시한 국가재정운영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나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자의 유기적 연계성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정과제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당초 추구하는 목표를 적절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영계획과 국정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평가체계를 이용하여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KIPF**

국정과제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당초 추구하는 목표를 적절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영계획과 국정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오철호·이기식, 「국정과제점검·평가의 기준과 방법론」,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제3권, 2008.6
- 대한민국정부,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2008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10~2012) 및 2010년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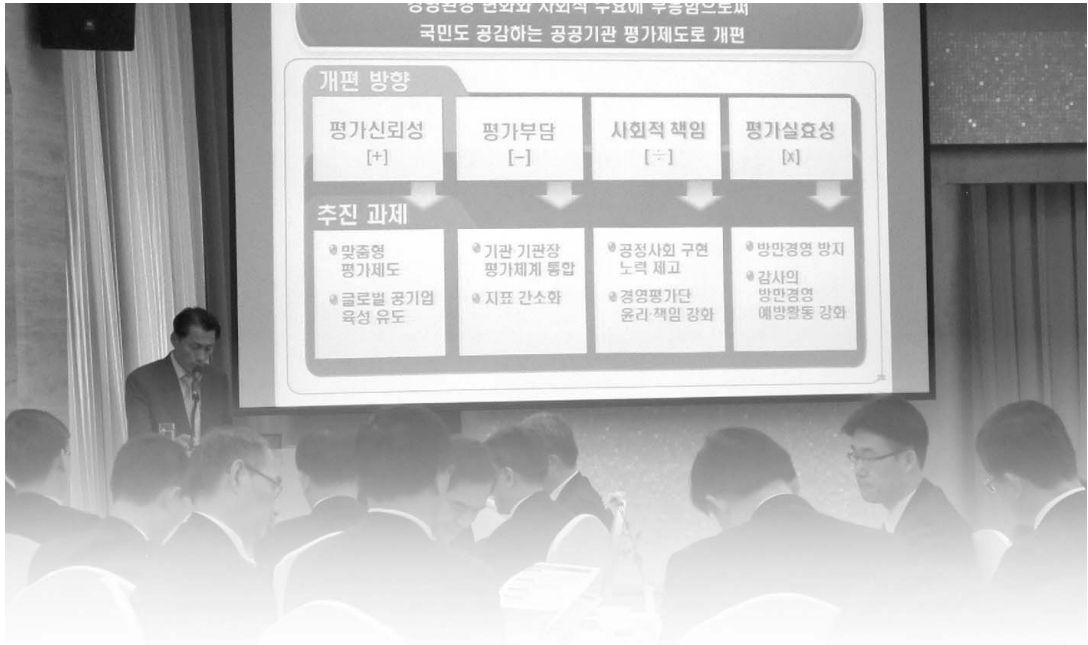
공공정책포럼

■ 제12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한다.





공공기관 선진화의 성숙단계 진입을 위한 정책과제

제12회 공공정책포럼 개요

- 주 제 공공기관 선진화의 성숙단계 진입을 위한 정책과제
- 일 시 2010년 12월 15일 07:30~09:30
- 장 소 서울 팔레스호텔 스카이볼룸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 08:00~08:05 인사 말씀
 송대희 KDI 초빙연구위원
 - 08:05~08:45 주제 발표
 구본진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 08:45~09:25 자유 토론
 - 09:25 폐회

* 본 원고는 2010년 12월 15일 서울 팔레스호텔 스카이볼룸에서 「공공기관 선진화의 성숙단계 진입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개최한 제12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 말씀

송대희 / KDI 초빙연구위원

현재 우리 공공기관은 선진화를 통한 혁신과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올 한해를 마감하며 이러한 방향을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주제발표 요약

공공기관 선진화의 성숙단계 진입을 위한 정책 과제

구본진 /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현재까지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6차례에 걸쳐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통폐합, 정원 감축, 기능조정을 추진하였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우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시각 개선, 민간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 보수체제 개편과 복리후생 제도 개선이 있다. 또한 불합리한 단협 조항 개선, 타임오프제 도입, 기관장 평가반영 등을 통해 노사관계를 선진화하였으며, 경영평가를 간소화하고 알리오시스템 등 공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였다. 이러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주·토공 통합, 노사합의를 통한 보수 삭감, 해외원전 수출 등 과거 오랜 노력에도 이루지 못했던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것은 큰 의의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소프

트웨어 측면 개혁의 추진 내용 및 속도는 추후 점검, 보완하여 더욱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가 성공적인 국정과제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선진화 정책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내부 체질 변화 유도를 위한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향후 기관장 임기 만료에 따른 책임경영 약화와 노조 발언권 확대 등으로 이러한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경영자율권 확대 및 내부 견제시스템 강화 등 제도화를 통해 선진화의 성숙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향후의 정책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점검하기 위해 우선 선진화 실적을 포괄적·상시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를 위해 추진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시적 집중관리를 실시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선진화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관별 우수사례 등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선진화 성과를 적극 발굴·홍보하는 것이 그것이다. 동시에 2011년 5월에 개최할 'OECD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선진화 추진성과를 정책 브랜드화하여 해외에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선진화의 제도화·시스템화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경영자율권 확대 사업의 추진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실화 및 제도 정착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내부 견제시스템 강화를 위해 감사의 내부견제 기능, 비상임이사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전에 거둔 성과의 의의를 퇴색시킬 수 있는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이에 관한 감사매뉴얼의 점검항목 개선도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보수체제의 합리화와 관련하여 간부직 성과연봉제 정

착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노사관계 선진화 역시 지속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의 괄목할 만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선 정도 및 국민체감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진화의 지속 및 연구와 홍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선진화 정책 방향과 더불어 최근에 당면한 주요 현안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한 그간의 경영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만경영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일부 기관의 사소한 문제로 선진화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절하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기반이 크게 훼손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침의 실효성 제고, 상시 관리·개선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라는 공공기관의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성과주의 정착·불공정거래 개선·노사관계 선진화·균등한 기회·나눔의 문화 확산이라는 5개 범주 내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정하고, 2011년 경영실적 평가시부터 사회적 공헌도 평가지표를 신설하여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셋째, 재무건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주요 공공기관이 결산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동시에 각 공공기관별로 '리스크 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장단기 재무위험을 관리토록 할 것이다. 또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며, 2012년부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에는 재무관리계획을 시범적으로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넷째, 경영평가제도의 개편도 지속할 것이다. 평가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관 유형의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 기관·기관장 지표 통합을 통한 지표 간

소화로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회공헌' 지표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방만경영 적발 시에는 해당지표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부여되도록 지표를 설계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자유 토론

권홍삼/한국석유공사 기획관리본부장

한국석유공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글로벌 기업으로서 입지를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해연도에도 글로벌 M&A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경영평가 및 감사상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었다. 이와 관련한 고충을 말씀드린다. 우선, 보수체계 개선 관련 사항이다. 우리 공사는 M&A 과정에서 우수한 경력직을 고용하여 성공적으로 국제 발행 등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보수체계 개선에 맞춰 적절한 인센티브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졸 초임 및 기존 직원의 연봉과 더불어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둘째, 감사위원회 구성시 전문성을 갖춘 비상임위원의 임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의 역할이 크게 요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봉기/한국관광공사 경영본부장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외부의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고 관광객 유치 증가 등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선진화의 기초 아래, 기존에 관광공사가 기틀을 마련한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등 대형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게 되어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와 능력을 갖춘 관광공사가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국가 관광산업에 있어서도 큰 이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정책에 따라 인력 및 기능을 감축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관광산업의 위축 역시 우려된다. 기능의 축소와 더불어 공사업무 중 경쟁력과 비교우위를 갖춘 부분은 강화 및 부각시킴으로써 선진화 정책과 신성장동력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본진/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발표자)

첫째, 공공기관은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핵심역량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산업은 민간, 자회사 등으로 이전하고 대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감사위원회와 관련한 부정적 평가는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및 외부 추천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을 발탁할 예정이다. 셋째, 보수체계 개선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민간과의 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임해중/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국장

우선 대졸 초임 인하와 관련해서는 기존 임금곡선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새로운 여러 개의 임금

곡선을 통해 우수한 인력이 민간 등에 고르게 유입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역시 도입 과정에서의 일부 미숙한 점이 점차 보완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동욱/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평가제도가 성과를 제고하는 순기능을 가졌지만, 반면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기도 한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국내외 팔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기관의 경우에는 홍보, 부각을 통해 격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무엇보다 평가제도를 통해 기관장의 성과를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박영범/한성대학교 경제학과

첫째, 평가제도의 구조를 개선하기에 앞서, 국회·감사원·경영평가제도 등 현재 일부 중첩되어 있는 체계를 수정하는 보다 큰 틀에서의 개선방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의 자율성보다도 방만경영이 민감한 이슈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규제의 확대가 방만경영을 의미하는 것대로 비추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규제를 활용할 때에는 이러한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본진/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발표자)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 정책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공공기관에 대한 큰 관심 덕에 때로는 사소한 부정적 측면이 성과에 대한 인식을 호도하는 경우도 있

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영화, 자율화 등 큰 틀에 대한 개선을 장기적 과제로 삼고 정책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12월 22일과 23일 개최되는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에 참가하는 80여개 기관과 그 외 기관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박정수/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평가제도를 포함한 공공기관 관련 정책에 있어 기관 특성별 차이를 반영하는 ‘균형’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대해 DB구축을 통한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맞춤형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역시 이러한 측면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 고민이 축적되면 더 나은 제도로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내년 1월에는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을 모실 것이며, 2월에는 남일총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자율화 및 민영화와 관련한 주제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KIPF**



주요국의 조세동향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동향 10-26

요약

- 일본 정부는 2010년 12월 16일 법인세율의 인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1년 세법개정대강(大綱)'을 발표함
 - 2011년 세계개정의 기본방침은 ① 디스플레이션 탈피와 고용을 위한 경제활성화, ② 소득격차 확대 및 고정화의 시정, ③ 납세자 시각에서의 개혁, ④ 지방세의 충실과 주민자치의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혁임
 - 주요 개정으로는 법인세율 인하, 석유·석탄세의 세율 인상 등이 있음
 -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으로는 법인세율 인하, 이월공제기간 연장, 고용촉진세제 도입, 환경관련 투자촉진세제 도입이 있음
 -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으로는 급여소득공제 축소, 퇴직소득공제 축소, 성년부양공제 축소, 기부관련 세제혜택 확대가 있음
 - 소비과세의 주요 개정으로는 온난화대책으로 석유·석탄세의 세율 인상이 있었고, 상속·증여세의 주요 개정으로는 세율구간을 세분화하였음

- 일본 정부는 2010년 12월 16일 '2011년도 세계개정대강(大綱)'을 공표함¹⁾
 - 2010년 세계개정의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세계개정요망, 세계개정대강, 대강에 대한 각의(閣議) 결정 후 법률안의 각의(閣議) 결정 및 국회에 제출 후 가결·성립²⁾
 - 2010년의 세계개정 과정은 세제조사회가 자문을 받아서 2009년 8월말에 '세계개정요망'을 작성
 - '세계개정요망'에 대하여 각 부성(府省)에 2009년 10월말을 기한으로 하여 수정을 구함
 - 각 부성(府省)에서 수정된 '세계개정요망'을 바탕으로 2009년 12월 22일에 '2010년 세계개정대강'을 정리하고 동 일자로 각의(閣議) 결정을 함
 - '2010년 세계개정대강'을 바탕으로 법률안을 만들고 2010년 2월 5일에 이 법률안에 대한 각의(閣議) 결정을 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함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2010년 3월 24일에 가결·성립됨

1) 일본재무성에서 홈페이지(www.mof.go.jp)에 게재된 '평성23년세계개정대강', '평성23년세계개정대강의 개요' 및 KPMG 일본의 홈페이지(www.kpmg.or.jp)에 게재된 '2011년도세계개정대강'의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임

2)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평성22년세계개정에 대해서'의 내용 중 1. 개정경위 참조(http://www.mof.go.jp/jouhou/syuzei/kaisetsu22/PDF/01_P003_008.pdf)

- 이번에 발표된 '2011년 세제개정대강(大綱)' 을 바탕으로 2011년 세법 법률안이 작성되고 각의 결정 후 국회에 제출되어 가결·성립의 가정을 거치게 됨
- 개정되는 세법의 상세한 내용은 '세제개정대강' 이 개정법안으로 가결되는 과정에서 확정되고 변경될 수 있음

- 2011년 세제개정의 기본방침은 ① 디플레이션 탈피와 고용을 위한 경제활성화, ② 소득격차 확대 및 고정화의 시정, ③ 납세자·생활자의 시각에서의 개혁, ④ 지방세의 충실과 주민자치의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혁임

1. 법인세

가. 법인세율 인하

- 일본의 법인세율은 2011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표 1>과 같이 인하됨

<표 1> 일본의 법인세율 인하

법인구분	현행법	개정안
대 법인	30%	25.5%
중소법인 ¹⁾	연 800만엔 이하	22% (18% ²⁾)
	연 800만엔 초과	30%

주: 1) 중소기업은 기말자본금액이 1억엔 이하의 보통법인임
 2)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됨
 3)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됨
 단, 2011년 4월 1일 전에 개시하고 동 일자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경감세율인 18%가 적용됨

- 일본의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대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율이 5.05%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인소득과 관련된 세목별로 세율의 변화를 살펴보

면 <표 2>와 같음

<표 2> 일본의 법인소득세율 인하

세 목	현행법	개정안
법인세	30%	25.5%
지방법인특별세	4.292%	4.292%
사업세	3.26%	3.26%
주민세	6.21% (30%×20.7%)	5.28% (25.5%×20.7%)
합계	43.762%	38.332%
실효세율 ¹⁾	40.69% (43.762%×100/107.55)	35.64% (38.332%×100/107.55)

주: 1) 실효세율은 지방법인특별세와 사업세가 손금산입되고, 기말자본금액이 1억엔을 초과하며, 동경에 위치하는 경우에 세율을 적용한 것임

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

- 대법인과 중소기업인의 구분 없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은 7년에서 9년으로 연장되었으나, 공제한도액은 대법인과 중소기업인이 개정내용을 달리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인은 공제한도액이 이월공제 전 소득금액의 80%로 제한되었으나, 중소기업인은 현행법과 같이 이월공제 전 소득금액의 100%로 함

<표 3> 대법인의 이월공제제도

	현행법	개정안
공제 한도액	이월공제 전 소득금액의 100%	이월공제 전 소득금액의 80% 2011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이월기간	7년	9년 2008년 4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하여 적용



다. 고용촉진세제 도입

-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고용촉진세제”를 도입함
 - 고용을 일정 이상 증가시키는 성장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함
- 공공직업안정소에 고용촉진계획 신청을 한 청색신고 법인은 고용증가 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함
 - 일정 요건은 고용증가 요건, 사업주 사정에 의한 이직 요건, 지불급여액 증가 요건이 있음
 - 고용증가 요건은 당기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기 말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증가된 인원이 5인 이상(중소기업의 경우 2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임
 - 사업주 사정에 의한 이직 요건은 전기 및 당기 중에 사업주 사정에 의한 이직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임
 - 지불급여액 증가 요건은 당기에 지불한 급여액에서 전기에 지불한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임
 - (당기지불급여액-전기지불급여액)≥(전기급여액×고용자증가율×30%)
 - 지불급여액은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임원이나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는 제외함
- 세액공제는 고용보험 일반피보험자의 순증가인원에 대하여 일인당 20만엔을 공제함
 - 단, 당기 법인세액의 10%를 한도로 하고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 적용함

라. 환경관련 투자촉진세제 도입

- CO₂ 감소 등에 효과가 있는 설비를 구입한 법인에 세제혜택을 부여함
 - 청색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CO₂ 배출 삭감 및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확대에 상당한 정도의 효과가 예상되는 설비를 취득하고, 이를 1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 취득가액의 30%를 특별상각(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7%의 세액공제와 선택 적용)함
 - 단, 당기 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하고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1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마. 조세특별조치의 축소

- 조세특별조치를 재검토하여 정책세제조치 중 109개 항목을 개정하고 50개 항목을 폐지 또는 축소함

2. 소득세

가. 근로소득관련 개정

1) 급여소득공제의 축소

- 종업원에 대한 급여소득공제에 상한액이 설정되어 급여 등의 수입금액이 1,5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5만엔이 상한액이 됨
 - 결과적으로 급여 등의 수입금액이 1,5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상당액이 소득공제되지 못하므로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됨
- 임원에 대한 급여소득공제는 상한액이 설정되는 등 <표 4>와 같이 축소됨

〈표 4〉 임원의 급여소득공제

급여 등의 수입금액	급여소득공제액
2,000만엔 초과 2,500만엔 이하	245만엔 - (연중 임원급여 등의 수입금액 - 2,000만엔) × 12%
2,500만엔 초과 3,500만엔 이하	185만엔
3,500만엔 초과 4,000만엔 이하	185만엔 - (연중 임원급여 등의 수입금액 - 3,500만엔) × 12%
4,000만엔 초과	125만엔

2) 특정지출공제의 한도 설정 및 공제대상 확대

- 현행법에서는 급여소득자가 특정지출을 하는 경우에 연중 특정지출액의 합계액이 급여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급여소득계산상 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한도를 설정하고 특정지출의 범위를 확대함
- 특정지출공제는 급여소득공제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게 됨
 - 특정지출을 한 경우에 급여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 (급여 등의 수입금액) - (급여소득공제액) - (특정지출액의 합계액 - 급여소득공제액 × 1/2)
 - 연중 급여 등의 수입금액이 1,5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정지출액의 합계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급여소득공제액의 1/2이 아니라 125만엔이 됨
- 특정지출의 범위에 변호사 비용 등이 추가 확대되어 급여소득자의 실액공제의 기회를 확대함
 -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취득비
 - 도서구입비, 의복비, 집대비 등의 근무필요경비(합

계 65만엔이 한도)

나. 퇴직소득과세의 개정

- 임원 퇴직소득의 과세범위를 확대함
 - 현행법에서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수당 등의 수입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의 1/2로 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임원으로서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퇴직수당 등의 수입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액을 공제한 잔액의 전액이 퇴직소득의 금액이 됨
 - 1/2과세가 폐지됨
- 퇴직소득에 대한 주민세액 10%를 세액공제하던 제도도 폐지됨

다. 성년부양공제의 개정

- 성년자는 기본적으로 독립해서 생계를 해야 하는 존재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년부양친족(23세 이상 70세 미만의 부양친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던 성년부양공제는 축소됨

〈표 5〉 성년부양친족에 대한 부양공제

거주자의 합계소득금액	성년부양친족	현행법		개정안	
		소득세	주민세	소득세	주민세
400만엔 초과	특정성년 부양친족 이외	38만엔	33만엔	폐지	폐지
	특정성년부양친족	38만엔	33만엔	38만엔	33만엔
400만엔 이하	전체 성년부양친족	38만엔	33만엔	38만엔	33만엔



- 특정성년부양친족은 성년부양친족 중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자와 장애자인 자이고 이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계속적으로 공제가능하도록 함
- 거주자의 합계소득금액이 40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에 따르는 담세력을 고려하여 피부양자의 상황에 관계없이 현재와 같이 계속 공제가능하도록 함

- 거주자의 합계소득금액이 400만엔 초과인 경우에는 부담조정조치가 마련될 예정임
- 부담조정조치 중 소득세 부분은 400만엔이 초과하는 경우에 부양가족 1인당 38만엔에서 거주자의 합계소득금액이 400만엔을 초과하는 초과액의 38%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함
- 부담조정조치 중 지방세 부분은 400만엔이 초과하는 경우에 부양가족 1인당 33만엔에서 거주자의 합계소득금액이 400만엔을 초과하는 초과액의 33%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함

라. 기부관련 세제

- 기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개정하여 인정NPO법인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대신에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2,000엔을 초과하는 기부금의 40%(소득세액의 25% 한도)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인정NPO법인 등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공익사단 법인이나 공익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함
- 특정기부신탁에 관한 이자소득 비과세를 신설하여 특정기부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설정한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마. 연금소득 신고의무 축소

- 연금소득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이 400만엔 이하이고 연금 이외의 소득금액이 20만엔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임

3. 소비과세

가.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세제

- 석유·석탄세에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과세특례’를 두어 CO₂ 배출량에 따른 세율을 상승시킴
 -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효과가스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CO₂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세제임
-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1킬로리터당 760엔, 가스상탄화수소는 1톤당 780엔, 석탄은 1톤당 670엔의 세율을 인상하되 2011년 10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점진적인 인상을 함

〈표 6〉 석유석탄세의 세율 인상

현행법	현행	2011. 10. 1~	2013. 4. 1~	2015. 4. 1~
원유·석유제품(1ℓ당)	2,040엔	2,290엔	2,540엔	2,800엔
가스상탄화수소(1톤당)	1,080엔	1,340엔	1,600엔	1,860엔
석탄(1톤당)	700엔	920엔	1,140엔	1,370엔

나. 항공연료세율의 인하

- 현행 항공연료세율은 1킬로리터당 26,000엔이지만,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1킬로리터당 18,000엔으로 함

- 오키나와(沖縄)노선(1/2세율), 낙도(離島)노선(3/4세율)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로 인하함

4. 상속·증여세

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구조에 대한 개정

- 상속세의 기초공제가 축소됨
 - 상속세 기초공제는 정액공제와 법정상속인 비례공제로 나뉘는데, 현행법에 의하면 정액공제는 5,000만엔이고 법정상속인 비례공제는 법정상속인 수에 1,000만엔을 곱한 금액임
 - 개정안에 의하면 정액공제는 3,000만엔으로 축소되고 법정상속인 비례공제도 법정상속인 수에 600만엔을 곱한 금액임
- 상속세의 세율구조는 보다 세분화됨

〈표 7〉 상속세의 세율개정

현행법		개정안	
법정상속인 1인당 과세가격	세율	법정상속인 1인당 과세가격	세율
1,000만엔 이하의 금액	10%	개정 없음	
3,000만엔 이하의 금액	15%		
5,000만엔 이하의 금액	20%		
1억엔 이하의 금액	30%		
3억엔 이하의 금액	40%	2억엔 이하의 금액	40%
-	-	3억엔 이하의 금액	45%
3억엔 초과 금액	50%	6억엔 이하의 금액	50%
-	-	6억엔 초과 금액	55%

- 2011년 4월 1일 이후 상속 및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에 대해서 적용됨

나. 미성년자공제 및 장애자공제 인상

- 미성년자공제는 현행법에서는 20세까지 1년당 6만엔을 공제하였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1년당 10만엔을 공제함
- 장애자공제는 현행법에서는 85세까지 1년당 6만엔(특별장애자에 대해서는 12만엔)을 공제하였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1년당 10만엔(특별장애자에 대해서는 20만엔)을 공제함

다. 상속시정산과세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증여세 세율구조 개정

- 증여세의 세율구조를 20세 이상의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나누어서 세율구조를 달리함

〈표 8〉 20세 이상인 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율

현행법		개정안	
200만엔 이하의 금액	10%	좌동	
300만엔 이하의 금액	15%	400만엔 이하의 금액	15%
400만엔 이하의 금액	20%	600만엔 이하의 금액	20%
600만엔 이하의 금액	30%	1,000만엔 이하의 금액	30%
1,000만엔 이하의 금액	40%	1,500만엔 이하의 금액	40%
-	-	3,000만엔 이하의 금액	45%
1,000만엔 초과 금액	50%	4,500만엔 이하의 금액	50%
-	-	4,500만엔 초과 금액	55%



〈표 9〉 〈표 8〉 이외의 자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율

현행법		개정안	
200만엔 이하의 금액	10%	좌동	
300만엔 이하의 금액	15%		
400만엔 이하의 금액	20%		
600만엔 이하의 금액	30%		
1,000만엔 이하의 금액	40%		
-	-	1,500만엔 이하의 금액	45%
1,000만엔 초과 금액	50%	3,000만엔 이하의 금액	50%
-	-	3,000만엔 초과 금액	55%

5. 종합특구제도/아시아 거점화 추진을 위한 세제

가. 종합특구제도를 위한 세제

- 종합특구세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은 지방공공단체에서 지정을 받은 청색신고법인에 대해 세제상 지원하는 제도임
- 국제전략종합특별지구계획에 기재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를 취득하고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상각(취득가액의 50%, 건물 등에 대해서 25%)이나 세액공제(취득가액의 15%, 건물 등에 대해서는 8%)의 선택 적용이 가능함
 - 동일 사업연도에 특별상각과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중복적용은 안 됨
- 국제전략종합특별구역 내에서 일정한 사업을 하는 경우,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해당 사업소득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함

나. 아시아 거점화 추진을 위한 세제

- 아시아 거점화 추진을 위한 세제는 글로벌기업의 연구개발 거점이나 지역총괄 거점 등을 일본 내에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이나 국제적 총괄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주무대신에게 인정을 받은 청색신고법인에 대해서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제도임
- 사업계획의 인정일로부터 5년간, 해당 사업소득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함
 - 이 조치는 인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적용함
- 신주예약권 등의 행사에 의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를 둠
 - 비과세대상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법인의 이사, 사무원 등에게 부여하는 일정한 외국모법인이 발행하는 신주예약권임
 - 이 조치는 인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적용됨

6. 납세환경 정비를 위한 세제개정

가. 납세자권리현장의 책정

- 국세통칙법의 목적 규정을 개정하여 세무행정에서 납세자의 권리의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각종 세무절차의 명확화 등을 국세통칙법에 집약함
 - 국세통칙법은 제정 이후 최대의 개정임
- 납세자의 입장에서 복잡한 세무절차를 알기 쉽고, 보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

기 위하여 다양한 수준(예를 들어 법률, 재무성령, 고시, 통칙 등)에서 기재된 세무절차를 행정문서로서 국세청장이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함

- 납세자 권리헌장은 2012년 1월 1일에 공표될 예정임

나. 경정청구기간의 연장

-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고 경정청구의 범위를 확대함
- 신고소득액이 과대하여 납세자가 수정을 요구하는 절차인 경정청구기간을 <표 10>과 같이 연장함

<표 10> 경정청구기간의 연장

세 목		현행법	개정안
법인세	결손금과 관련된 것	1년	9년
	이전가격세제와 관련된 것	1년	6년
	상기 이외의 것	1년	5년
증여세		1년	6년
상기 이외		1년	5년

- 과세관청에 의한 증액경정기간(현행 3년)도 5년으로 연장될 예정이지만, 탈세하는 경우에 대한 증액경정기간(현행 7년)은 존치됨

-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조치 중 일부를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함
- 현행법에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항목 중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항목으로는 수입배당의 익금불산입, 외국자회사배당의 익금불산입, 소득세액공제, 외국세액공제, 시험연구비의 특별공제가 있음

다. 세무조사 관련사항의 명확화

-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명확화·법제화함
- 사전통지는 납세자 본인, 조서제출자 및 대리인에게 하고 조사의 개시일자와 장소, 목적, 대상세목, 과세기간,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와 물건 등을 통지함
-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사전에 하지만 조사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당일에 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함

- 과세청의 납세자에 대한 설명책임을 강화하여 조사 종결시의 절차를 명확화·법제화함
- 납세자가 경정·결정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및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복이 성립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이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교부함
- 납세자가 경정·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재된 통지서를 교부함

7. 상장주식 등의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경감조치 연장

- 거주자인 개인의 상장주식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경감세율특례를 2년 연장함
- 현행법에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7%, 주민세 3%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15%, 주민세 5%의 원래세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경감세율특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상장주식 등의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등의 특례



를 2년 연장함

- 현행법에서는 거주자(개인)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소득세 7%, 주민세 3%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15%, 주민세 5%의 원래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경감세율특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현행법에서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소득세 7%를 적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15%의 원래세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경감세율특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상장주식 등에 대한 경감세율특례가 연장됨에 따라 일본판 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의 도입은 2014년 1월 1일까지 2년간 연기됨

동향 11-01

요약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12월 17일 ‘2010년 미국 감세연장법안’을 최종 승인하였음
 - 동 법안에는 부유층을 포함한 미국 전 계층의 감세 혜택 2년 연장, 자본이득세·배당소득세의 세율을 현행(15%) 유지, 사회보장세 1년간 2% 인하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아일랜드 재무부 장관은 2010년 12월 7일 201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개인소득세 과세표준구간 하향 조정 및 일부 공제항목의 폐지, 자본취득세 과세최저한 인하 등을 통한 세수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이탈리아 로마 시의회는 2010년 12월 2일에 호텔 등에서 1박 이상 숙박하는 여행객에게 부가하는 여행자세(tourist tax)의 도입을 승인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1.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감세연장법안 승인

- 2010년 12월 17일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미국 감세연장법안(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을 최종 승인하였음
 - 이 법안은 2010년 말로 종료되는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을 한시적으로 201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과, 자본소득세·배당소득세의 세율을 현행 수준(15%)으로 유지하고, 사회보장세를 1년간 2% 인하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함

-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성장을 마련하기 위한 실리 추구 차원에서, 기존에 고수하던 부유층 감세정책의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 공화당과 전 계층에 대한 감세안 연장 등을 포함한 타협안에 합의하였음
 -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에서 부시 행정부가 도입한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조치를 중단하고 연소득 25만달러 미만의 계층에 대해서만 감세조치를 연장하는 정책을 공약하였으나,
 - 지난 2010년 11월 2일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후 12월초에 공화당의 감세조치 2년 연장안을 수용하였음

가. 개인소득세

- 2010년 12월에 일몰될 예정이었던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인 개인소득세율 10%, 15%, 25%, 28%, 33%, 35%가 2012년까지 연장되었고,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세가 2012년까지 기존 15%로 현상 유지되었음¹⁾
- 근로장려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입양세액공제(adoption tax credit), 부양가족세액공제(dependent tax credit) 등 근로 가족과 아동에 관련된 조세혜택 일몰 시효가 2012년까지 연장되었음

나. 유산세(Estate Tax), 세대생략 이전과세(General Skipping Transfer Tax), 증여세(Gift Tax)

- 2009년 12월에 만료되었던 유산세(Estate Tax)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부활되었음
 - 유산세율은 최대 35%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5백만 달러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2009년 12월에 만료되었던 세대생략 이전과세(General Skipping Transfer Tax)²⁾가 부활되어 2011년과 2012년에 최대 35%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임
 - 세대생략 이전과세도 5백만달러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증여세(Gift tax)는 2011년부터는 유산세와 마찬가지로 최대 35%의 세율이 적용되며 5백만달러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다. 법인세

- 내국세법 §168(k)의 50% 보너스 감가상각규정이 2011년에는 100%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2012년부터 보너스 감가상각규정의 한도가 다시 50%로 제한될 예정임
- 내국세법 §41의 연구세액공제(Research Tax Credit)는 2009년에 일몰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2011년 12월까지 적용됨

1) 주요국의 조세동향 [조세동향 10-19] 참조

2)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세대를 건너뛰어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세대이전과세가 부과됨



- 일자리 기회 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의 일몰기한을 2011년까지 연장하였음
 - 일자리 기회 세액공제란 장기적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특정 집단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제도임
- 2010년 소기업 일자리법(Small Business Jobs of 2010)에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던 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 소기업의 자본지출 공제한도 확장 규정들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었음³⁾

라. 기타

- 그 밖에도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1년간 2% 인하하였으며,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을 13개월 연장하였고, 각종 에너지 인센티브, 재난구조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포함되었음

2. 아일랜드 2011 예산안 의회 제출

- 재무부 장관은 2010년 12월 7일 201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2011 예산안은 재정지출 축소 및 세수확대를 통해 재정결손을 60억유로만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예산안에는 정부가 2010년 11월 24일 발행한 4개년 국가회복계획(National Recovery Plan)의 제1단계 실행 방안이 담겨 있음
 - 4개년 계획에 의하면 재정결손을 150억유로만큼 축소하여 2014년에는 EU 규정 수준인 GDP의 3%

미만(현행 GDP의 11.6%)으로 줄일 방침임

- 이와 같은 긴축예산은 최근 발표된 850억유로 규모의 IMF/EU 구제금융 패키지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함

- 조세분야에서는 12.5%의 법인세율은 유지하되 개인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하향조정 및 일부 공제항목의 폐지를 통해 세수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가. 법인과세 분야

- 법인과세 분야에서는 예산안의 증세정책 기초와는 별도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12.5%의 세율 유지와 더불어 여러 조세지원정책이 계획되어 있음
- 근로및투자촉진제도(Employment and Investment Incentive Scheme)에 따라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하여 사업확장제도(Business Expansion Scheme)의 공제혜택을 확대함
 - 사업확장제도에 의하면 중소기업으로서 요건을 갖춘 비상장기업의 보통주를 청약한 개인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자신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함
 - 이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임
 - 개정안에서는 근로및투자촉진제도에 따라 사업확장 제도상의 공제혜택이 적용되는 청약주식 한도액을 인상할 방침임
 - 생애 총한도를 현 2백만유로에서 1천만유로로 인상함
 - 12개월 동안의 기간 한도는 현 1.5백만유로에서 2.5백만유로로 인상함

3) 주요국의 조세동향 [조세동향 10-21] 참조

-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과세면제를 확대하고 등록 하도
 급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세 저세율을 도입함
- 2011년 거래를 개시하는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줌
- 과세면제 금액은 고용주가 지급하는 사회보장기여
 금(PRSI)⁴⁾에 연동하여 조정될 것임
- 현행 계약세(relevant contracts tax)는 일괄적으로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세무상 등록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임
- 세무상 등록사업자로서 납세의무 이행 관련 기록이
 있는 하도급업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원천징
 수하고 미등록 하도급업자에 대해서는 35%의 세율
 을 적용함
- 이 외에도 개정안에서는 계약세의 운영과 관련하여
 월 단위의 환급제도(repayment system) 대신 상
 계제도(offset system)의 적용을 계획하고 있음

나. 개인과세 분야

- 52%의 최고한계세율은 유지하면서 과세표준 구간 및
 특정 세액공제 금액을 약 10%만큼 하향 조정함
- 저축상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11년 1월 1일부터
 현 25%에서 27%로 2%p만큼 인상함
- 일부 공제항목을 폐지 및 축소하여 소득세 과세기반
 을 확대함
- 특정 특허소득 및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비과세를 폐
 지하는 일전의 공지를 재확인함

- 이는 2010년 11월 24일부터 적용됨
- 수동 투자자(passive investors)에 대해서는 자산 투
 자 관련 특정 세액공제 및 자본공제의 적용을 제한함
- 관련 공제혜택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계획임
- 사회보장기여금 근로자 납부분과 관련하여 소득금액
 한도를 폐지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함
- 현행 제도에 의하면 근로소득 중 75,036유로만큼에
 대해 4%의 세율로 사회보장기여금을 과세하고 있는
 데, 개정안에서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함
-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 세율을 현
 3%에서 4%로 인상함
- 소득세 추가부담금(income levy)과 건강부담금
 (health levy)을 폐지하고 이를 2011년부터 통합사
 회부담금(universal social charge)으로 대체하여
 부과대상을 확대함

다. 자본세(capital tax) 분야

- 자본취득세(capital acquisition tax)의 과세최저한을
 인하함
- 아일랜드에서는 상속 및 증여시 피상속인 및 수증자
 를 대상으로 25%의 세율로 자본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 단, 자본취득세는 과세소득금액이 일정 금액⁵⁾을 초
 과하는 경우 부과됨
- 개정안에 의하면 2010년 12월 8일부터 발생한 상속

4) 근로자당 5,000유로를 한도로 함

5) 자본취득세 과세최저한으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부모, 자녀 등에 해당하는 경우 414,779유로, 부모, 자녀 외의 직계 가족, 형제, 자매, 조카에 해당하는 경우 41,481유로, 기타의 경우 20,740유로가 적용되고 있음



및 증여에 대해서는 자본취득세 과세최저한을 20% 만큼 인하함

라. 간접세 분야

- 비행기여객세(air travel tax) 세율을 간소화함
 - 현행 제도에 의하면 비행기여객세는 2유로와 10유로의 두 단계 세율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개정안에 의하면 2011년 3월 1일부터 3유로의 단일 세율을 적용함
 - 이는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후 재검토 절차를 거칠 예정임
- 도박세(betting duty)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국내에서의 개인간 온라인 및 전화 거래에 대해서도 1%의 도박세를 적용함

3. 이탈리아 로마의 여행자세(tourist tax) 도입

- 로마 시의회는 2010년 12월 2일에 호텔 등에서 1박 이상 숙박하는 여행객에게 부가하는 여행자세(tourist tax)의 도입을 승인함
 - 여행자세 관련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본 여행자세와 관련하여 이미 지난 2010년 7월 28일에 시의회는 여행자세(contributo di soggiorno)의 도입을 승인하였으나 세부사항이 결정되지 아니하였음
- 로마 시장인 마우로 쿠티로포에 따르면 여행자세(tourist tax)는 로마시민이나 로마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위한 지방행정서비스에 사용될 재원임
 - 특히 여행자세의 세수 중 5%는 로마시 안의 여행자 시설에 투자될 예정임

- 여행세가 부가되는 숙박시설은 로마에 위치하는 호텔, 조식제공 숙박시설, 휴가용 숙박시설(holiday homes and apartment), 캠핑장(campgrounds)임
- 여행세의 세율은 1박을 기준으로 숙박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름
 - 즉, 4성급, 5성급 호텔에 거주하는 경우, 1박(night)당 3유로의 여행자세를 부담함
 - 반면에 다른 모든 숙박시설은 1박(night)당 2유로의 여행자세를 부담함
- 여행자세의 과세표준은 세율×숙박일수(nights)
 - 최대숙박일(maximum nights)은 10일임
- 여행자세는 특정 숙박시설과 특정 여행객에 대한 면세규정을 두고 있음
 - 유스호스텔에 숙박하는 여행객은 여행세가 면제됨
 - 2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여행세가 면제됨
- 여행자세는 숙박시설에서 체크아웃(check-out)하는 시점에 납부하여야 함
 - 숙박시설은 2011년 1월 1일부터 수집된 여행자세를 로마시 정부에 2011년 7월 이전까지 송금하여야 함
 - 2001년 7월 이후에는 매 3월마다 송금하여야 함
- 한편 유럽여행업자협회(European Tour Operator Association)는 여행자세에 대해 비판함
 - 동 협회의 이사인 Tom Jenkins는 10월 4일에 여행자세의 부과로 인해 유명한 관광지의 관광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여행자세의 부과를 재고할 것을 통보함

정책 흐름



-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 통보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대폭 개편
- 최근 한·중·일의 성장 및 교역 동향과 시사점
-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
- 사업하기 편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시행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본 자료는 2010년 12월 28일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담당관실에서 발간한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세제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1.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결손세액 소멸제도 일몰 연장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결손세액 소멸제도는 당초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직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가 체납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에 대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
-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손세액 면제(1인당 500만원 한도)를 신청하면
- 세무서장은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결정·통지를 하게 됩니다.

영세자영업자 결손세액 소멸제도 연장

- ▶ 추진배경 : 국세 체납세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 지원
- ▶ 주요내용 : 결손 처분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면제
- ▶ 시행일 : 2011. 1. 1.

2.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투및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차등화

- 기업의 투자 지원 및 지방기업·중소기업 우대를 위하여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으며
- 다만, 대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내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습니다.

3.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는 근로자 복지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무주택종업원 임대용주택, 직장보육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 2011년부터는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미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을 무주택종업원 임대용주택 및 종업원기숙사 용도로 취득하거나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 7% 공제 적용대상에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

련실을 추가하였습니다.

4.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매년 소득세·법인세 5~3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2011년부터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아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 ▶ 추진배경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및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지원 등
- ▶ 주요내용 : 창업중소기업 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을 추가
- ▶ 시행일 : 2011. 1. 1.

5.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 2010년까지는 자녀가 2명인 경우 인적공제금액(1

인당 150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연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있으나

- 2011년부터는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으로,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 추진배경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 ▶ 주요내용 :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을 확대
 - 자녀 2명 : 50만원 → 100만원
 -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 200만원
- ▶ 시행일 : 2011. 1. 1.

6.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됩니다.
- 2010년까지는 일급여액이 10만원이 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초과금액에 대해 8%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원천징수세율이 6%로 인하됩니다.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식

-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 10만원) × 원천징수세율(8% → 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 55%)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 추진배경 :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
- ▶ 주요내용 : 원천징수세율을 8% → 6%로 인하
- ▶ 시행일 : 2011. 1. 1.

7.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 2010년까지는 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 ▶ 추진배경 :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
- ▶ 주요내용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 400만원으로 확대
- ▶ 시행일 : 2011. 1. 1.

8.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제도가 간소화되고 세제혜택이 확대됩니다.
- 기부금단체별 기부금 소득공제제도를 간소화(3단계 → 2단계)하고, 기부금 단체간 구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현행 : 3단계(법정, 특례, 지정)
 - 개정 : 2단계(법정, 지정) ⇒ 특례기부금 폐지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 개인 기부금 : 현행 20% → 30%로 확대
- 법인 기부금 : 현행 5% → 10%로 확대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 ▶ 추진배경 : 기부문화 활성화
- ▶ 주요내용
 - ①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 현행 : 3단계 (법정, 특례, 지정)
 - 개정 : 2단계 (법정, 지정) ⇒ 특례기부금 폐지
 - ② 지정기부금 세제혜택 확대
 - 개인 기부금 : 현행 20% → 30%로 확대
 - 법인 기부금 : 현행 5% → 10%로 확대
- ▶ 시행일 : 기부금 구분체계 2011. 7. 1, 세제혜택 확대 2011. 1. 1.

9.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

-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왜곡* 가능성, 침체 상태에 있는 부동산시장 등을 고려하여
 - * 불필요한 부동산을 보유한 자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계속 보유하고, 부동산 실수요자는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구매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다주택 및 비상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제도의 일몰시한을 '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증가완화 제도의 내용

- ◇ 2주택 이상 보유자 : 증가세율(50·60%) 대신 기본세율(6~35%) 적용
- ◇ 비사업용 토지 보유 개인 : 증가세율(60%) 대신 기본세율(6~35%) 적용
- ◇ 비사업용 부동산 보유 법인 : 추가과세(30%) 미 적용, 기본세율(10·22%)만 적용
- ※ 투기지역의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10%p(가산세율)』적용

10. 부동산 거래 관련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감면 제한

- 부동산 거래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 2011년 7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는 허위(Down·Up) 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하게 됩니다.

참고

부동산 허위계약서에 따른 비과세 · 감면의 제한범위(예시)

- ☞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계약서 중 1개라도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은 전액 비과세 · 감면세액에서 제외하여 과세

(사례) 1세대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이 5억원이나, 매매계약서를 6억원으로 작성하여 양도한 경우

* 취득계약서는 정상, 과세대상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5억원

(현행) 비과세

(개정) 비과세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1억원* 과세

* 1.5억원(정상적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세액 1억원(차액) 부과

11.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 1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 상속금액의 40%* 또는 2억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 공제한도 : 60억원(다만, 15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80억원,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100억원)

-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해 오던 기업상속공제를 2011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하였더라도 연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됩니다.
- 다만, 이 경우 해당 중견기업이 고용증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 고용요건 : 상속 후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년도 직전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배 이상 유지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졸업 이후 세부담 증가 완화
- ▶ 주요내용 : 중소기업 졸업 이후 연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
- ▶ 시행일 : 2011. 1. 1.

12.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는 1세대가 동일한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경우, 상속시기에 당해 주택 하나만 보유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10년간 1주택에서 동거하였더라도 이사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거나, 혼인합가 등으로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2011년부터는 이사를 다니더라도 그 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보유·동거한 경우와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 추진배경 :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합리화
- ▶ 주요내용 : 1세대1주택 중 일시적 2주택, 이농·귀농주택, 문화재주택, 혼인합가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
- ▶ 시행일 : 2011. 1. 1.

13.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2011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

14.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

-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기업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등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

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 우대내용

구 분	기준공제		우대내용 (*12년말까지 일몰기한 연장)	
	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율	공제한도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결제금액의 2%	연 500만원	2.6%	연 700만원
이외 개인사업자	결제금액의 1%	연 500만원	1.3%	연 700만원

15.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

- 음식업자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 우대내용

구 분	기준 공제율	우대내용 (*12년말까지 일몰기한 연장)
음식업자	구입액의 3/103	• 유흥주점 4/104, 법인 6/106 • 개인 8/108
이외 사업자	구입액의 2/102	우대 없음

16.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의 지원

- '11. 1. 1일 이후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존 신고·납부기한)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 (개정)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

17. 일부 전자문서에 대해 인지세 과세

- 2011년부터는 일부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대상 전자문서*는 ①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②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입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세청 국세정보시스템(홈택스, www.hometax.go.kr)을 통해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8.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 경마장 장외발매소와 경륜·경정장의 장외매장에서도 경마·경륜·경정장에서와 같이 사행행위*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의 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경마장 등의 입장행위와 같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

- 현재, 경마장의 경우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00원, 경륜·경정장의 경우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 2011. 7. 1.부터는 경마 장외발매소의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00원,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의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을 개별소비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 ▶ 추진배경 : 동일한 사행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하여 과세 불형평 해소
- ▶ 주요내용 :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장외매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
- ▶ 시행일 : 2011. 7. 1.

19. 다양한 종류의 생(生)탁주·약주 생산

-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약주의 제조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약주의 제조과정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가할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됩니다.
- 현재는 탁주·약주 발효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사용하거나, 약주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가하는 경우 탁주, 약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각각 30%, 72%의 주세율이 부과되었습니다.
- 2011. 4. 1.부터는 과일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하더라도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약주로 분류되어 5%, 3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밤·대추·참외·토마토 등을 원료로 한 살균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생(生)탁주·약주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의 기호충족 및 주류산업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추가

- ▶ 추진배경 :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약주 생산을 통하여 소비자 기호 충족
- ▶ 주요내용 :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약주 제조과정에 과실·채소류 20% 이내 사용 가능
- ▶ 시행일 : 2011. 4. 1.

20.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 연장

-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당초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차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 환급한도액은 연간 10만원이며, 휘발유 및 경유는 250원/ℓ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약 161원/ℓ)을 환급받게 됩니다.
-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등)를 발급받아 유류 구매시 카드결제를 하고, 추후 월별로 카드사가 환급세액이 제외된 카드결제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 연장

- ▶ 추진배경 : 에너지 절약 및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에 대한 지원
- ▶ 주요내용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일몰을 2012년까지 2년 연장
- ▶ 시행일 : 2011. 1. 1.

21.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 기왕의 재산반출자를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함으로써 해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하여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신설합니다.
-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당해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0년도분도 2011년 6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2010년도분은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2.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 인하

-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희소 금속 등 기초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관세율이 인하됩니다.
- 이번 관세율 인하를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11년부터는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사용되는 물품, 탄산리튬·망간분 등 희소금속을 포함한 기초원자재, 원피·면사 등 중소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물품 등 43개 품목의 경우 수입시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관세율 인하

- ▶ 추진배경 :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강화, 기초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
- ▶ 주요내용 : 황산코발트·주석괴·원피 등 43개 품목의 관세율 인하
- ▶ 시행일 : 2011. 1. 1.

※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관세율 인하

품 명		현 행		개정(안)	
		기본세율	실행세율	기본세율	
신성장 동력 지원 (17)	그린카 (2차전지)(5)	황산코발트/황산망간/탄산망간 황산알루미늄/도전재(이차전지용)	8	양5.5	5
	차세대 디스 플레이 (6)	합성유기 루미노퍼	8	양6.5	5
		포도레지스트	8	양6.5	5
		도포기(OLED용)	8	8	5
		식각기(OLED용)	8	할4	5
		증착기(OLED용)	8	할4	5
	PECVD(OLED용)	8	8	5	
	LED응용(1)	다이아몬드 코팅 와이어	8	8	5
	태양전지 / 풍력발전 (5)	규사	3	3	2
		탄산이노트륨	4	4	3
		커플링	8	8	5
		기어박스 덤퍼	8	8	5
	슬립링	8	8	5	
	기초 원자재 안정 확보(17)	페로실리콘	3	3	2
		페로실리콘크롬	3	3	2
		고탄소페로크롬	3	3	2
		중저탄소페로크롬	3	3	2
주석괴		3	3	2	
코발트분		3	3	2	
망간분		3	3	2	
Ti-Sponge		3	3	2	
니켈Sheet		5	5	3	
산화코발트(이차전지용)		4	4	3	
탄산리튬		8	양5.5	5	
이산화망간		8	양5.5	5	
오산화바나듐		2	2	1	
금속규소		8	양5.5	5	
황산니켈		8	양5.5	5	
수산화리튬		8	양5.5	5	
니켈폼		8	8	5	
중소기업 지원(9)	원피	1	1	0	
	유연처리원피	5	5	3	
	견사	8	할4	4	
	견방사	8	할4	4	
	리오셀	4	할2	2	
	고무사	8	8	5	
	면사	4	할2	2	
	재생(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 및 스테이플사	2	할1	1	
	철분	5	할3	3	

23.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對최빈개도국 지원에 동참하고, 경제 위상에 맞는 역할 수행 차원에서 최빈개도국의 수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공여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특혜공여대상 단계적 확대 계획*(2007. 11월)

08(75%) → 09(80%) → 10(85%) → 11(90%) → 12(95%)

* '07년 계획수립 당시에는 특혜공여 대상품목이 93개로 전체의 1.8%

• UN총회에서 소득·인적자원·경제적 취약성 등을 기준으로 지정된 최빈개도국(49개국)이 특정 품목을 아국에 수출하는 경우 무관세·무쿼터를 적용하는 것이 특혜관세의 내용입니다.

■ '10. 1월 이후 관세대상 품목의 85%인 총 4,294개 품목이 특혜공여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1. 1. 1일부터 관세대상 품목의 90%인 총 4,547개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신규 추가되는 품목은 화훼류, 향신료류, 유지류, 섬유 및 의류제품 일부, 각종 기기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증빙 서류 제출 면제

■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미화 1,0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을 수입하거나 동종·동질의 물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FTA 협정관세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미화 1,000불 이하의 소액물품 또는 동종·동질물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재량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 ▶ 수입자의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FTA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 다만,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 ▶ 추진배경 : 기업들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 부담 완화
- ▶ 주요내용 : 수입자가 FTA체결국으로부터 소액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은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강행규정으로 변경함
- ▶ 시행일 : 2011. 1. 1.

25. 수출신고필증 사본제출 생략

-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0년까지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 2011년부터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수출자의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사본제출 생략

- ▶ 추진배경 : 기업들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 부담 완화
- ▶ 주요내용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 시행일 : 2011. 1. 1.

26. 원산지확인서 서식 단일화

-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년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0년까지는 최종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고, 재료에 대해서는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며,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에 대해서만 1년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2011년부터는 동일한 물품의 경우에도 최종물품으로 수출자에게 판매하느냐 또는 재료로 다른 생산자에게 판매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서식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통합하고 1년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원산지확인서 서식 단일화

- ▶ 추진배경 : 기업들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 부담 완화
- ▶ 주요내용 : 제품의 용도(최종제품 또는 재료)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년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 시행일 : 2011. 1. 1.

27.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의 증명서발급기관 제출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를 생산자가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0년까지는 원산지소명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는 생산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제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 2011년부터는 생산자가 원할 경우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를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의 증명서발급기관 제출

- ▶ 추진배경 : 생산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통해 기업들의 FTA 활용도 제고
- ▶ 주요내용 : 생산자가 원할 경우 원산지소명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를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 시행일 : 2011. 1. 1.

28. 원산지증명서상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한 보정요구 제한

-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예: typing error)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도록 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2010년까지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 세관장은 반드시 수입자에게 보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 2011년부터는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원산지증명서상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한 보정요구 제한

- ▶ 추진배경 : 기업들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류보정요구 제한
- ▶ 주요내용 :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의 경우 세관장이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도록 함
- ▶ 시행일 : 2011. 1. 1.

29. 새로운 지방세 3법 전면 시행

- 단일법인 기존 지방세법을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이 2011. 1. 1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 지방세법 분법 : (현행) 지방세법 → (개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종전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개정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거듭하여 법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니다.

- 또한, 선진각국의 지방세 제도와 비교할 때 납세자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행정 중심적이고 세목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 지방세 3법 중 우선, 새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 수정신고제도의 개선, 기한 후 신고 확대, 관허사업제한 요건 강화, 세무조사기간 제한 등

- 둘째로,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기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 셋째,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허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선심성 지방세 감면의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세 3법, 2011년 전면 시행

- ▶ 추진배경 : 후진적이고 복잡한 지방세법을 성격별로 분법, 전문화·선진화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및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 주요내용

- ① 단일법인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 ② (지방세기본법)수정신고제 개선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③ (지방세법)유사세원 중복과세 통폐합 및 영세세목 정비 등 지방세목 체계의 간소화
-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감면조례 등에 산발 규정된 감면규정 통합·재정비 등 감면관리체계의 효율화

- ▶ 시행일 : 2011. 1. 1.

30.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 종전에는 등기시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 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나, 2011. 1. 1부터는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통합 취득세의 도입으로 i) 취득세와 등록세의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고, ii) 납세·징세비용을 절감하였으며, iii) 신고납부기한이 60일로 연장되었지만, 등기·등록일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민 완화 및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분할납부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 통합 취득세의 분할납부 대상은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인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납세자에 한하여

- 30일 이내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11~'12년은 세액의 50%, '13년에는 세액의 70%를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60일)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취득세 분납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14년부터는 통합 취득세 체계로 완전 이행될 계획입니다.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 ▶ 추진배경 :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한시적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일시적으로 가중될 우려가 있는 국민 세부담을 완화
- ▶ 주요내용
 - ① (분납대상)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인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납세자
 - ② (분납방식) 30일 이내 등기·등록시 '11~'12년은 세액의 50%, '13년은 세액의 70% 선납,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60일) 내 납부
 - ③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후 '14년부터 통합 취득세 체계로 완전 이행
- ▶ 시 행 일 : 2011. 1. 1.

- 그러나, 공동주택 승강기 등의 교체·수선은 공동주택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라기보다는 주민생활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필수적이고, 서민실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중소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 따라서, 주민생활의 안전과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2011.1.1일부터 공동주택에 딸린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선할 경우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인 85㎡ 이하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서민주택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게 됩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지방세 선진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속시설물 개수시 취득세 면제

- ▶ 추진배경 : 주민생활 안전과 사고예방과 밀접한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부속시설물을 설치·수선하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중소서민의 생활 안정 지원
- ▶ 주요내용
 - ① (공동주택의 범위) 전용면적이 85㎡ 이하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서민주택(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 ② (부속시설물의 범위) 승강기, 발전시설, 난방용·목욕탕 보일러,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배전 시설 등 공동주택 부속시설물(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 ▶ 시 행 일 : 2011. 1. 1.

31.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속시설물 改修시 취득세 면제

- 종전까지 승강기, 보일러 등 공동주택에 딸린 부속시설물*을 설치·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2%가 과세되었으며, 입주민 개개인이 자기지분에 따라 취득세를 나누어 부담해 왔습니다.

* 승강기, 발전시설, 난방용·목욕탕 보일러,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배전시설(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32.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강화

- 종전까지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채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관보·공보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의 공개대상자가 제한적이고, 관보·공보 등에 접근성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 고액상습 채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를 원활히 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명단공개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2011. 1. 1일부터는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방법에 언론매체를 추가하고, 공개대상 체납액을 3천만원으로 하되, 자치단체별로 채납자 공개대상 건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3천만~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강화

- ▶ 추진배경 : 고액상습 채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를 원활히 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
- ▶ 주요내용
 - ① (공개기준액) 현행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되, 조례로 3천만~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② (공개방법) 현행 관보·공보 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 외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채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추가
 - *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 ▶ 시행일 : 2011. 1. 1.

33.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 최근 어려운 주택경기과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금년 말에 감면이 종료되는 유상거래 주택에 대해서 2011. 12. 31일까지 취득세의 50%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연장하였습니다.
- 일반 매매계약을 통한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0% 감면혜택(4% → 2%) 시한을 당초에는 2010.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감면제도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의 어려운 주택경기과 중·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1년간 주택거래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다만, 주택 유상거래 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악화되는 문제로 일률적 감면연장 대신 9억원 이하 1주택,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은 현행대로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하되, 9억원 초과 주택 및 다주택자는 이번 감면연장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정부의 이번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조치로 서민층의 주택구입에 따른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어려워진 지방재정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감면시한 연장

- ▶ 추진배경 : 최근의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침체된 주택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시한을 1년간 연장 조치
- ▶ 주요내용
 - ① (감면시한)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4% → 2%) 감면기한을 당초 2010. 12. 31일 일몰종료에서 2011. 12. 31일까지 1년간 연장조치
 - ② (감면내용) 당초 유상거래주택자에 대한 일괄 감면에서, 9억원 이하 1주택 및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만 계속 감면을 적용하고, 9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2011.1일부터 전면적용에서 제외
- ▶ 시행일 : 2011. 1. 1.

34.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

- 2011. 3. 1.부터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1장당 1천원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최근의 지방세 업무처리 시스템이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 징세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전자적 납부자에 대해서는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1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납부함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자치단체의 징세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

- ▶ 추진배경 :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전자적 납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업무처리 시스템의 전자적 방식 전환을 촉진 및 활성화
- ▶ 주요내용
 - ① (개요) 전자적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1천원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액에서 공제
 - ② (공제내용) 납세자가 자동계좌이체만을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의 범위 내에서,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300원에서 1천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 ▶ 시행일 : 2011. 3. 1.

35.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 토지수용 등으로 기존 농지를 대체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기한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최근 대단위 공익사업이나 재개발로 인해 기존 농지가 토지수용이 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새로운 농지를 1년 내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나
- 농지의 경우에는 기존에 경작하던 농작물에 적합한 조건의 대체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토지수용이 되어 그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감면유예 기한을 조정하였습니다.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 ▶ 추진배경 : 토지수용에 의한 부동산 대체취득시 현행 비과세 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① (현 행) 수용에 따른 부동산을 대체 취득할 경우 현재는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을 토지수용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해야만 감면을 적용
 - ② (개 선) 농지의 경우는 종전에 경작하던 농작물에 적합한 대체농지를 1년 이내에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농지에 한해 2년간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
- ▶ 시 행 일 : 2011.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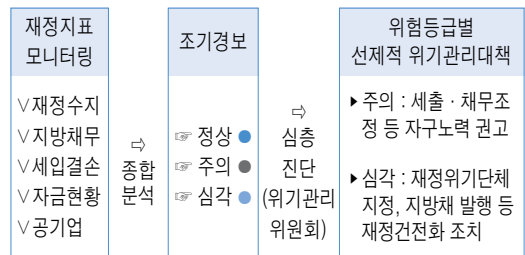
36. 지방재정 위기경보 시스템 도입

- 지방재정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자치단체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지방재정 위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합니다.
- 또한, 자치단체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상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상 근거조항을 신설·시행(11년부터)합니다.

지방재정 위기경보시스템 도입

- ▶ 추진배경 : 지방재정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자치단체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위기 예방
- ▶ 주요내용
 - ①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수준에 따라 「정상 → 주의 → 심각」으로 등급화하여 조기 경보

지방재정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대책 흐름도



▶ 시 행 일 : 2011. 1. 1. 예정 (법률 개정중)

37.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통한 직접 신청

- 관세청은 수출입업체가 수출·입신고에 이용되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까지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기 위하여 직접 세관에 방문하거나 관세사를 통하여 대리신청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앞으로는 수출입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사업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부호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오는 '11. 1. 3일부터 세관에 방문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상에서 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를 통한 부호신청 간소화 실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신청 및 부호정비

▶ 추진배경 : 수출입업체가 온라인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부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개인정보유출을 차단하고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

▶ 주요내용

- ①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출입업체 직접부호신청제도(온라인상) 도입
- ②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시 관련서류 제출 면제
- ③ 부호신청서식에서 신청항목을 간소화하고, 용도별로 서식 분리
- ④ 13단위 해외거래처부호로 사용부호 통일(10단위 부호사용 유예기간 : '11. 3. 31.)

▶ 시행일 : 2011. 1. 3.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 통보

- 수입관리 강화, 예산집행심의회 활성화 등 -

* 본 자료는 2010년 12월 30일 예산기준과·기금운용계획과에서 발표한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 통보'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1월말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조기에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였음(2010. 12. 30)

※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담아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집행지침을 신속히 통보한 것은 예산이 예년보다 조기에 통과되어 가능한 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재정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현재의 경기회복세를 지속하는 한편,
- 예산 집행의 세부기준을 조기 확정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2011년 집행지침의 특징은

- ① 재정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재정낭비를 방지
 - 경기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대규모 SOC 사업을 별도로 중점 관리하고, 지자체보조·출연사업 등은 최종수요자 기준으로 실집행실적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외화예산, 복지급여 등은 조기집행을 지양하고, 각 부처별로 예산낭비 개선실적을 분기별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에 보고토록 함

* 11년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 57%

②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외수입 등에 대한 수입관리 지침을 신설

- 유가증권 매각, 미수납채권, 국유재산관리수입, 정부배당 수입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

- 각 부처는 1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유가증권 매각계획*을 제출하고, 민영화 등 주식 매각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매각에 착수하는 시장조건 및 최소 매각 물량 포함

- 미수납채권 및 연체료 회수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하여 적극적인 채권보전 및 채권회수 조치 강구

- 기금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노력 및 적극적인 채권회수 추진

- 자금운용기관 분산, 금융상품 다원화, 연기금 투자 풀 활용 등을 통해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

③ 예산절감 및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각 부처의 자율적인 집행 효율화를 위해 '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 7인 이상(민간위원 2인 이상 포함)으로 구성하며, 소속기관 등 집행 현장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권장

- 예산집행결과 평가, 예산절감 방안 및 낭비·우수 사례 발굴 등에 대해 심의토록 하여 심의회 운

영을 활성화

- 보조사업 공모시 민간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보조금 정산기한* 설정, 관련 자료의 5년간 보관의무 부과 등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

* 사업완료 및 회계연도 종료 후 민간보조는 2월내, 지자체 보조는 3월내

- 국내항공 이용시 저가 항공사(Low-Cost Carrier) 이용 권장

- R&D 및 정보화 예산의 장비구입 집행 효율화

* (R&D) 기 구축된 장비와의 공동 활용방안 및 중복성 여부 사전 검토 후 구입

* (정보화) 정보시스템을 별도로 설치시 행안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타당성 사전협의

- 정보화 예산의 낙찰차액 사용범위 확대 등 집행탄력성 부여

④ 에너지 절약 적극 추진

- 에너지 절약 투자계획 수립 · 시행
- 에너지 고효율 사무 환경 구축 및 청사 관리
- 전기차 · 하이브리드차 등 에너지 절약형 제품 우선 구매

참고 1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 내용

1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관리 강화

- 세외수입 등에 대한 예산 수입관리지침 마련(신설)

※ '11년 세외수입예산(일반+특별회계) : 244,714억원

- (유가증권매각수입)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에 1월 말까지 유가증권 매각계획*을 제출하고, 민영화 등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매각 개시에 착수하는 시장조건 및 최소 매각물량 포함

※ '11년 예산 : 15,251억원

- (미수납채권) 매년 회수계획 수립, 적극적인 채권 보전 및 채권회수 조치 강구

※ '09년말 연체채권 잔액 : 85,636억원

- (국유재산관리수입) 국유재산관리수입 증대방안 강구, 연 1회 이상 연체로 징수계획 수립 등 연체 최소화

- (정부출자 수입) 수입예산 규모, 기관 특성, 타 기관의 배당수준, 사내유보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정부 배당

- (기타) 신용카드 연계 재정사업시 발생하는 부수수입 국고 납입

■ 기금 수입 증대관련 지침 강화

- (미수납 부담금) 징수노력 및 적극적인 채권회수 조치 강구

- (여유자금 운용 효율화) 자금운용기관 분산, 금융상품 다원화, 연기금 투자폴 활용 등을 통한 수익성 증대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자금의 안정성 강화

* 기준수익률, 허용위험한도, 적정유동성 등의 기준을 정하고 정기적 점검

2 재정집행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

- 각 부처 '예산집행심의회'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신설)

- (구성) 민간전문가 2인 이상 포함하여 7인 이상

* 각 중앙관서장은 소속기관 등 자체 주요 예산집행단위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 · 운영 가능

- ※ (예) 국토해양부의 경우 본부 이외에 각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관리청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 · 운영 가능

- (심의사항) 예산집행 결과평가, 예산절감 방안 및 낭비 · 우수 사례 발굴

-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 집행우수 · 예산낭비 사례 발굴 · 포상 · 전파

- 부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마련

- 자발적 예산 절감을 위한 직원 동기부여 제도 마련 등
- **(심사기준)** 합법성, 효율성, 합목적성, 보충성 기준에 따라 심사
- **(심의 효과)** 심의회 부의 중인 사업은 집행 유보,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업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 가능

■ 보조사업 집행의 책임성 강화

- 공모방식의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시 민간위원이 2인 이상인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5인~15인)를 구성
- 보조사업 정산사유* 발생시 2~3개월 내**에 실적 보고서 제출 및 보조사업 수행 관련 주요 자료의 5년간 보관 의무 부과

* 사업완료, 사업폐지, 회계연도 종료

** 민간보조 2개월 이내, 자치단체보조 3개월 이내

③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낭비 방지

- 공무원 정원 외로 운용하고 있는 기타직* 예산 증액 및 재외공관 행정원의 운용 계획 변경**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 * 전문계약직, 위원회 상근직, 청원경찰 등
- ** 인건비 단가, 공관별 인원배분 및 행정원 총정원
- 국내항공 이용시 저가 항공사(Low-Cost Carrier) 이용 권장
- 정보화 및 R&D 예산의 시설·장비 구입 효율화
 - (정보화) 정보시스템을 별도로 설치코자 하는 경우 행안부 통합전산센터와 타당성 등을 사전 협의
 - (R&D) 기 구축된 장비와의 공동 활용방안 및 중복성 여부 사전 검토 후 구입하고, 과제 종료 시점에는 구입 지양
- 인쇄홍보물 및 공개가능한 인쇄물은 전자우편,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하고 제작 물량은 최소화

■ 집행의 탄력성을 부여

- 정보화 예산의 낙찰차액 사용 범위를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허용하여 확정된 정보화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지원
 - * 현재는 낙찰차액을 정보화 보안 및 감리비 지원에 한정 사용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활용 활성화를 위해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대상에 시설장비유지비 추가
 - * (현행) 공공요금(210-02), 연료비(210-08) → (추가)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④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해 재정조기집행 적극 추진

■ 현장 중심의 특별점검체계 운영 등으로 조기집행의 실효성 제고

- 예산집행특별점검단(월 1~2회), 부처별 현장점검단 운영을 통해 집행상황 점검 및 집행애로 요인 적극적 발굴·해소
- 경기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대규모 SOC 사업은 별도 중점 관리하고 공공기관, 지자체에 대한 출연·보조사업은 최종수요자에 대한 실집행 실적 관리 강화

■ 조기집행을 위한 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사항 준수 철저

- **(문화재 발굴 및 조사기간)** 시군구 경유절차 등 불필요한 절차 생략을 통해 단축(64 → 30일 이내)
 - *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10. 2월 제정, '11. 2월 시행)
-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검토·심의 기간)** 중복적인 주민 의견 수렴절차 축소로 단축(250 → 100일 이내)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08. 12월 개정, '09. 1월 시행)

■ 조기집행으로 인한 재정낭비 최소화

- 외화예산, 인건비, 공공요금, 복지급여 등은 실제 집행소요가 발생한 시기에 집행

- 사업계획 수립, 공모, 자치단체의 사업준비 등 사전준비 강화
- 각 부처별로 외부 지적사항 및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고, 매 분기별 예산낭비 방지, 사업성과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이를 분기별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에 보고

5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적극 추진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총리지시 제2010-3호) 반영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 시행 (신설)
 - * 당해연도 에너지소비량을 낮추기 위해 일정 수준의 절감목표 수립,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활동 추진
- 공공요금,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예산 최대한 절감 집행
- 에너지절약 투자계획 수립·시행*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을 활용한 에너지절약 사업 적극 추진
 - * 매년 자체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연간추진계획에 따라 단열개선, 고효율기자재 구입 등 에너지절약 투자계획 수립·시행
- 에너지 고효율 사무 환경 구축 및 청사 관리
 - 공공청사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에 맞춘 설계·시공
 -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및 절수형 수도설비 의무화
 - 에너지 절감형 공공청사 운영을 위해 적정 실내온도 유지
 - * 적정실내온도 : 여름철 냉방 28℃ 이상, 겨울철 난방 평균 18℃ 이하
- 정부자산 취득시 에너지 절약형 인증제품 우선구매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우선구매
 - 조명의 신규설치 또는 교체시 LED 제품 우선구매
 - 업무용 승용차 구입시 경차,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를 50% 이상 구입

- '11년 신규사업인 전기차 보급사업(환경부소관 '11년 예산 170억원)을 적극 추진

참고 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요

- 집행지침은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 설정을 위해 작성
 - '83년 예산집행 효율화방안의 일환으로 '주요비목별 집행지침'을 시달한 이래 매년 작성
 -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 및 제80조(기금)
- 국가재정법 제44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80조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집행 전반의 기준인 일반지침과 사업유형별·비목별 지침으로 구성
 - 일반지침은 예산배정 유무, 외화경비 집행 등 예산 집행 전반에 걸쳐 통일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 사업유형·비목별 지침은 인건비·정보화예산·자치단체보조·운영비 등 사업유형별·비목별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지침은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
 - 감사 등에 있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작용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대폭 개편

- 글로벌 선진기업과 비교평가 방법으로 바뀐다 -
- 일자리 창출, 부채, 사회공헌을 중점 평가 -

* 본 자료는 2010년 12월 28일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대폭 개편' 중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I. 추진배경

-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1984년 도입되어, 그동안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
- 기관간 경쟁유발을 통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하는 제도로 정착
 - 2008년도부터는 평가결과와 기관장 인사를 연계한 별도의 '기관장 평가'를 도입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뒷받침

1984년	1999년	2004년	2007년	2008년 ~
24개 투자기관의 경영평가 도입	사장경영계약 및 사장 평가 도입	88개 산하기관의 경영평가 도입	공운법 제정 → 공공기관 관리 체계화	기관·기관장 평가 분리, 평가와 임원 인사 연계

- ② 다만, 별도의 '기관장 평가' 실시에 따른 평가부담 증가, 기관·기관장 평가결과 차이로 평가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 제기
- 또한, 글로벌 공기업 육성, 공정사회 구현 등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대한 경영평가제도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 대두

국민, 국회	공공기관	전문가	정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만경영 방지 • 재무건전성 평가 강화 • 국민의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부담 완화 • 맞춤형 평가 • 공정·투명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공기업 육성 • 공정 사회 기여 • 대국민 서비스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실효성 제고 • 국감, 감사원 감사 등 연계성 강화

-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평가, 평가부담 완화 등 평가제도의 품질 제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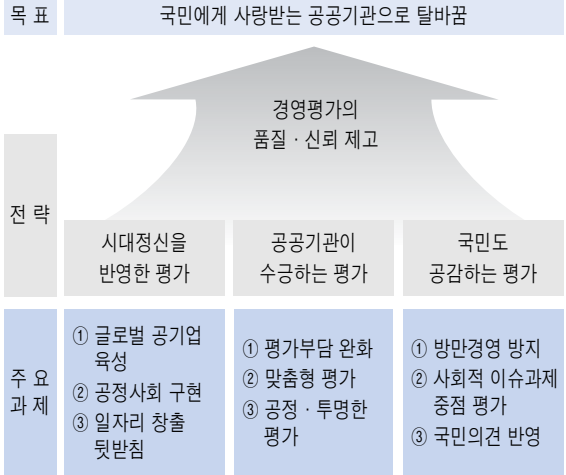
제도개편 추진경과

- ① 추진체계
- (민간합동 제도개선 TF운영) 기재부 재정업무 관리관을 팀장으로 3개팀(총괄반, 제도개선반, 제도운영반) 21명 참여
 - 국회, 관계전문가, 공공기관 임직원, 노동계 의견을 수시로 수렴

2 각계 의견수렴 등 추진경과

	공공기관	전문가, TF운영 등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등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실무자 간담회 * 4회(7, 9, 14, 16일)에 걸쳐 60여개 기관 참석 기관 평가결과 설명회(30일)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장 평가 결과 설명회(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간담회 : 8. 24일 * 평가단장, 민간 전문가, 기재부 등 10여명 	
9~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개선 자문단 운영 * 10여개 공공기관 실장급으로 구성하고 2회 개최(9. 16일, 10. 21일) 평가실무자 워크숍(1박 2일) * 일시 : 10. 26~27일, 청풍리조트 * 대상 : 113개 기관 담당자 등 * 내용 : 맞춤형 지표 발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개선 TF - Kick-off회의(2일) 이후 총7회 실무회의 제도개선 TF에서 시안 마련(10. 18일) 2차 간담회 : 10. 22일 * 제도개선 TF, 기재부 등 10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정감사, 언론, 노동 등의 요구 사항 수렴 * 박근혜 의원, 서병수 의원, 이정희 의원, 이종걸 의원, 이혜훈 의원 등이 국감시 질의 민주노동당이 사회공공연구소에 의뢰한 연구보고서 참고 감사원 경영평가제도 감사(재정 경제 감사1과, 9~10월)
1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지표 설계와 관련하여 수시로 회의 진행 4차 간담회 : 11. 29일 * 공공기관 임원 등 5차 간담회 : 12. 7일 * 공공기관 임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차 간담회 : 11. 12일 * 민간전문가, 기재부 10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국회 토론회(11. 2일) * 김영환 의원 등 5인 및 공기업 노동조합 공동 주최 토론회 참석 2차 국회 토론회(12. 15일) * 이정희 의원 등 12인 공동주최

II. 기본방향



III. 제도개편 주요 내용

1. 시대정신을 반영한 평가

문제 제기	개편 과제	세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 글로벌 우수기업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는 없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있는 글로벌 공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경쟁기업의 경영실적과 비교 평가 해외진출 사업의 성과평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어야 하지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사회 구현 노력평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공헌지표 신설 정부권장정책 평가비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가장 큰 과제는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노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관련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성과 평가 일자리 나누기, 신규채용 노력 평가

1-1 경쟁력 있는 글로벌 공기업 육성

1 글로벌 선진기업의 경영실적과 비교 평가하는 방법 신규 도입

- 당해 기관의 전년도 실적 대비 개선도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과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

* 국제 경쟁 기업이 존재하고, 그 기업에서 매년 관련 실적을 공개하여 비교 평가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

- 한국전력, 인천공항,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여건이 성숙된 준정부기관에도 점차 확대

* 한국전력(전력부하율, 송배전손실률), 철도공사(정시운행률, 철도사고율), 가스공사(도입가 경쟁력), 도로공사(하이패스 이용률), 부산항만(환적 경쟁력) 등

‘인천공항’ 평가지표 개편 예시

	2010년도 지표	2011년도 지표
업무 효율성	•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의 전년도 실적치와 비교 평가	• Global Top 5 공항(히드로, 살드골, 프랑크푸르트, 스키폴, 책렙콕)의 ROA*와 비교 평가
공항운영 사업	• [사고발생·외부지적수/공항면적]을 전년도 실적치와 비교 평가	• ACI**발표 ASQ(Airport Service Quality) 3위 이내 기관의 개선도와 비교 평가
미래성장 사업	• 비항공사업 수익(상업시설 이용료 등)을 전년도 실적치와 비교 평가	• Global Top 5 공항의 비항공사업 수익의 비중과 비교 평가

* ROA(Return On Assets) : 자산수익률(당기순이익/자산총액)

** ACI(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 국제항공협회

2 글로벌 경쟁사업, 해외진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확대

- 주요사업 중 해외사업(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

* 예) '석유개발사업' 지표(계량) 비중 : ('10년도) 17점 → ('11년도) 19점

1-2 '사회적 책임(기여)' 을 비중 있게 평가 (2→7점)

1 공정사회 구현 노력·성과를 평가하는 '사회공헌' 지표 신설 (2점)

- 동반성장, 공정사회 구현 등을 평가하는 '사회공헌' 지표를 신설하되, 기관 평가보다 기관장 평가에 그 비중을 높게 설정*

* '사회공헌' 지표 비중 : 기관 평가→2점, 기관장 평가→5점

사회공헌 지표 평가내용 예시

- ① 일자리 창출(사회적 기업 육성 포함)을 위한 노력 평가
- ② 동반성장(상생경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 ③ 기관의 사업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여·나눔 활동 노력과 성과
- ④ 기타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문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성과

2 채용·구매 관련 정부권장정책 평가 강화 (5점)

- 장애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책임을 비중 있게 평가 (2 → 5점)

2010년도

<8개 항목(2점)>

- 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0.6)
- ②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0.4)
- ③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0.2)
(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 포함)
- ④ 장애인·고령자 의무 고용(0.2)
- ⑤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0.2)
- ⑥ 에너지이용 합리화(0.2)
- ⑦ 국가유공자 우선채용(0.1)
- ⑧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0.1)

2011년도

〈11개 항목(5점)〉

- ①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1.0)
- ② 단시간 근로제 운용 실적(0.5)
- ③ 장애인 의무 고용(0.4)
- ④ 국가유공자 우선채용(0.3)
- 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0.8)
- ⑥ 동반성장 실적(0.5)
- ⑦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0.3)
- ⑧ 자활용사춘 생산품 우선구매(0.3)
- ⑨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0.3)
- ⑩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0.3)
- ⑪ 에너지이용 합리화(0.3)

*색글씨는 신설 평가항목

1-3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 를 중점 평가

- ① 기관업무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 을 평가
 - 신설되는 '사회공헌' 지표(비계량, 2점)의 평가내용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 자체인력 증원보다는 아웃소싱(outsourcing), 기술이전 등을 유도
 - 특히,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주요 사항으로 평가
- ②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
 - '정부권장정책' 지표(계량, 5점)에서 신규채용 실적, 청년인턴 채용 성과 및 정규직으로 전환 실적을 평가
- ③ 해당 기관의 실질적 '신규채용' 노력과 성과도 평가
 -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지표(비계량, 4점)에서 신

규채용 확대 노력과 성과를 핵심 평가내용으로 신규 설정

- 조직이 수년간 신규채용 없이 노쇠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조직의 활력을 제고
-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 와 연계한 일자리 나누기 노력도 평가내용에 포함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지표 세부 평가내용 예시

2010년도	2011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내 단위조직의 역할, 인력의 구성 및조직의 전략과의 연계 정도 • 구성원 역량 개발 노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신규채용' 확대 노력과 성과 • 기관 내 단위조직의 역할, 인력의 구성 및조직의 전략과의 연계 정도 • 구성원 역량 개발 노력 등

2. 공공기관이 수급하는 평가

문제 제기	개편 과제	세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 같은 내용을 중복 평가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기관장 통합평가체계 개발 • 유사 중복지표 통폐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특성과 달성 목표 등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구성은 기관의 합리적 선택 존중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 개발 • 유형별 지표체계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절차는 공정·투명하게, 결과는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평가 피드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단 다양성·전문성 강화 • 평가 컨설팅 강화

2-1 공공기관의 평가부담을 대폭 완화

1 기관·기관장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지표 수를 축소·간소화 [2010년도 : 39개 수준(기관 28, 기관장 11) → 2011년도 : 18개 수준]

- 리더십(기관장)+리더십·전략(기관) → 리더십·책임경영(통합)
- 공공기관 선진화(기관장)+경영시스템(기관) → 경영효율(통합)
- 고유과제(기관장)+주요 사업 관련지표(기관) → 주요 사업(통합)

* 통합, 지표 수 간소화로 보고서 분량 대폭 축소 가능 (총 650 → 300쪽)

(2010년도) 기관장 평가		(2010년도) 기관 평가		
범주	평가지표	범주	평가지표	
리더십	주요현안 과제 선정 및 경영 계획수립의 합리성 (10)	리더십·전략	경영진 리더십(3)	
	지속가능성 확보 및 커뮤니케이션 노력(10)		책임경영(4)	
공공기관 선진화	보수·성과 관리체계 합리화(10)		비전 및 전략개발(3)	주요사업 추진계획(3)
	인력·기능조정 및 기타 효율화(10)	경영시스템	주요사업 활동(15)	
	노사관리(10)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3)	
	단체협약(10)		재무예산 관리(3)	
	고유과제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5)	보수관리(3)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5)			노사관계 합리성(3)	고객만족 개선도(5)
문제해결의 합리성(5)		성과관리 체계(3)	노동생산성(5)	
사업집행의 효율성(5)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 효율화 추진관리(2)	자본생산성(5)	
성과목표치 달성도(20)		주요사업 계획·활동(비계량), 성과(계량)를 통합 평가	계량 인건비(3)	
		정부권장 정책(2)	계량 관리 업무비(4)	
			총인건비 인상률(4)	
			재무예산성과(2)	
			정부권장 정책(2)	

(2011년도) 기관 평가(공기업)

범주	평가지표	비중	
		비계량	계량
리더십·책임경영	1. 리더십	5	
	2. 책임경영	3	
	3. 국민평가(고객만족도, 국민체감도)		5
	4. 사회적 기여		
	- 사회 공헌	2	
	- 정부권장정책		5
경영효율	1. 업무효율		8
	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4	
	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 재무예산 관리	4	
	- 재무예산 성과		6
	- 관리 업무비		2
	4. 보수 및 성과 관리		
	- 보수 및 성과 관리	4	
	- 총인건비 인상률		4
	5. 노사관리	3	
주요 사업	주요사업 계획·활동(비계량), 성과(계량)를 통합 평가	15	30
합 계		40	60

*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간 같은 색깔은 유사지표

** 색깔씨는 신설지표

2 기관장 평가의 효용성은 유지

- 기관 평가지표 중에서 기관장의 역량·노력이 중요한 지표를 발췌하여 기관장 평가를 실시하되, - 기관장의 창의경영 유도를 위해 기관장의 역량 발휘가 특히 필요한 사업*을 경영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

* 지속발전 사업 (비계량, 10점, 기관장 평가의 별도지표) : ① 신성장동력 확보, 시장개척 등 신규사업, ②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생산성 제고 과제 등

기관 평가지표와 기관장 평가지표 비교 예시

기관 평가(공기업)			
범주	평가지표	비중	
		비계량	계량
리더십 · 책임 경영	1. 리더십	5	
	2. 책임경영	3	
	3. 국민평가		5
	4. 사회적 기여	2	5
경영 효율	1. 업무효율		8
	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4	
	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4	8
	4. 보수 및 성과 관리	4	4
	5. 노사관리	3	
주요 사업	주요사업 활동, 계획(비계량)성과(계량)을 통합 평가	15	30
합 계		40	60

기관장 평가			
범주	평가지표	비중	합계
리더십	1. 리더십(비계량)	10	20
	2. 책임경영(비계량)	3	
	3. 국민평가(계량)	2	
	4. 사회적 기여(비계량)(사회공헌)	5	
경영 효율	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비계량)	10	40
	2. 보수 및 성과 관리(비계량)	10	
	3. 노사관리(비계량)	20	
주요 사업	1. 주요사업을 30점으로 환산 * 비계량 15점을 10점, 계량 30점을 20점으로 각각 환산	30	40
	2. 지속발전 사업추진 노력·성과(비계량)	10	
합 계		100	100

2-2 기관유형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

① 기관별 맞춤형 지표는 공공기관의 합리적 선택 존중
하여 구성

- 기관이 스스로 지표를 선택하고, 평가단과 기재부가 평가의 형평성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

② 공기업·준정부기관 계량평가 비중 차별화

- 계량 성과평가가 용이한 공기업은 계량지표 비중 확대 (55 → 60점)
- 준정부기관은 정부정책의 효과적 집행이 중요하므로, 2010년도 비계량지표 비중(50점)을 유지

③ 유형 세분화를 통해 기관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

- 공기업, 연기금형 기관 세분화 → 관련지표 내용을 차별화

	2010년도	2011년도	예시
공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유형으로 관리(평가단 운영을 위해 공기업 1, 2로 편의상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개혁 필요(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인천공항, 광물자원, 부산항만 등) • 재무구조 개선 필요(LH, 도로공사 등) • 일반 공기업(주택보증, 감정원, 마사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예산성과 지표 내용을 차별화 * 시장개혁(자산회전율 등) * 재무구조 개선(부채비율) * 일반(유동비율 등)
연기금형 준정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유형으로 관리(평가단 운영을 위해 금융형, 비금융형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정책금융형(기보, 신보, 예보, 자산관리 등) • 사업기금형(체육진흥, 중소기업진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예산성과·관리 대신 기금운영성과·관리로 평가하고, 기금운영성과 비중을 유형별로 차별화* * 기금운영성과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형 (4점) - 정책금융형 (2점) - 사업기금형 (1점)

※ 중소형기관(정원 500인이하, 45개)의 기관평가 방식*은 현행 유지

* 주요사업 평가 이외 부문에서는 계량지표만 평가

4 기관 특성에 따라 평가비중 및 방법 차별화

- 공기업은 '업무효율', '재무예산 관리·성과' 지표 비중을 높이고, 준정부기관은 '국민평가' 지표 비중을 확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표 비교 예시

[2010년도]		[준정부기관]	
• 국민평가	5	• 국민평가	8
• 업무효율	8	• 업무효율	6
• 재무예산 관리·성과	10	• 재무예산 관리·성과	6

- '업무효율' 지표 평가시 공통평가방식(자본생산성·노동생산성)에서 기관의 사업특징을 고려한 평가 방식으로 변경

자산관리공사 사례 예시

[2010년도]		[2011년도]	
노동생산성 (100%)		노동생산성 (부가가치/평균인원) (66%)	총자산이익률 (당기순이익/총자산) (34%)

5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권 확충, 성과중심 평가 확대

- '10년부터 자율권 확대기관* 시범사업 추진 중 ('09. 12월 결정)

* 인천공항, 중소기업은행,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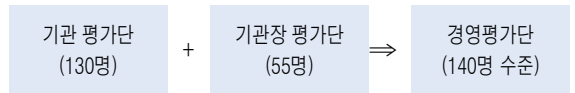
- 민간과의 경쟁, 성과중심 평가가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자율권 확대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

* 자율권 확대 시범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면밀히 검토

2-3 공정하고 품질 높은 평가

1 다양한 인사의 평가 참여 및 평가단의 윤리·책임 강화

- 兩 평가단을 '경영평가단'으로 통합 운영하고, 교수·회계사 등 전문가는 물론 민간기업 CEO 등 참여 확대



- 엄격한 상피제(연구용역, 친인척 근무) 적용,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평가위원은 평가 중이라도 해촉 등 평가단 책임 강화

2 경영평가 품질 피드백 실시

- 경영평가 종료 후 공공기관에 평가 품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의 공정성·전문성에 대한 환류 강화
 -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연도 평가단 구성, 평가지표 개선 등에 활용

3 경영평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활성화

- 공공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평가체계 및 지표, 평가 착안사항 등 사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 평가결과 부진기관에 대한 평가단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평가결과가 경영 개선과 연계되도록 지원

3. 국민도 공감하는 평가

문제 제기	개편 과제	세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로 방안 경영을 좀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안경영을 방지하는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평가지표 비중 확대 • 방안경영에 실질적 불이익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가 많은 기관은 재무건전성을 중점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이슈과제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상황 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 • 지표간 평가비중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국민이 평가 결과에 좀더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국민의 의견을반영하는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감도 평가 지표 신설 • 지표 평가방법 신규 설계

3-1 방안경영을 견제·방지하는 평가

1 방안경영에 대해서는 득(得)보다 실(失)이 크도록 엄정하게 평가

○ 그동안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경영공시 등을 통해 방안경영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실효성 있는 제재기제는 미정착

- 현재는 복리후생 과다지출, 노조전임자 과다운영 등 정부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도 관련 평가 지표에서 일부 불이익*을 주는 수준

* (예) 조직 및 인사관리 적정성, 노사관리 지표 등에서 1등급 하향 조정

• 방안경영 적발시 해당 지표에서 최하점(ㄷ등급)까지 부여

* '10년도 실적평가'(11. 3~5월)부터 적용

• 국회, 감사원 지적사항은 평가시 필수 반영

* 과거 지적된 방안경영 사항에 대해서도 매년 점검·평가

• 공공기관운영위원회(경영개선 소위)에서 발굴된 기준·과제는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평가 실효성 제고

2 방안경영과 관련 있는 평가지표의 비중을 확대 (19 → 26점)

준정부기관 평가지표 비중 예시

(단위 점)

지표명	2010년도	2011년도	비고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3	4	
• 재무예산 관리	3	4	
• 계량관리업무비	4	5	
• 보수 및 성과관리	6	8	
• 리더십	3	5	
계	19	26	

3-2 사회적 이슈과제를 중점 평가

1 국민관심을 받는 현안과제를 중점 평가

• 시장개척이 필요한 기관은 투자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기관은 부채관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

시장개척 역량강화 필요기관	재무구조 개선 필요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성장, 자원개발, 글로벌 경쟁이 필요한 기관 • 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인천공항, 광물자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관리, 유동성 개선, 적자 문제 해소 등이 필요한 기관 • N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탄공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회전율(매출액/자산) 등 투자 효율성 중심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비를 관리노력 및 개선도를 중점 평가 ■ 재무구조개선과 직접 관련된 '재무예산관리·성과' 지표 비중 확대(5점 → 12점)
--	---

2 특수상황 공공기관에 대해 별도 평가 병행 추진

• 과다부채, 적자지속, 방안경영 기관 등에 별도 과

제(지표) 부여

- 「일반지표(100점) + 별도과제지표(ω)」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정

- '11년도 실적평가에는 LH공사 등에 시범 적용 실시하고, '12년도 실적평가부터 경영상 문제가 있는 기관 등에 확대

LH공사 평가지표(2011년도) 예시

(일반지표 : 100점)		(별도과제 지표 : 30점)	
• 리더십 · 책임경영	20	• 재무건전성 제고 * 사업조정, 경영혁신, 부채감축, 사업추진 방식 개선 등 4개 부문에서 부채 관리 노력 추가 평가	30
• 경영효율	35		
• 주요사업	45		
계	100		
100점으로 환산			

3-3 일반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평가

-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기관 이미지 · 브랜드를 신규 평가

◎ '99년 이후 서비스 직접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 중이나, 조사결과가 일반국민들의 체감도와는 차이

*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결과(10년) : 92.9점

- 직접 수혜고객 평가만 중시될 경우,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 한정된 고객 과잉관리 문제 등 소지

◎ 각 기관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의견도 포함하여, 다양한 시각과 판단을 경영평가에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

- 직접 수혜고객(고객만족도조사) 외에 주주 · 주인

으로서의 일반국민들의 견해를 평가에 반영

- 국민경제 기여도, 윤리 · 투명성, 신뢰도 등 공공기관별 국민인식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평가

2010년도	2011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직접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면접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 • 고객만족도조사결과 경영평가 반영 (공기업 5점, 준정부기관 7점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간접고객(일반국민)에게 국민체감도 조사를 실시 • 면접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 • 고객만족도조사 점수에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를 적정수준* 반영 * 시행 첫해는 10% 수준 반영

• 추진일정 및 평가방법

- ('11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기본설계시 국민체감도 조사 방안 마련
- ('11년 하반기) 고객만족도 및 국민체감도 조사 실시
 - 첫해는 절대적 수준을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
 - '12년부터 '절대적 수준(40%) + 개선도(60%)'로 평가(만족도평가방식)

IV. 기대효과

1. 공공기관의 평가부담은 줄고 수용도는 향상

- ①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체계 통합으로 중복 평가 여지 해소
- ②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로 공공기관의 수용성 제고
- ③ 평가 피드백, 효용성 확충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활성화

2. 공정사회 구현 및 공공기관 선진화를 적극 뒷받침

- ① 일자리 창출, 공정사회 구현에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 수행

- ② 인력운용 효율화, 노사관계 합리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를 차질없이 마무리
- ③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를 강력하게 견제

3. 경영평가제도의 품질 제고

- ① 우리나라의 대표적 제도 수출 상품으로서의 글로벌 품격 향상
- ② 글로벌 경쟁기업과 비교 평가되는 공공기관의 위상 정립
- ③ 국민, 전문가, CEO 참여를 통한 공정·투명한 평가 실시

V. 향후 일정

2010.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관별 평가지표 확정
2011년	개편제도 적용·집행
2012. 3월~5월	2011년도 이행실적평가

※ '10년도 실적평가(11. 3~5월)는 기존 평가편람으로 평가하고 개편된 '11년도 평가편람은 '11년도 실적 평가(12. 3~5월)부터 적용

참고 세부 평가지표(요약)

① 리더십·책임경영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1.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과 전략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설정을 위한 기관장의 활동 - 기관 핵심가치 실현을 전략개발 등 기관장 활동 • 현안과제 수립-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안과제의 적극적 발굴노력 및 대응 - 경영시스템 개선, 주요사업 성과 확보를 위한 기관장의 고유한 노력
2. 책임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비상임이사 기능 활성화 관련 노력 • 윤리, 투명경영 추진 관련 노력
3. 국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만족도, 국민체감도 등
4. 사회적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공헌 : 일자리창출 노력, 동반성장 노력, 사회봉사활동 등 • 정부관장정책(10개 내외)

② 경영효율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1. 업무효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성, 안정성 등 기관별 맞춤형 지표로 구성
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 신규인력 채용 노력 • 조직 및 인력운영 전략 • 구성원 역량 제고 활동 • 출자, 출연기관 등의 효율적 관리
3.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합리적 운용 • 예산편성 및 집행 투명성 제고 활동 • 재무구조 건전성 유지 및 개선 노력 • 재무예산성과 및 관리업무비
4. 보수 및 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중심 보수 체계 구축 및 운영노력 •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과 활용 등 • 보수관리 적절성(정부지침 관련)
5. 노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및 노력 • 노사간 의사소통 • 노사관계 관리역량 • 노사협의회의 실질적 운영

3 주요사업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주요사업별 계획, 집행, 성과	주요사업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사업계획 수립과 실행 • 효율적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집행 활동 • 사업집행상 효율성 제고 노력 • 집행과정상 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 • 사업성과(비계량, 계량)
	주요사업2	상동
	주요사업3	상동
	주요사업4	상동
	주요사업5	상동

최근 한·중·일의 성장 및 교역 동향과 시사점

* 본 자료는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에서 발표한 「최근 한·중·일의 성장 및 교역 동향과 시사점」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최근 한·중·일의 성장 및 교역 동향과 시사점

◇ 韓中日 3국간 역내 분업구조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11년에는 韓中, 韓日, 韓中日 FTA 등 역내 경제통합 관련 논의가 한층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韓中日의 성장 및 교역 동향과 시사점을 분석

1. 검토 배경

- 韓中日은 아시아 역내 경제의 핵심으로서 3국간 경제통합은 우리 경제의 성장 프론티어 확충 및 국내경제 구조조정에 중요한 動因으로 작용
- 특히, 중국은 지난 30년간 약 10%(세계경제 성장의 3배) 성장을 지속하여, 세계경제의 '최대 공장'이자 '최대 시장*'으로 자리매김
 - * 중국이 현재의 성장세를 지속할 경우 7년마다 GDP 규모가 2배로 증가하며, 2년마다 한국경제 규모에 해당하는 GDP 규모가 확대
- 中·日과의 시장규모 차이, 우리의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韓中日 경제통합시 우리나라는 최대 수혜국이 될 전망*
 - * 韓中日 FTA시 GDP 증가%, 3국 민간공동연구, '07: (한국)2.6 (중국)0.6 (일본)0.2

한·중·일의 무역의존도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	64.5	66.8	69.6	92.4	83.0
중국	60.4	61.9	61.4	56.8	44.0
일본	22.9	26.4	28.6	29.8	20.7

자료: EU

- 세계적인 지역통합 진전, 역내 통합 수요* 등 감안 시, 3국간 경제통합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기의 문제"
 - 특히,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거대시장인 중국의 적극적 FTA(대만, 아세안 등) 정책과 중국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 우리 기업의 對세계 및 對중국 경쟁력*이 시간이 갈수록 취약해질 가능성이 큰 점을 염두에 둘 필요
 - *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03~'07): 한국(63 → 53), 중국(766 → 1,128)
 - 중국이 세계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감안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도 필요
 - * ('09) 7.6%, 1.75조달러 → ('20) 21.4%, 15.94조달러, 세계 1위 (크레딧스위스)
- 이에, 최근 한·중·일의 성장과 교역 동향을 살펴 보고 역내 경제통합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II. 한·중·일 경제성장률 추이

1. 지난 20년간 경제성장률 비교

- 한·중·일 3국의 GDP는 지난 20년 동안('89~'09) 각각 약 2.8배, 11.0배, 1.7배로 양적 팽창
- 이에 따라 한·중·일의 1인당 국민소득(GNI)도 각각 약 3.9배, 11.2배, 1.5배 증가

한·중·일의 GDP 및 1인당 GNI 변화

(단위: 억달러, 달러)

	GDP		1인당 GNI	
	1989	2009	1989	2009
한국	2,955	8,325	5,040	19,830
중국	4,513	49,847	320	3,590
일본	29,517	50,689	25,800	37,870

자료: IMF, World Bank

2. 금융위기 이후의 성장률 분석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하였으며, 경기회복 흐름을 지속
- 한편, 중국은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위기 이전과 현재 GDP 수준 비교

	한국	중국	일본
'10. 3분기 GDP ('08. 3분기 = 100)	112.8	120.1	96.3

자료: 한국은행, 중국 국가통계국, 일본 내각부

한·중·일 경제성장률

(단위: %, 전년동기 대비)

	2008년				2009년				2010년(추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한국	5.3	4.2	3.1	△3.2	△4.1	△2.1	1.1	6.1	8.1	7.2	4.4
중국	11.5	10.4	9.0	6.8	6.4	7.8	9.6	10.7	11.3	10.3	9.6
일본	1.0	0.7	△1.4	△4.3	△8.7	△5.9	△6.3	△1.4	5.9	3.5	5.3

자료: 한국은행

- 한·중·일 3국의 내수 및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를 분석하면
 - 한국은 위기 직후에는 정부부문과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으나, 점차 민간과 내수부문의 자생적인 회복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
 -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9년 3.1%p에 달하였으나, '10년 부(△0.6%p)로 전환될 전망(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
 - 중국과 일본은 '09년에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부(-)를 기록하였으나, '10년에는 정(+)으로 전환될 전망
 - 중국은 '10년 소비·투자 등 내수와 수출 모두 호조세를 보이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
 - 일본은 '10년 소비와 수출이 (+)성장에 기여하였으나,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부(-)인 것으로 전망

한·중·일 내수 및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비교

(단위: %p)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	민간소비	2.5	2.7	0.7	0.1	2.2
	정부소비	0.9	0.8	0.6	0.7	0.6
	투자	1.0	1.2	△0.5	0.0	1.9
	순수출	0.3	0.7	1.1	3.1	△0.6
중국	민간소비	3.7	4.0	3.1	3.7	3.4
	정부소비	1.4	1.6	1.1	1.0	1.0
	투자	5.2	5.6	4.1	8.4	4.7
	순수출	2.0	2.5	0.8	△3.8	1.3
일본	민간소비	0.9	0.9	△0.4	△0.6	1.0
	정부소비	0.1	0.3	0.0	0.3	0.3
	투자	0.1	△0.3	△0.6	△3.1	△0.2
	순수출	0.9	1.1	0.2	△2.0	2.1

자료: EU

III. 한·중·일 3국의 교역 동향

1. 한·중·일의 수출입 특성

- 韓中日 3국 및 동아시아 지역의 전 세계 무역비중*은 중국의 대외무역**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확대

* 韓中日 (IMF) : (92)11.7% → (09)16.0% (韓 2.7, 中: 8.8, 日: 4.5) / 아세안+3 (IMF) : (92)16.8% → (09)22.2%, 아세안+6: (92)18.7% → (09)25.2%

** 중국은 對外수출 규모면에서 '92년 한국, '03년 일본, '07년 미국, '09년(12,015억달러) 독일을 추월하고 현재 세계 제1위의 수출국으로 부상(WTO)

- 韓中日 3국*과 「ASEAN+3」은 역내에서 주로 중간재를 교역하고, 최종재를 미국 및 EU에 수출하는 구조

* 3국 역내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 UN): (95)54.1 → (08)63.0 / 미국·EU 수출에서 최종재 비중(% UN): (95)53.4 → (08)63.2 / (95)54.9 → (08)59.3

- 한국*과 일본의 무역에서 역내, 특히 중국의 중요

성 증대

* 한국의 제1위 수출대상국은 '92~'02년에 미국이었으나 '03년부터 중국, 수입의 경우 '92~'06년에 일본, '07년부터 중국으로 변화 (IMF)

- 중국의 경우 북미와 유럽시장 수출의존도*가 높은 반면, 수입은 역내시장 의존도**가 현저히 높음

* 수출비중('92~'08, IMF): 북미(10.8 → 19.2%), 유럽(9.1 → 17.8%) 확대

** 수입비중('92~'08, IMF): 북미(13.2 → 8.4%), 유럽(13.5 → 11.6%) 감소

- 세계 서비스 교역에서 韓中日 및 동아시아 지역 비중은 상품교역에 비해 낮고, 서비스 교역에서 적자* 시현

* 서비스 교역 적자('09, 억달러, WTO): (韓)182 (中)288 (日)213 (ASEAN) 176

2. 한·중·일의 역내 교역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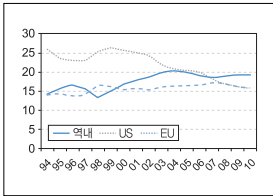
- 한국과 일본의 역내 교역비중은 확대 추세*인 반면, 중국의 역내 교역비중은 '9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

* 일본의 역내 수출비중은 09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역내 수출비중도 08년 최고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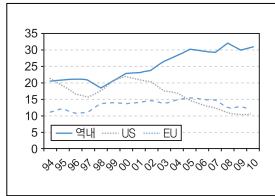
- 한국은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역내 교역비중이 30% 정도로 3국 중 역내 교역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
- 한국 및 일본의 역내 교역비중 확대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에 기인한 반면, 중국은 역외지역과의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역내 교역비중이 감소

한·중·일의 교역상대별 수출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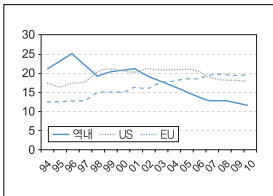
<한·중·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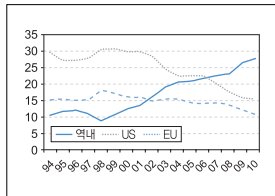
<한국>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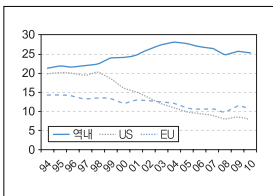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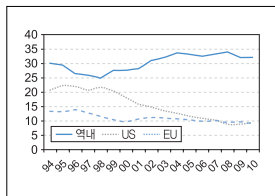
자료: IMF, 한국무역협회

한·중·일의 교역상대별 수입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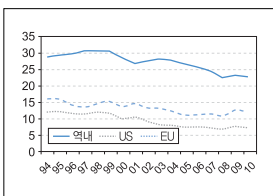
<한·중·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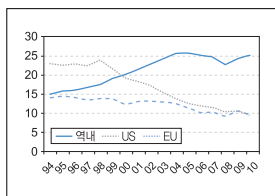
<한국>



<중국>



<일본>



자료: IMF, 한국무역협회

III. 평가 및 시사점

1. 한·중·일 3국간 역내 교역의 문제점

- **(양적 측면)** '08년 기준 3국간 역내 교역은 약 22%로 EU의 63.9%, 북미(NAFTA)의 39.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ADB)
- 제도적 교역 기반이 갖추어진 EU, NAFTA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3국간 역내 경제통합이 진전될 경우 교역증가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질적 측면)** 3국간 역내 수출이 중간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교역에서 최종 소비·투자재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
- 최종재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취약한 상황
- EU 및 미국에 대한 수출은 최종재(자본재, 소비재 등) 중심으로 EU와 미국의 경기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최종재 시장으로서 역내 교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2. 전망 및 시사점

1) 역내 무역·투자 활성화 논의의 진전

-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역내 수요증대를 통한 내수시장의 외연적 확대가 필요
- 미국 및 EU 시장의 수요가 제약된 상황에서 동북아 역내 시장의 중요성 증대
- 3국간 무역 흐름을 저해하는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경제영향 분석 등을 통해 한·중 FTA 협상개시/한·일 FTA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한·중·일 FTA는 '12년까지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

- 향후에도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에 있어서 對中의 존도는 높은 수준으로 지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역내시장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높을 것으로 전망

② 역내 금융협력 논의 구체화

- CMIM* 발효(10. 3월), 역내 경제감시기구(AMRO**) 설립 합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출범 등 역내 금융협력이 진전

* ASEAN+한·중·일 3국이 위기시 달러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1,200억달러 규모의 기금(한국은 192억달러(16%), 중·일은 각각 32% 부담)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 역내 경제상황 분석 감시기구

- '11년 상반기 중 역내경제감시기구(AMRO) 설립을 통해 아시아 금융안전망인 CMI다자화체제의 안착을 지원
- 아시아채권시장의 국경간 증권거래 확대를 위한 역내증권결제기구(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 설립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③ 교역에서 역내 통화 사용 논의 증대

- 금융위기 극복에서 중국은 통화스와프 협정체결, 위안화 무역결제 시행 등을 통하여 위안화의 국제화를 본격화
- 최근에는 위안화 유연성 확대 발표,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실시의 전 세계 확대(6. 22) 조치 등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 노력을 강화
- 최근 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으나, 역내통화 논의에 앞서, 우선 역내 여유자금이 최대한 역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

* '09년 일본 하토야마 총리는 공약사항으로 아시아 단일통화 도입을 제시

- 외화자산이 아시아 역내에 투자되고 수익을 창출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역내자본의 선순환 구조 정착 필요

④ 중국 경제에 대한 연구 및 대외조직 역량 강화

-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한·중·일 3국의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위상*이 지속 증가

* 세계경제에서 한중일의 GDP 비중(%), Global Insight): (09) 18.8 - (20) 24.8

- 특히,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 증가 및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동아시아 3국간 분업 구조 변화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할 필요
- 이에 맞추어 중국 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중국 경제 성장에 비례하는 대외조직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별첨 한·중·일의 상대별 교역비중 변화

(단위: %)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0'	
한 국																		
수출	역내	20.5	20.9	21.0	20.8	18.3	20.6	22.7	23.1	23.9	26.6	28.2	30.2	29.5	29.2	32.0	29.9	30.9
	US	21.3	19.2	16.6	15.8	17.4	20.6	22.0	20.8	20.3	17.4	17.0	14.6	13.3	12.4	10.8	10.4	10.7
	EU	11.2	12.2	10.7	11.1	13.8	14.1	13.7	14.1	14.6	13.7	14.9	15.4	14.9	14.8	12.4	12.8	11.6
수입	역내	30.1	29.5	26.5	26.1	25.0	27.6	27.8	28.3	31.1	32.2	33.7	33.3	32.5	33.4	34.1	32.1	32.1
	US	21.0	22.5	22.1	20.7	21.9	20.8	18.2	15.9	15.2	13.8	12.9	11.8	10.9	10.5	8.8	9.0	9.7
	EU	13.6	13.4	14.1	13.0	11.7	10.5	9.8	10.8	11.5	11.0	10.8	10.5	9.7	10.3	9.5	10.0	9.0
중 국																		
수출	역내	21.4	23.6	25.4	22.4	19.6	20.6	21.2	21.6	19.6	18.2	17.1	15.6	14.1	13.0	13.2	12.6	12.0
	US	17.7	16.6	17.7	17.9	20.7	21.5	20.9	20.4	21.5	21.1	21.1	21.4	21.0	19.1	18.4	18.4	18.2
	EU	12.8	12.9	13.1	13.1	15.3	15.5	15.3	16.6	16.1	17.9	18.1	18.9	18.8	19.9	20.1	19.7	19.9
수입	역내	29.1	29.7	30.0	30.9	30.9	30.8	28.8	27.1	27.8	28.4	27.9	26.9	26.0	24.9	22.7	23.4	23.0
	US	12.1	12.2	11.6	11.5	12.1	11.8	9.9	10.7	9.2	8.2	8.0	7.4	7.5	7.3	6.8	7.7	7.2
	EU	16.1	16.1	14.3	13.5	14.8	15.4	13.7	14.9	13.4	13.2	12.5	11.1	11.4	11.6	10.9	12.8	12.2
일 본																		
수출	역내	10.9	12.0	12.4	11.3	9.2	11.1	12.8	13.9	16.5	19.6	20.9	21.3	22.1	22.9	23.6	27.0	28.2
	US	30.0	27.5	27.5	28.1	30.9	31.1	30.2	30.4	28.8	24.9	22.7	22.9	22.8	20.4	17.8	16.1	15.8
	EU	15.5	15.9	15.4	15.6	18.5	17.8	16.4	16.5	15.3	16.0	15.8	14.6	14.5	14.7	14.0	12.5	11.2
수입	역내	15.0	15.8	16.1	16.7	17.5	19.1	20.0	21.5	22.9	24.4	25.6	25.8	25.2	24.9	22.7	24.3	25.2
	US	23.0	22.6	22.9	22.4	24.0	21.7	19.2	18.3	17.4	15.6	14.0	12.7	12.0	11.6	10.4	10.7	9.6
	EU	14.1	14.5	14.2	13.4	14.0	13.8	12.4	13.0	13.3	13.1	12.7	11.4	10.3	10.4	9.2	10.7	9.7
한·중·일																		
수출	역내	14.5	16.0	16.9	15.8	13.6	15.3	17.0	18.1	18.9	20.2	20.6	20.2	19.3	18.7	19.1	19.5	19.4
	US	26.2	23.8	23.3	23.3	25.7	26.6	26.0	25.4	24.7	22.1	21.0	20.8	20.3	18.4	17.0	16.4	16.1
	EU	14.3	14.6	14.0	14.2	16.8	16.5	15.6	16.1	15.5	16.3	16.6	16.7	16.7	17.5	17.1	16.5	16.1
수입	역내	21.4	21.9	21.6	22.1	22.5	24.0	24.2	24.7	26.3	27.5	28.1	27.7	26.9	26.5	24.8	25.7	25.4
	US	20.0	20.3	20.2	19.5	20.4	18.8	16.3	15.3	13.9	12.2	11.1	10.1	9.7	9.3	8.3	8.9	8.3
	EU	14.5	14.6	14.2	13.3	13.8	13.6	12.3	13.2	13.0	12.7	12.3	11.1	10.7	11.0	10.1	11.7	11.0

자료: IMF, 한국무역협회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

* 본 자료는 2010년 12월 1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10. 12. 19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구성된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 을 확정하였음

I. 추진 배경

- 과거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
 - '97년 외환위기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국내로 유입된 외자가 해외로 일시에 유출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
 - * 자본 유출 규모 : ('97. 11~'98. 3) △214억달러, ('08. 9~'08. 12) △695억달러
 - 이러한 급격한 자본유출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6월 단기외채 억제를 위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를 도입
 - * 선물환포지션 한도(전월말 자기자본 대비) : (국내은행) 50%, (외은) 250%
- 최근 선진국의 저금리 추세 및 양적 완화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급증으로 신흥국으로 자본유입이 가속화되는 상황
- G-20에서 신흥국의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제도 조치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

-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됨에 따라 '09년 이후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이 급격히 확대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 조치를 실시('10. 12월 세법 개정)

우리나라로의 자본 유입 현황(억달러)

	05	06	07	08	09	10. 1~3분기	10. 3분기말 잔액
국내증권투자	2	-113	73	-294	404	286	3,567
은행차입*	89	531	563	-235	108	49	1,852

* 은행차입은 은행외채(stock)의 증감 기준

- 이와 함께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경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시적·선제적인 거시건전성 확보장치로서 거시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II. 그간의 은행부과금(bank levy) 논의 동향

- G-20 피츠버그정상회의('09. 9)시 글로벌 위기로 발생한 손실 보전 및 위기 대응 재원을 금융권에서 분담하는 논의가 제기
- 금융기관의 과도한 자산 확대에 따른 위험요인을

억제하고 위기 대응 재원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금융 기관에 대한 부과금(bank levy) 부과 방안이 제안

- G-20 토론토정상회의('10. 6)시 은행부과금 도입에 관한 일반 원칙*에 합의하고 국별 상황에 맞게 각자 추진기로 합의

* ① 납세자 보호 ②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축소 ③ 신용흐름 보호 ④ 개별 국가의 상황 및 정책 등을 고려 ⑤ 공정경쟁 촉진에 기여

- **(국별 동향)** 英, 獨, 佛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국의 정책 수요에 맞는 은행부과금 도입 방안을 마련

- **(영국)** 은행부과금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발표(12. 9)하였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독일)** 은행부과금 도입을 위한 은행구조조정법안에 대해 대통령 서명 및 공포를 완료(12. 8)하였고 내년 1월부터 시행

* 스웨덴은 독일과 유사한 형태의 정리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09. 12월 은행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여 금년부터 기 시행

- **(프랑스)** 은행부과금이 포함된 재정법안에 대해 금년 내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국가별 은행부과금 개요

	영국	독일	프랑스
부과 대상 기관	은행 및 은행그룹	은행	은행
부과 대상	비예금부채	비예금부채	위험가중자산
부과율 (%)	0.05 ('11년), 0.075 ('12년 이후)	0.02~0.04	0.25
연간 부과 규모	약 25억 파운드	약 8억~15억 유로	약 5억 유로
활용 방안	재정 확충	정리기금	재정 확충

III. 제도 도입의 기본 방향

- 현재 은행부과금을 추진중인 주요 국가들은 금융 기관의 과도한 자산 확대를 억제하는 한편, 부과 재원은 재정 확충 또는 정리기금 설립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

-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상태하에서 지난 글로벌 위기시 직접적인 재정 손실이 없었고
-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할 제도*를 갖추고 있어 외국과 동일한 방식의 제도 도입 필요성은 적음

* 예금보험기금,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은행자본확충펀드 등

-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급격한 외화유출입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이 있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이러한 우리의 경제 여건 및 외환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거시건전성 제고, 외화부채의 구조개선, 위기 대응능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위하여 거시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

① (거시건전성 제고)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인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전성 제고 조치로 도입

* 거시건전성부담금은 비예금외화부채 잔액(stock)에 부과하는 건전성강화 조치로서 외환·증권 거래시마다 과세하는 거래세(토빈세)와 차이

② (외화부채의 구조개선) 과도한 외화차입을 줄이고 단기 외채의 장기화를 유도하여 외화부채의 질과량을 개선

* 총외채(억달러, 단기비중) : (08. 9월) 3,651(51.9) (09말) 3,454(43.2) (10. 9월) 3,660(40.1)

③ (위기대응능력 강화) 부담금을 적립하여 위기시 외화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위기대응능력 강화

IV. 세부 도입 방안

1. 부과 방안

- ① 부담금 명칭 : 거시건전성부담금(Macro-prudential Stability Levy)
-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거시건전성부담금」으로 명명
- ② 부담부과 대상 : 비예금 외화부채(전체외화부채-외화예수금)
- 우선 비예금 외화부채를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
 -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는 주로 대외 부문에서 자본유출입 급변동으로 인해 발생되어 온 점을 감안
 -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한 부과 문제는 추후 국제적 논의 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신중히 검토
 - 금융기관의 비예금 외화부채 잔액에 부과
 - * 비예금외화부채('10. 10월) : (국내은행) 1,689억달러, (외은지점) 1,046억달러
 - 외화예수금은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부과 시 이중 부담이 되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
 - 외환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 계정 등은 자금 차입 성격이 아니므로 제외
 -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파생상품 평가 손실, 정책자금 처리 계정 등
- ③ 부과 대상기관 : 모든 금융기관 (은행권에 우선 적용)
- 업권간 형평성, 우회 조달 방지 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기관으로 규정(법률)
 - 다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은행권에 부과(시행령)
 - * '10. 9월 기준 은행권의 비예금 외화부채가 전체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 외화부채의 대부분(96.2%)을 차지

④ 부과 요율

-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외화조달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 유출입 변동성이 매우 큰 단기외채의 축소 또는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간별로 부과 요율을 차등화
- 부과 요율은 정책도입 효과, 금융기관 부담 수준 및 전문가·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종합 감안하여 추후 결정

2. 징수·활용 방안

- ① 재원 적립 및 활용 : 위기시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
- 외화로 징수하여 외평기금에 적립
 - 새로운 기금 신설 없이 기존 외평기금에 구분계리하여 재원을 적립하고 기존 계정과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
 - 적립 재원은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용도로 활용
 - 평시에는 원칙적으로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외 안전자산 등에 운용
- ② 징수 및 운용 : 기획재정부(한은 위탁)
- 부담금의 주관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하되 한국은행에 부담금 징수 및 운용 업무를 위탁
- ③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인프라 확충
- 금융기관의 외화부채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도록 전산 보고시스템을 정비하고, 외환정보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하는 등 관련 인프라 확충

3. 시행 시기

-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
- 내년 상반기 중 법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하반기 시행 추진

V. 추진 계획

- 전문가 공청회,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예정)

세부 추진 일정

-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 '10. 12월~'11. 2월
 - 관계 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
 - 관련 전문가 공청회 개최
 -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11. 2월
- 법률 개정 후속조치 : '11. 상반기
 - 법률안 통과 직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
- '11년 하반기 시행(예정)

VI. 기대 효과

-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여 대외부문을 통한 충격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 역량을 강화
 -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과세 탄력세율 제도 도입과 더불어 부담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확충

- 구체적으로 과도한 차입 억제,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외채 구조 개선,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
 - ① (시스템 리스크 최소화) 과거 금융위기를 유발하였던 자본유출입 변동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
 - ②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제고) 외화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을 제고
 - ③ (외채구조의 장기화) 외채구조를 장기화하여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시 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최소화
 - ④ (위기대응능력 제고) 외화자금시장 경색시 부담금 적립금을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
 - ⑤ (거시안정성 제고)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우려가 해소되는 경우 국내 통화·외환정책 운영의 부담도 완화되어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에 기여

사업하기 편안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시행

- 「70개 법인과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2011년부터 본격 실시 -

* 본 자료는 2010년 12월 28일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발표한 「사업하기 편안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시행」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을 목표로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불성실납세자는 엄정하게 세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 특히, 성실한 납세자는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운영해 왔음
 - * 시범운영 대상 :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관내 15개 법인
- **(제도의 개요)** 법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성실히 납세할 수 있도록
 - 국세청과 법인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협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세무문제를 가감없이 공개, 적시에 해결하는 등 성실납세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임
- 시범운영 결과, 협약법인 대부분이 제도의 취지를 점차 이해하고 협력하는 등 인식 전환이 뚜렷하고
 -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신고하는 사항도 함께 해소함으로써 납세만족도 향상과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 경제단체 등의 요청과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 것임

참고

15개 법인 시범운영 결과, 세무쟁점에 대한 서면 답변 등으로 세무불확실성 해소 사례(예시)

- 법인세 과소신고(증액신고를 권장)
 - ☞ 관행적인 접대비 과소계상(판촉비 등으로 잘못 분류)
 - ☞ 감가상각비 과다계상 또는 각종 세액공제·감면 과다
- 법인세 과다신고(감액신고를 권장)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동 준비금 중복적용이 가능함에도, 세법지식 부족으로 미계상한 준비금을 추가 손금산입하도록 자문

I. 내년부터 참여하는 법인

- 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의 131개 법인이 성실납세이행협약체결을 신청하였으며
- 성실한 협약 이행을 담보할 일정한 자격요건 심사와 지역·업종별 분포, 가용 종사인력 등을 감안, 70개 법인을 선정
- 12. 27(월)과 12. 28(화) 양일간에 걸쳐 70개 법인의 대표와 6개 지방청 세원분석국장이 협약서에 서명함(협약기간 3년)

협약체결 법인 현황

구분	내국·외국계별		상장구분		업종별				
	내국	외투	상장	비상장	제조	판매	서비스	금융	기타
법인수	60	10	31	39	51	8	4	3	4

지방국세청별 체결법인 현황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70개	23	21	6	5	5	10

II. 제도의 주요 특징

- 제도의 체계적 집행을 위해 마련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사무처리규정」을 행정예고('10. 12. 10~12. 31.)를 거쳐 '11.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법인세·부가세·원천세 등)을 협약 체결하여 세무쟁점 해결이 가능하며
 - * 그 외에 법인의 세무상 애로 또는 제도개선을 건의받아 세정에 반영 가능
- 성실한 협약 이행과 주요 쟁점 해소, 이를 신고에 반영하는 등 성실납세 인정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전담직원의 서면답변에 따라 협약법인이 신고 이행시에는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이에 반한 처분은 불가함(불이익 변경금지, 신의·성실원칙)
- 협약개시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거연도분 세무쟁점은 법인 요청시 해결 가능함
- 협약체결 법인에 대한 경정청구·과세자료 처리 등 통상적인 세원관리는 관할 납세지에 관계없이 전담직원이 일괄 처리
- 특히, 세무쟁점 등을 납세현장에서 충분히 논의하게 되므로 세법해석사전답변·질의회신 제도 이상

으로 적극적인 세무문제 해결 가능

- 협약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조세포탈 등 발견 시 협약 파기

III. 기대 효과

- 협약체결 법인은 어려운 세무문제, 관행적으로 잘못 신고한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해소함으로써 추후 가산세나 불복비용 등이 대폭 절감되고
- 법인 CEO는 세무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투자·경영 의사결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임

IV. 향후 추진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운영으로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완전한 자율신고제로 전환하여 납세자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성실하게 납세하는 법인이 그에 상응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할 것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2011년 상반기 중 84조원 집행, 안정적 경제성장 지원 -

* 본 자료는 2011년 1월 4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발표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행정안전부는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조기집행의 목표는 11년도 상반기 중 대상사업*의 57.4%인 84조원이다.

* 대상사업 : 11년 지방예산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146조원

- 11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및 내수 증가세에 따라 5% 수준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으나,
- 연도중에는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낮은 상저하고*의 성장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변동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지출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한국은행 전망 : 상반기3.8%, 하반기5.0%

금융연구원 전망 : 상반기3.9%, 하반기4.8%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에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되, 낭비요인은 극소화하고 파급효과는 극대화하기 위해,
- 첫째,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일자리·서민생활안정·SOC사업*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 일자리 사업 : 고용서비스 지원, 실업·재직자 훈련, 사회적

서비스일자리 등

* 서민생활안정 : 긴급 경영안정, 소상공인 지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

* SOC사업 : 도로공사 등 각종 사회간접시설

- 둘째, 최종수혜자인 지역주민, 소·상공인, 기업체 등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행 중심의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셋째,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집행 실태점검반」을 운영하고,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활성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내실 있는 집행을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 한편, 자치단체가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 첫째,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차입을 하는 경우 이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1년도에도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보전하되 그 규모를 지난해 보다 다소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 2010년도 2% 보전

- 둘째, 지방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최소

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최대한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셋째, 조기집행 실적은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년도보다 확대하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은 “조기집행의 정책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함께 지방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재정통계 |



- OECD 국가의 GDP 대비 소득과세 비중
-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소득과세 비중
- OECD 국가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
-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
- OECD 국가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
-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1. OECD 국가의 GDP 대비 소득과세 비중

구 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Australia	10.7	11.7	14.5	15.0	15.5	16.3	15.9
Austria	8.6	8.5	9.6	10.4	10.8	10.1	10.9
Belgium	8.6	10.7	15.6	16.9	17.9	15.5	16.6
Canada	9.9	13.8	15.1	14.4	14.4	17.4	16.5
Czech Republic	-	-	-	-	-	-	9.4
Denmark	14.0	20	22.6	23.8	26.6	28.0	30.2
Finland	12.6	14.0	15.8	14.0	16.2	17.1	16.5
France	5.4	5.8	5.6	6.7	6.8	6.7	7.0
Germany	10.7	10.2	11.8	12.8	12.5	11.3	11.3
Greece	1.6	2.4	2.6	4.2	4.5	5.2	6.4
Hungary	-	-	-	-	-	-	8.7
Iceland	5.6	5.9	6.8	7.6	6.4	9.2	10.6
Ireland	6.4	7.7	8.6	11.3	12.0	12.2	12.7
Italy	4.6	4.5	5.4	9.3	12.4	13.8	14.2
Japan	8.0	9.4	9.3	11.7	12.5	14.6	10.3
Korea	-	-	3.5	4.2	4.1	6.3	5.9
Luxembourg	9.9	10.1	14.1	15.4	17.0	14.0	14.6
Mexico	-	-	-	4.4	3.4	4.3	3.8
Netherlands	11.7	11.9	14.2	14.1	11.2	13.8	10.9
New Zealand	14.6	16.3	19.1	21.5	21.7	22.3	22.4
Norway	12.9	13.3	13.5	17.7	16.9	14.4	14.3
Poland	-	-	-	-	-	-	11.1
Portugal	3.9	4.4	3.4	4.5	6.5	7.1	7.9
Slovak Republic	-	-	-	-	-	-	-
Spain	3.6	3.2	4.1	5.9	6.8	10.0	9.4
Sweden	18.3	20.5	20.8	20.2	20.0	21.7	18.6
Switzerland	7.2	8.5	11.4	11.2	11.7	12.0	11.9
Turkey	3.1	3.1	5.0	6.9	4.3	5.0	4.8
United Kingdom	11.3	14.8	15.6	13.1	14.3	14.0	12.6
United States	11.9	13.4	11.8	13.2	11.6	12.6	12.8
EU 19	8.7	9.9	11.3	12.2	13.0	13.4	12.7
EU 15	8.7	9.9	11.3	12.2	13.0	13.4	13.3
OECD Europe	8.4	9.4	10.9	11.9	12.4	12.7	12.3
OECD Total	9.0	10.2	11.2	11.9	12.2	12.9	12.4
OECD America	10.9	13.6	13.4	10.7	9.8	11.4	11.0
OECD Pacific	11.1	12.4	11.6	13.1	13.5	14.9	13.7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8.1	16.7	17.2	17.3	18.2	18.2	18.1	18.4	-
12.3	14.1	13.0	12.8	12.6	12.0	12.1	12.7	13.2
17.3	17.5	17.3	16.9	16.9	17.1	16.7	16.5	16.7
17.8	16.7	15.4	15.4	15.7	15.8	16.4	16.6	15.9
8.0	8.6	9.0	9.5	9.5	9.1	9.1	9.4	8.5
29.8	28.8	28.6	28.8	29.7	31.2	29.9	29.0	29.3
20.4	18.2	18.1	17.0	16.8	16.8	16.6	16.9	16.7
11.0	11.2	10.4	10.0	10.2	10.3	10.7	10.4	10.4
11.2	10.4	9.9	9.7	9.5	9.8	10.8	11.3	11.6
9.3	8.0	8.1	7.4	7.5	8.0	7.4	7.5	7.3
9.2	9.8	10.0	9.3	8.9	8.8	9.1	10.0	10.4
14.8	15.3	15.3	16.0	16.1	17.5	18.3	18.5	17.8
13.2	12.2	11.1	11.3	11.8	11.7	12.5	12.1	10.6
14.0	14.3	13.4	12.9	12.9	12.9	13.9	14.7	14.9
9.4	9.1	8.0	7.9	8.4	9.3	9.9	10.3	9.7
6.5	6.1	5.9	6.7	6.5	7.0	7.4	8.4	8.2
14.1	14.3	14.4	13.9	12.3	12.9	12.5	12.8	13.7
4.6	4.8	4.8	4.6	4.2	4.4	4.6	5.0	5.2
10.0	10.1	10.2	9.4	9.2	10.7	10.6	10.9	-
20.2	19.5	20.5	20.4	21.6	23.6	22.7	22.5	20.6
19.2	19.3	18.8	18.5	20.1	21.4	22.0	21.0	21.2
6.8	6.4	6.3	6.0	5.9	6.4	7.0	8.0	-
9.6	9.1	8.9	8.4	8.3	8.2	8.5	9.4	9.6
7.0	7.1	6.6	6.7	5.7	5.6	5.7	5.8	6.1
9.7	9.5	9.9	9.6	9.7	10.4	11.1	12.3	10.1
21.2	18.9	17.1	17.8	18.6	19.4	19.3	18.7	17.1
13.2	12.4	12.9	12.5	12.5	13.0	13.4	13.2	13.9
7.1	7.5	6.1	6.1	5.3	5.3	5.3	5.6	5.7
14.2	14.3	13.2	12.6	12.8	13.7	14.5	14.3	14.2
15.1	14.1	11.7	11.2	11.4	12.9	13.6	13.9	12.6
13.1	12.8	12.4	12.1	12.0	12.4	12.5	12.8	-
14.5	14.1	13.6	13.2	13.2	13.7	13.8	14.0	-
13.2	12.9	12.5	12.3	12.3	12.7	12.9	13.1	-
13.1	12.8	12.4	12.2	12.3	12.8	13.0	13.2	-
12.5	11.8	10.6	10.4	10.4	11.0	11.5	11.8	11.2
13.5	12.9	12.9	13.1	13.7	14.5	14.5	14.9	-

주: 단순평균 기준
 자료: OECD, Data extracted from OECD, Stat, 2010

2.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소득과세 비중

구 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Australia	50.7	54.3	56.0	56.1	54.6	57.1	55.4
Austria	25.5	25.2	26.1	26.7	26.4	25.5	26.3
Belgium	27.6	31.6	39.5	41.0	40.5	36.8	38.0
Canada	38.6	44.6	47.2	46.6	44.1	48.6	46.4
Czech Republic	-	-	-	-	-	-	25.0
Denmark	46.8	52.0	59.0	55.4	57.7	60.2	61.8
Finland	41.4	44.6	43.3	39.1	40.8	39.2	36.1
France	15.9	17.1	15.9	16.8	16.0	16.1	16.2
Germany	33.8	32.3	34.4	35.1	34.8	32.4	30.3
Greece	9.1	11.8	13.3	19.4	17.5	19.9	22.3
Hungary	-	-	-	-	-	-	21.0
Iceland	21.4	21.4	22.8	25.6	22.7	29.7	34.1
Ireland	25.7	27.1	30.0	36.5	34.5	36.9	39.1
Italy	17.8	17.4	21.5	31.1	36.8	36.5	35.3
Japan	43.9	47.7	44.6	46.1	45.8	50.2	38.3
Korea	-	-	24.3	25.5	26.4	34.6	31.9
Luxembourg	35.9	43.2	43.1	43.3	43.3	39.4	39.3
Mexico	-	-	-	29.8	22.2	27.1	24.9
Netherlands	35.8	33.4	34.8	32.8	26.3	32.2	26.3
New Zealand	60.5	62.4	66.5	69.8	69.4	59.6	61.3
Norway	43.4	38.5	34.4	41.8	39.7	35.2	35.1
Poland	-	-	-	-	-	-	30.6
Portugal	24.6	24.0	17.5	19.7	25.8	25.7	24.7
Slovak Republic	-	-	-	-	-	-	-
Spain	24.5	20.2	22.0	26.0	24.8	30.6	29.2
Sweden	54.9	54.2	50.5	43.5	42.2	41.6	39.3
Switzerland	41.1	43.9	47.6	45.3	46.0	46.4	43.0
Turkey	29.6	33.4	42.3	51.8	37.0	33.5	28.3
United Kingdom	37.0	40.4	44.8	37.8	38.6	39.3	36.9
United States	48.1	49.8	46.0	49.8	45.4	46.0	46.1
EU 19	30.4	31.6	33.0	33.6	33.7	34.2	32.1
EU 15	30.4	31.6	33.0	33.6	33.7	34.2	33.4
OECD Europe	31.2	32.2	33.8	35.2	34.3	34.6	32.7
OECD Total	34.7	36.3	37.1	38.2	36.9	37.7	35.3
OECD America	43.3	47.2	46.6	42.1	37.2	40.6	39.1
OECD Pacific	51.7	54.8	47.8	49.4	49.0	50.4	46.7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58.0	56.5	56.4	56.6	58.4	59.1	59.1	59.8	-
28.4	31.2	29.5	29.3	29.1	28.3	28.9	30.0	30.7
38.4	39.0	38.4	37.9	37.7	38.2	37.7	37.5	37.8
50.1	47.8	45.8	45.6	46.7	47.4	48.9	49.8	49.5
22.7	24.1	24.7	25.3	25.1	24.1	24.5	25.1	23.3
60.3	59.4	59.7	60.1	60.5	61.3	60.2	59.6	60.6
43.1	40.8	40.6	38.7	38.6	38.3	38.1	39.3	39.0
24.9	25.3	23.9	23.2	23.4	23.5	24.3	23.8	24.1
30.1	28.8	28.0	27.4	27.3	28.2	30.4	31.2	31.9
27.3	24.4	24.1	23.1	24.1	25.3	23.8	23.4	23.4
24.3	25.6	26.4	24.7	23.6	23.6	24.6	25.2	25.8
39.9	43.3	43.3	43.5	42.5	43.2	44.1	45.4	49.5
42.3	41.8	39.6	39.8	39.6	38.5	39.5	39.3	37.5
33.1	34.1	32.4	30.9	31.4	31.5	32.9	33.7	34.6
34.8	33.4	30.6	30.6	32.0	33.8	35.4	36.4	55.4
28.8	26.4	25.5	28.0	27.9	29.3	29.6	31.8	31.0
36.1	36.1	36.6	36.4	33.1	34.4	34.8	35.0	35.9
27.3	28.0	28.9	26.5	24.6	24.1	25.1	27.7	25.6
25.2	26.5	27.1	25.5	24.6	27.7	27.3	29.1	-
60.0	59.1	59.8	59.6	61.1	63.0	62.1	62.9	59.8
45.0	45.0	43.7	43.8	46.4	49.2	50.1	48.1	50.4
20.9	19.5	19.2	18.5	18.6	19.5	20.6	23.1	-
28.0	26.9	25.9	24.2	24.4	23.5	24.0	25.9	26.3
20.5	21.3	20.0	20.3	18.0	17.9	19.4	19.9	20.8
28.3	28.2	29.0	28.0	28.0	29.2	30.4	33.1	30.5
40.9	37.9	35.7	36.8	38.1	39.1	39.4	38.7	36.3
43.9	42.2	43.2	42.9	43.4	44.5	45.7	45.9	47.1
29.5	28.9	24.8	23.7	22.1	21.8	21.6	23.7	24.2
39.1	39.6	38.1	36.7	36.7	38.4	39.7	39.5	39.9
50.7	48.9	44.3	43.3	43.7	46.8	48.4	49.0	46.8
32.3	32.1	31.5	30.9	30.6	31.1	31.6	32.2	-
35.0	34.7	33.9	33.2	33.1	33.7	34.1	34.6	-
33.6	33.5	32.8	32.2	32.0	32.6	33.1	33.7	-
36.1	35.7	34.8	34.4	34.4	35.1	35.7	36.4	-
42.7	41.5	39.7	38.4	38.3	39.4	40.8	42.2	40.6
45.4	43.9	43.1	43.7	44.9	46.3	46.6	47.7	-

주: 단순평균 기준
 자료: OECD, Data extracted from OECD, Stat, 2010

3. OECD 국가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

구 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Australia	7.2	8.0	11.3	11.7	12.8	12.3	11.7
Austria	6.8	7.0	7.9	9.0	9.4	8.3	8.6
Belgium	6.4	8.5	12.9	15.0	15.8	13.4	14.2
Canada	5.8	10.0	10.5	10.6	11.5	14.7	13.4
Czech Republic	-	-	-	-	-	-	4.8
Denmark	12.7	18.9	21.4	22.5	23.4	24.8	26.2
Finland	10.1	12.4	14.1	12.7	14.8	15.1	14.2
France	3.6	3.7	3.7	4.7	4.9	4.5	4.9
Germany	8.2	8.4	10.3	10.8	10.3	9.6	10.2
Greece	1.2	1.9	1.7	3.2	3.5	3.7	3.5
Hungary	-	-	-	-	-	-	6.7
Iceland	5.1	5.4	6.0	6.8	5.5	8.3	9.7
Ireland	4.2	5.2	7.2	9.9	10.8	10.6	10.0
Italy	2.8	2.8	3.8	6.9	9.0	9.9	10.4
Japan	3.9	4.2	5.0	6.2	6.8	8.1	6.0
Korea	-	-	1.2	1.9	2.1	3.8	3.6
Luxembourg	6.9	5.6	9.0	9.6	10.1	8.4	8.0
Mexico	-	-	-	-	-	-	-
Netherlands	9.1	9.5	11.0	11.3	8.2	10.6	7.8
New Zealand	9.5	11.5	15.6	19.0	18.9	17.9	16.5
Norway	11.7	12.1	12.4	12.1	9.6	10.7	10.6
Poland	-	-	-	-	-	-	8.3
Portugal	-	-	-	-	-	4.4	5.6
Slovak Republic	-	-	-	-	-	-	-
Spain	2.1	1.8	2.7	4.6	5.4	7.1	7.6
Sweden	16.2	18.8	19.0	19.0	18.3	20.1	15.9
Switzerland	5.8	6.9	9.4	9.6	10.0	10.0	10.1
Turkey	2.6	2.5	3.9	5.8	3.2	4.0	3.6
United Kingdom	10.1	11.6	14.0	10.2	9.6	10.4	9.8
United States	7.8	9.9	8.9	10.3	9.7	10.1	10.0
EU 19	7.2	8.3	9.9	10.7	11.0	10.7	9.8
EU 15	7.2	8.3	9.9	10.7	11.0	10.7	10.5
OECD Europe	7.0	7.9	9.5	10.2	10.1	10.2	9.6
OECD Total	7.0	8.1	9.3	10.1	10.1	10.4	9.7
OECD America	6.8	9.9	9.7	10.4	10.6	12.4	11.7
OECD Pacific	6.9	7.9	8.3	9.7	10.2	10.5	9.4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1.8	12.2	12.1	12.2	12.5	12.2	11.5	11.3	-
9.6	10.3	10.0	10.0	9.8	9.3	9.3	9.5	9.9
14.0	14.3	14.2	14.0	13.7	13.6	13.0	12.8	13.4
13.1	13.2	11.9	11.8	11.8	11.9	12.1	12.4	12.0
4.6	4.5	4.7	4.9	4.8	4.6	4.2	4.3	4.0
25.6	25.9	25.6	25.5	24.9	24.9	24.8	25.1	25.5
14.5	14.0	13.9	13.7	13.3	13.5	13.2	13.0	13.2
8.0	7.8	7.5	7.5	7.4	7.9	7.7	7.4	7.5
9.4	9.8	8.9	8.5	7.9	8.1	8.7	9.1	9.8
5.0	4.5	4.6	4.4	4.4	4.6	4.6	4.7	-
7.1	7.4	7.7	7.1	6.7	6.7	6.8	7.2	7.7
12.9	13.6	13.6	13.9	13.9	14.2	14.0	13.8	13.1
9.5	8.6	7.4	7.6	8.3	8.3	8.7	8.7	7.9
10.5	10.7	10.5	10.5	10.4	10.4	10.7	11.1	11.6
5.7	5.6	4.8	4.5	4.7	5.0	5.2	5.5	5.7
3.3	3.2	3.0	3.0	3.2	3.2	3.8	4.4	4.0
7.2	7.0	6.4	6.5	6.6	7.1	7.5	7.4	8.3
-	-	-	-	-	-	-	-	-
6.0	6.2	6.9	6.6	6.1	6.9	7.3	7.7	-
14.5	14.4	14.8	14.3	14.5	15.4	14.9	15.0	14.4
10.3	10.4	10.7	10.5	10.3	9.7	9.1	9.6	9.1
4.4	4.5	4.3	4.2	3.7	3.9	4.6	5.3	-
5.7	5.7	5.5	5.5	5.3	5.4	5.5	5.7	5.8
3.4	3.5	3.3	3.2	2.7	2.6	2.5	2.5	2.7
6.4	6.5	6.5	6.3	6.1	6.4	6.8	7.4	7.0
17.2	16.0	14.8	15.3	15.5	15.6	15.6	14.9	13.8
10.5	9.4	10.3	10.0	10.0	10.4	10.4	10.2	10.7
5.4	5.8	4.3	4.1	3.6	3.6	3.8	4.0	3.9
10.7	10.9	10.4	9.9	10.0	10.4	10.6	10.9	10.7
12.5	12.2	10.0	9.1	8.9	9.7	10.2	10.8	10.2
9.4	9.4	9.1	9.0	8.8	9.0	9.1	9.2	-
10.6	10.6	10.2	10.1	10.0	10.2	10.3	10.4	-
9.5	9.5	9.2	9.1	8.9	9.1	9.1	9.2	-
9.6	9.6	9.3	9.1	9.0	9.2	9.2	9.4	-
12.8	12.7	10.9	10.4	10.3	10.8	11.2	11.6	11.1
8.8	8.9	8.7	8.5	8.7	9.0	8.8	9.1	-

주: 단순평균 기준
 자료: OECD, Data extracted from OECD, Stat, 2010

4.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

구 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Australia	34.4	37.3	43.6	44.0	45.2	43.0	40.6
Austria	20.0	20.7	21.6	23.2	22.9	21.0	20.9
Belgium	20.5	25.1	32.6	36.3	35.6	31.9	32.6
Canada	22.6	32.4	32.8	34.1	35.2	40.8	37.5
Czech Republic	-	-	-	-	-	-	12.8
Denmark	42.3	49.4	55.8	52.2	50.7	53.3	53.8
Finland	33.3	39.2	38.5	35.7	37.4	34.7	31.1
France	10.6	10.7	10.6	11.6	11.5	10.7	11.4
Germany	26.0	26.7	30.0	29.6	28.7	27.6	27.5
Greece	6.8	9.7	8.9	14.9	13.9	14.1	12.0
Hungary	-	-	-	-	-	-	16.1
Iceland	19.5	19.9	20.2	23.1	19.5	26.9	31.1
Ireland	16.7	18.3	25.2	32.0	31.3	31.9	30.7
Italy	10.9	10.9	15.2	23.1	26.7	26.3	26.0
Japan	21.7	21.5	23.9	24.3	24.7	27.8	22.4
Korea	-	-	8.5	11.5	13.4	21.1	19.2
Luxembourg	24.9	23.9	27.5	27.1	25.6	23.5	21.7
Mexico	-	-	-	-	-	-	-
Netherlands	27.7	26.8	27.1	26.3	19.4	24.7	18.9
New Zealand	39.4	44.0	54.3	61.6	60.5	48.0	45.0
Norway	39.6	35.2	31.5	28.5	22.5	26.2	25.9
Poland	-	-	-	-	-	-	22.9
Portugal	-	-	-	-	-	15.9	17.3
Slovak Republic	-	-	-	-	-	-	-
Spain	14.3	11.5	14.5	20.4	19.4	21.7	23.6
Sweden	48.7	49.8	46.1	41.0	38.7	38.5	33.5
Switzerland	33.4	35.7	39.2	38.9	39.2	38.8	36.3
Turkey	24.8	27.0	32.9	43.5	27.5	26.8	21.6
United Kingdom	33.1	31.5	40.0	29.4	26.0	29.4	28.8
United States	31.7	36.6	34.6	39.1	37.8	37.1	35.8
EU 19	24	25.3	28.1	28.8	27.7	27.0	24.5
EU 15	24	25.3	28.1	28.8	27.7	27.0	26.0
OECD Europe	25.2	26.2	28.7	29.8	27.6	27.6	25.3
OECD Total	26.2	28.0	29.8	31.3	29.7	29.7	27.0
OECD America	27.1	34.5	33.7	36.6	36.5	39.0	36.7
OECD Pacific	31.8	34.3	32.6	35.3	36.0	35.0	31.8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37.8	41.3	39.7	39.9	40.2	39.7	37.4	36.7	-
22.1	22.7	22.7	22.9	22.5	22.0	22.3	22.5	23.1
31.2	31.9	31.6	31.4	30.6	30.5	29.3	29.3	30.2
36.8	37.8	35.2	34.9	35.0	35.6	36.1	37.4	37.3
12.9	12.7	12.8	13.1	12.7	12.2	11.5	11.6	11.0
51.8	53.5	53.6	53.2	50.8	49.0	50.0	51.7	52.8
30.6	31.5	31.2	31.0	30.5	30.7	30.3	30.3	30.9
18.0	17.7	17.3	17.5	17.0	18.0	17.5	17.0	17.4
25.3	27.1	25.1	23.9	22.8	23.3	24.5	25.1	26.8
14.7	13.8	13.6	13.6	14.3	14.6	14.8	14.7	-
18.6	19.6	20.3	18.9	17.8	18.0	18.3	18.2	19.3
34.8	38.4	38.6	37.8	36.5	34.8	33.7	33.9	36.3
30.4	29.6	26.4	26.8	27.6	27.3	27.6	28.4	27.8
24.8	25.5	25.4	25.1	25.4	25.5	25.4	25.6	26.8
21.1	20.5	18.4	17.5	17.8	18.3	18.5	19.6	32.6
14.6	14.1	12.8	12.7	13.6	13.3	15.2	16.7	15.0
18.3	17.7	16.2	17.2	17.8	19.0	21.0	20.1	21.6
-	-	-	-	-	-	-	-	-
15.1	16.2	18.3	17.9	16.4	18.0	18.8	20.4	-
43.1	43.7	43.1	41.9	41.0	41.1	40.7	42.1	41.9
24.1	24.3	24.8	24.9	23.7	22.2	20.7	22.1	21.7
13.5	13.8	13.0	13.0	11.5	11.9	13.5	15.2	-
16.7	16.9	16.0	15.9	15.7	15.6	15.5	15.8	16.0
9.9	10.6	9.8	9.7	8.5	8.4	8.5	8.6	9.4
18.6	19.3	19.1	18.5	17.7	17.9	18.6	19.8	21.3
33.3	32.1	30.9	31.7	31.8	31.6	31.9	30.9	29.3
34.9	32.0	34.4	34.3	34.8	35.7	35.6	35.3	36.4
22.2	22.0	17.6	15.7	14.9	14.7	15.6	17.0	16.7
29.3	30.1	29.9	28.8	28.6	29.1	29.0	30.1	29.9
41.9	42.1	37.7	35.0	34.0	35.1	36.2	38.1	37.9
22.9	23.3	22.8	22.6	22.1	22.2	22.5	22.9	-
25.3	25.7	25.2	25.0	24.6	24.8	25.1	25.5	-
24.0	24.3	23.9	23.6	23.0	23.0	23.2	23.6	-
25.7	26.2	25.4	25.0	24.5	24.6	24.8	25.3	-
39.4	40.0	36.4	34.9	34.5	35.3	36.2	37.7	37.6
29.1	29.9	28.5	28.0	28.1	28.1	27.9	28.8	-

주: 단순평균 기준

자료: OECD, Data extracted from OECD, Stat, 2010

5. OECD 국가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

구 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Australia	3.4	3.7	3.2	3.2	2.7	4.0	4.2
Austria	1.8	1.5	1.6	1.4	1.4	1.4	1.4
Belgium	1.9	2.2	2.7	1.9	2.2	2.0	2.3
Canada	3.8	3.5	4.3	3.6	2.7	2.5	2.9
Czech Republic	-	-	-	-	-	-	4.6
Denmark	1.4	1.0	1.2	1.4	2.2	1.7	2.3
Finland	2.5	1.7	1.7	1.2	1.4	2.0	2.3
France	1.8	2.1	1.8	2.1	1.9	2.2	2.1
Germany	2.5	1.8	1.5	2.0	2.2	1.7	1.0
Greece	0.3	0.3	0.7	0.8	0.7	1.4	1.8
Hungary	-	-	-	-	-	-	1.8
Iceland	0.5	0.6	0.8	0.7	0.9	0.9	0.9
Ireland	2.3	2.5	1.4	1.4	1.1	1.6	2.7
Italy	1.8	1.7	1.6	2.3	3.1	3.8	3.5
Japan	4.0	5.2	4.3	5.5	5.7	6.5	4.3
Korea	-	-	1.3	1.8	1.8	2.4	2.3
Luxembourg	3.1	4.5	5.1	5.8	7.0	5.6	6.6
Mexico	-	-	-	-	-	-	-
Netherlands	2.6	2.4	3.1	2.8	3.0	3.2	3.1
New Zealand	5.0	4.7	3.4	2.4	2.6	2.4	4.4
Norway	1.1	1.1	1.1	5.7	7.3	3.7	3.8
Poland	-	-	-	-	-	-	2.8
Portugal	-	-	-	-	-	2.2	2.4
Slovak Republic	-	-	-	-	-	-	-
Spain	1.4	1.3	1.3	1.1	1.4	2.9	1.7
Sweden	2.0	1.7	1.8	1.1	1.7	1.6	2.8
Switzerland	1.3	1.6	2.0	1.6	1.7	2.0	1.8
Turkey	0.5	0.6	0.6	0.6	1.1	1.0	1.1
United Kingdom	1.3	3.2	2.2	2.9	4.7	3.5	2.8
United States	4.0	3.6	2.9	2.8	1.9	2.4	2.9
EU 19	1.9	2.0	2.0	2.0	2.4	2.5	2.7
EU 15	1.9	2.0	2.0	2.0	2.4	2.5	2.6
OECD Europe	1.7	1.8	1.8	2.0	2.5	2.3	2.5
OECD Total	2.2	2.3	2.2	2.3	2.6	2.6	2.7
OECD America	3.9	3.5	3.6	3.2	2.3	2.5	2.9
OECD Pacific	4.2	4.5	3.0	3.2	3.2	3.9	3.8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3	4.5	5.1	5.1	5.7	6.0	6.7	7.1	-
2.0	3.1	2.2	2.2	2.3	2.2	2.2	2.4	2.5
3.2	3.1	3.0	2.9	3.2	3.5	3.7	3.6	3.3
4.4	3.1	3.2	3.3	3.6	3.5	3.8	3.7	3.4
3.5	4.1	4.3	4.6	4.7	4.5	4.8	5.0	4.5
3.3	2.8	2.9	2.9	3.1	3.9	4.3	3.6	3.4
5.9	4.2	4.2	3.4	3.5	3.3	3.4	3.9	3.5
3.1	3.4	2.9	2.5	2.8	2.4	3.0	3.0	2.9
1.8	0.6	1.0	1.3	1.6	1.7	2.1	2.2	1.9
4.1	3.4	3.4	2.9	3.0	3.2	2.7	2.6	-
2.2	2.3	2.3	2.2	2.2	2.1	2.3	2.8	2.6
1.2	1.0	0.9	1.2	1.0	2.0	2.4	2.5	2.0
3.7	3.5	3.7	3.7	3.6	3.4	3.8	3.4	2.7
2.9	3.5	3.1	2.8	2.8	2.8	3.4	3.8	3.7
3.7	3.5	3.2	3.4	3.7	4.3	4.7	4.8	4.0
3.2	2.8	3.0	3.7	3.3	3.8	3.6	4.0	4.2
7.0	7.3	8.0	7.3	5.7	5.8	5.0	5.4	5.5
-	-	-	-	-	-	-	-	-
4.0	3.9	3.3	2.8	3.1	3.8	3.3	3.3	-
4.2	3.8	4.3	4.6	5.5	6.3	5.8	5.1	3.8
8.9	8.9	8.1	8.0	9.9	11.8	13.0	11.3	12.1
2.4	1.9	2.0	1.8	2.2	2.5	2.4	2.7	-
3.9	3.4	3.4	2.9	3.0	2.8	3.0	3.7	3.8
2.6	2.6	2.5	2.8	2.6	2.7	2.9	3.0	3.0
3.1	2.8	3.2	3.0	3.4	3.8	4.1	4.6	2.7
3.9	2.9	2.3	2.5	3.1	3.7	3.7	3.8	3.3
2.7	3.0	2.6	2.5	2.5	2.6	3.0	3.1	3.1
1.8	1.8	1.8	2.1	1.7	1.7	1.5	1.6	1.8
3.5	3.5	2.8	2.7	2.8	3.3	3.9	3.4	3.5
2.6	1.9	1.8	2.1	2.5	3.2	3.4	3.1	2.4
3.5	3.3	3.2	3.0	3.1	3.2	3.4	3.5	-
3.7	3.4	3.3	3.0	3.1	3.3	3.4	3.5	-
3.5	3.3	3.2	3.1	3.2	3.5	3.6	3.7	-
3.6	3.3	3.3	3.2	3.4	3.7	3.9	3.9	-
3.5	2.5	2.5	2.7	3.0	3.4	3.6	3.4	2.9
4.3	3.6	3.9	4.2	4.5	5.1	5.2	5.2	-

주: 단순평균 기준
 자료: OECD, Data extracted from OECD, Stat, 2010

6.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구 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Australia	16.3	17.0	12.4	12.2	9.4	14.1	14.8
Austria	5.4	4.4	4.3	3.5	3.5	3.6	3.3
Belgium	6.2	6.5	6.9	4.7	4.9	4.8	5.4
Canada	14.9	11.3	13.6	11.6	8.2	7.0	8.2
Czech Republic	-	-	-	-	-	-	12.2
Denmark	4.5	2.7	3.2	3.2	4.8	3.7	4.8
Finland	8.1	5.3	4.7	3.4	3.4	4.5	5.0
France	5.3	6.3	5.2	5.1	4.5	5.3	4.8
Germany	7.8	5.7	4.4	5.5	6.1	4.8	2.8
Greece	1.8	1.6	3.4	3.8	2.7	5.5	6.3
Hungary	-	-	-	-	-	-	4.5
Iceland	1.8	2.0	2.6	2.5	3.1	2.8	3.0
Ireland	9.1	8.8	4.8	4.5	3.2	5.0	8.5
Italy	6.9	6.5	6.3	7.8	9.2	10.0	8.7
Japan	22.2	26.3	20.6	21.8	21	22.4	15.9
Korea	-	-	8.9	11	11.4	13.5	12.3
Luxembourg	11.0	19.3	15.6	16.2	17.7	15.8	17.7
Mexico	-	-	-	-	-	-	-
Netherlands	8.1	6.7	7.7	6.6	7.0	7.5	7.5
New Zealand	20.7	17.8	11.8	7.8	8.3	6.5	11.9
Norway	3.8	3.3	2.9	13.3	17.2	9.0	9.2
Poland	-	-	-	-	-	-	7.7
Portugal	-	-	-	-	-	8.0	7.4
Slovak Republic	-	-	-	-	-	-	-
Spain	9.2	8.2	6.9	5.1	5.1	8.8	5.4
Sweden	6.1	4.4	4.3	2.5	3.5	3.1	5.8
Switzerland	7.7	8.2	8.5	6.4	6.8	7.6	6.6
Turkey	4.8	6.4	5.1	4.1	9.5	6.7	6.7
United Kingdom	4.4	8.7	6.2	8.4	12.6	9.9	8.1
United States	16.4	13.2	11.4	10.8	7.5	8.9	10.3
EU 19	6.7	6.8	6.0	5.7	6.3	6.7	7.0
EU 15	6.7	6.8	6.0	5.7	6.3	6.7	6.8
OECD Europe	6.2	6.4	5.7	5.9	6.9	6.7	6.9
OECD Total	8.8	8.7	7.6	7.6	8.0	8.0	8.0
OECD America	15.6	12.2	12.5	11.2	7.9	8.0	9.2
OECD Pacific	19.7	20.4	13.4	13.2	12.5	14.1	13.7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2	15.1	16.7	16.7	18.2	19.4	21.7	23.1	-
4.6	6.8	5.0	5.0	5.2	5.2	5.2	5.8	5.7
7.2	7.0	6.8	6.5	7.1	7.7	8.3	8.2	7.6
12.2	8.9	9.5	9.7	10.6	10.5	11.5	11.0	10.7
9.8	11.5	11.8	12.3	12.4	12.0	13.0	13.4	12.4
6.6	5.7	6.0	6.0	6.4	7.7	8.7	7.4	7.1
12.5	9.4	9.3	7.7	8.1	7.6	7.7	9.0	8.1
6.9	7.6	6.6	5.8	6.4	5.5	6.8	6.8	6.8
4.8	1.7	2.9	3.5	4.5	4.9	5.9	6.1	5.2
12.2	10.2	10.1	9.1	9.6	10.3	8.5	8.0	-
5.7	6.1	6.1	5.8	5.8	5.7	6.3	7.0	6.5
3.3	2.9	2.5	3.4	2.7	4.9	5.8	6.1	5.6
11.8	12.2	13.2	13.0	12.0	11.2	11.9	10.9	9.7
6.9	8.4	7.5	6.6	6.9	6.8	8.1	8.8	8.6
13.8	12.9	12.2	13.0	14.2	15.5	17.0	16.8	22.8
14.1	12.3	12.8	15.3	14.3	16.0	14.3	15.1	15.9
17.8	18.4	20.4	19.2	15.3	15.4	13.8	14.9	14.3
-	-	-	-	-	-	-	-	-
10.1	10.3	8.8	7.6	8.2	9.8	8.5	8.7	-
12.4	11.4	12.5	13.6	15.5	16.8	15.8	14.2	11.0
20.9	20.7	18.9	18.9	22.8	27.0	29.5	26.0	28.7
7.4	5.7	6.2	5.5	7.0	7.5	7.1	7.9	-
11.4	10.0	9.9	8.3	8.7	8.0	8.5	10.1	10.3
7.7	7.8	7.6	8.3	8.2	8.7	9.9	10.2	10.4
8.9	8.3	9.2	8.9	9.7	10.7	11.2	12.4	8.3
7.6	5.8	4.8	5.1	6.3	7.5	7.5	7.9	6.9
9.0	10.2	8.8	8.5	8.6	8.9	10.1	10.6	10.6
7.3	6.8	7.2	8.0	7.3	7.1	6.0	6.8	7.4
9.8	9.6	8.2	7.8	8.1	9.3	10.8	9.4	9.9
8.7	6.7	6.6	8.3	9.7	11.7	12.2	11.0	8.9
8.9	8.5	8.4	8.0	8.2	8.5	8.8	9.1	-
9.3	8.7	8.6	8.0	8.2	8.5	8.8	9.0	-
9.1	8.8	8.6	8.3	8.6	9.1	9.5	9.7	-
10.1	9.3	9.2	9.2	9.6	10.3	10.7	10.8	-
10.5	7.8	8.1	9.0	10.1	11.1	11.8	11.0	9.8
15.1	12.9	13.5	14.7	15.5	16.9	17.2	17.3	-

주: 단순평균 기준

자료: OECD, Data extracted from OECD, Stat, 2010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새해 시론]

재정을 살찌게 하려면

원윤희(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지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는 과감한 수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급격히 위축된 민간 소비와 투자를 보완하고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었다. 2010년 우리 경제는 6.1%라는 높은 성장을 달성했으며 올해도 4~5%의 성장이 예상된다. 물론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은 불안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경제는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다시 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채무 · 재정수지 목표 정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 재정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서민대책, 그리고 우리의 성장잠재력 확충 등 여러 핵심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임기 4년째를 맞는 현 시점에서 과연 그동안 추진했던 제반 세부 과제들의 성과는 무엇이고 또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적합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대부분의 핵심과제들은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걸쳐있기 때문에 이들을 조율하고 부처 간의 협조를 이끌

어낼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중추의 하나가 재원배분과 성과평가 및 환류를 담당하는 재정이 다.

우리 재정이 당면하는 또 다른 과제는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지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했고 저출산 · 고령화 문제 등 미래의 재정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출 측면에서 본다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채무 수준이나 재정수지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 분야의 경우 향후 5년간 지출증가율을 연평균 0.6%로 억제하고 있는데 그동안 1인당 총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했고 향후 노령화에 따른 영향, 그리고 보장성 확대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실현이 매우 어려운 과제다. 이 분야 지출의 경직성이나 확대되는 신규수요 등을 고려할 때 지출효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가 목표달성에 있어 관건일 것이다.

우리의 재정통계 작성기준이 국제기준과 차이가 있어 국가채무가 과소 추계하고 있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는데 각종 재정통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도입에 맞춰 국제통화기금(IMF) 2001 재정통계지침(GFS) 기준에 따른 국가채무 등 각종 재정통계 정비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보충채무 ·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 공기업 부채 등은 새로운 기준에 따르더라도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들

암묵적 또는 우발채무는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채무 통계에서 주석 표기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도 필요

세입측면에서 민간의 경제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세율 인하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동시에 자원배분의 왜곡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비과세 감면의 축소, 탈세 및 체납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일부 국민들의 탈세나 체납 등 비정상적인 조세부담 회피는 세수기반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신년 새해는 선거가 없는 해로서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특히 복지지출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이미 도입된 제도만으로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기 때문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신규 복지제도를 도입하거나 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복지재정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서울경제신문 2011-1-3일자〉

창조형 청년일자리 늘리려면... 기부문화 확산·세제지원 급선무

◆ 창조형 청년일자리 ◆

선진국이 사회적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기부 문화가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다.

창조형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 일자리 외연을 보다

확대 발전시키자는 기본 생각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이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부 문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모든 창조형 사회적 일자리를 국가 재정으로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부 문화를 장려하고,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 기부금 비율은 우리나라가 0.54%에 그쳐 미국(1.67%)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에도 미국의 기부금 총액은 2% 감소하는 데 그쳐 3,077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기부금 총액은 1997년 2,000억달러를 넘어선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부금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국세청이 집계한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은 8조 9,100억원(2008년 기준)을 기록했다. 이 중 법인이 낸 기부금은 3조 3,800억원으로 전체의 37.9%에 그쳤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기부금 추세를 보면 법인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법인 기부금액은 1999년 2조 500억원에서 2008년 3조 3,800억원으로 6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개인 기부금액은 같은 기간 8,500억원에서 5조 5,300억원으로 551% 늘어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 소득세, 법인세 감면 폭을 높이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손원익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영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식 기부에 대해 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이는 등 관련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신문 2011-01-13일자〉

40년 후 5명 중 2명이 노인... 준비안 된 초고령화 사회, 3D경제 늪에 빠질수도

‘3D’: debt · deficit · deflation

올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중은 11.3%다. 9명 중 1명꼴이다. 40년 후엔 어떨까. 38.2%(통계청 미래 인구 추계)나 된다. 5명 중 2명은 노인인 사회가 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2000년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다.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배로 늘어(14% 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전망이다. 2026년에는 노인이 5명 중 1명(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유소년층 인구(0~14세)에 대한 노인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령화 지수는 1970년 7.2%에서 2000년엔 34.3%, 올해는 72.4%로 증가 추세다. 5년 후인 2016년엔 100.7%로 유소년층 인구와 노인 인구가 같아진다.

인구가 늙으면 경제도 늙는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생산 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고 연령대도 높아져 전체 생산성은 떨어진다. 취업률·생산성이 떨어지면 세수도 줄어든다. 저축률도 낮아진다. 노동과 자본 투입이 줄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게 된다. 한국보다 앞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을 보면 뚜렷하다. 1994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성장세는 꺾였고 작년 2분기를 기점으로 경제규모(GDP)는 중국에 추월당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4%대에서 2020년대 3% 미만, 2040년대 1% 내외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 총액은 2009년 GDP 대비 9.51%에서 2050년 21.61%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결국 한국도 고령화 부담으로 공공부채(debt)와 재정적자

(deficit)가 증가하고 디플레이션(deflation)이 발생하며, 이것이 다시 인구 감소 악순환을 불러오는 ‘3D 경제’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나라 경제뿐만 아니다. 개인의 노후생활을 뒷받침할 정부의 역력이 부족해지면 노후생활도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 스스로 은퇴 이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한국경제신문 2011-01-11일자〉

OECD서 한국인 활약 돋보인다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OECD 한국대표부가 10일 발간한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고위 공무원과 교수, 전문가들이 OECD 주요 위원회와 작업반 회의를 주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이후 처음으로 지난 2009년 각료이사회 의장직(한승수 당시 총리)을 수임, 녹색성장 선언을 이끌어냄으로써 국가 위상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를 마련한 데 이어, 작년 말에는 허경욱 한국대표부 대사가 2억 9천만유로의 OECD 연금기금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의사결정 및 감독을 담당하는 연금기금관리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재정연구본부장은 올해 ‘OECD 정부간 재정관계 네트워크회의 통계그룹’ 의장직을 연임한 여세를 몰아 오는 3월 실시되는 네트워크회의 의장직 경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OECD 한국대표부의 엄성준 차석대사는 올해부터 OECD 개발센터 부의장을 맡았다.

또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에 선출되는 등 OECD 25개 정책분야 위원회

중 5개 위원회에 한국 공무원과 교수, 전문가들이 부의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조효과작업반(설경훈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 정보보호작업반(정태명 성균관대 교수) 등 각 위원회 산하 작업반에서도 부의장군에 진출하는 등 IT 강국의 위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밖에 OECD 관련기구인 원자력기구(NEA)에서도 위원회 부의장이거나 작업반 의장을 역임하는 한국인이 4명이나 된다고 정책브리핑은 설명했다.

허경욱 대사는 “향후 세계 경제는 다자화 및 지역화되는 추세로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인 만큼 OECD와 같은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를 위해 유능한 우리나라 인사들의 각 국제기구 의장단 진출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1-01-10일자〉

조세연구 “장기요양보험 적자 40년뒤 최대 28조원”

GDP 대비 적자, 2010년 0.02% → 2050년 0.49%로 심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자가 40년 뒤에는 국내총생산(GDP)의 0.33~0.49% 수준인 19조~2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이은경 연구위원은 23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재정추계 보고서’에서 장기요양보험의 당기수지는 2010년 GDP 대비 -0.02~0.04%로 예상되지만, 곧 적자로 돌아서 2050년에는 당기수지 적자가 0.33~0.4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은경 연구위원이 장기요양보험 총지출을 관리운영비 가 총급여비의 20%인 경우(시나리오)와 10%인 경우(시나

리오) 등 2가지로 분석한 결과로는 시나리오에서 총지출이 2010년 3조 3천억원에서 2050년에는 46조 5천억원으로 13.8배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시나리오2의 총지출은 2010년 2조 7천억원에서 2050년 37조 6천억원으로 역시 1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장기요양보험의 수입은 2010년 3조 1천억원에서 2050년 18조 4천억원으로 6배로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10년에는 3천 900억원 흑자 또는 2천5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당기수지는 0.04~0.02%에 그치겠지만 2050년에는 적자가 19조 2천억~28조 1천억원으로 GDP 대비 0.33~0.49%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2050년까지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긴 하지만 건강보험처럼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이 추계치는 일정한 가정과 제약에 따른 것으로 제반 환경이 달라지면 추정치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책에 따라 수혜자 범위가 확대되고 수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평균수명 연장 등 비정책요인도 고려한다면 사실상 총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건강보험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미리 재정여건을 파악하고 재원의 다양화와 수요 및 공급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책 마련, 지출 효율화 등 장기적 대비를 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네덜란드처럼 노인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연계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에 도입된 새로운 사회보험으로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서비스나 요양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2011-01-10일자〉

재정포럼

2011년 1월호 통권 제175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숙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

■ 월간 재정포럼

2011년 1월 15일 발행 / 제5권 제1호(통권 제175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